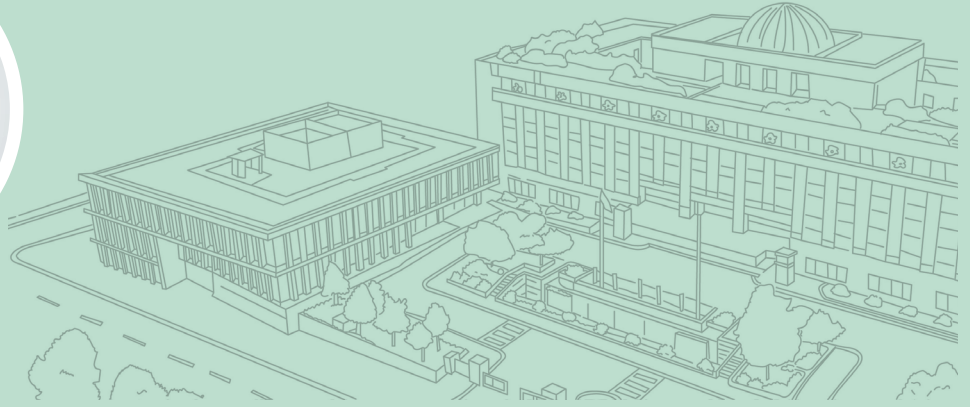


GUIDE TO WORLD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P/R/E/F/A/C/E 발간사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소속기관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헌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 외에 법조인, 각급학교 학생과 교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한 헌법교육,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개최, 외국 헌법재판소 직원 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주최하고, 헌법재판전문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헌법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세계헌법재판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연간 6회 격월로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편람은 바로 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에 연재했던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를 묶은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노력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세계 헌법재판소 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2014년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세계 국가별 개황 및 헌법재판제도』를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에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를 약 2개국씩 소개하고,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2021년 3월까지 독립형 헌법재판소(헌법위원회 포함)가 설치된 국가들을 모두 소개하였고, 독립형 헌법재판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최고재판소도 소개하였습니다. 이 편람에 수록된 국가는 모두 76개국입니다.

P/R/E/F/A/C/E

그사이 헌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권한 등이 상당히 변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시 조사하여 업데이트한 결과를 이 편람으로 발간합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연구관들은 각국 제도의 기본적인 차이, 헌법재판구조의 차이와 영어·프랑스어 번역본의 한계를 감안하여 한국의 실무가와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최대한 순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부분은 원어를 병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에 이러한 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꾸준히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비교헌법연구팀의 역대 팀장님들과 연구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 발간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 추가되고 업데이트될 것이라는 점 또한 약속합니다.

부디 이 책자가 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1일

헌법재판연구원장 박종보

C/O/N/T/E/N/T/S 차례

ㄱ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3
그리스 특별대법원	6

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11
----------------------	----

ㄷ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7
덴마크 대법원	21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	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6

ㄹ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35
------------------	----

C/O/N/T/E/N/T/S

러시아 헌법재판소	39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43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47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50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	57
말레이시아 사법제도	60
멕시코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63
모로코 헌법재판소	69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72
몽골 헌법재판소	75
미국의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78
미얀마 헌법재판소	84

C/O/N/T/E/N/T/S

ㅂ

바레인 헌법재판소	89
베냉 헌법재판소	92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96
벨기에 헌법재판소	99
벨라루스 헌법재판소	1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107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111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115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119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123

ㅅ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	129
세네갈 헌법재판소	132

C/O/N/T/E/N/T/S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136
스위스 연방대법원	140
스페인 헌법재판소	143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147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151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157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	161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165
아프가니스탄 대법원	170
안도라 헌법재판소	172
알바니아 헌법재판소	176
알제리 헌법재판소	180
에콰도르 헌법재판소	183

C/O/N/T/E/N/T/S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187
요르단 헌법재판소	194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197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201
이집트 헌법재판소	204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7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210
일본 최고재판소	214

ㄷ

잠비아 헌법재판소	219
조지아 헌법재판소	222

ㄹ

체코 헌법재판소	229
칠레 헌법재판소	233

C/O/N/T/E/N/T/S

ㄱ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239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243
캐나다 사법제도	247
코스타리카 대법원 헌법재판부	250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254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	258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261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264

ㄷ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69
태국 헌법재판소	272
터키 헌법재판소	276
튀니지 헌법재판소	280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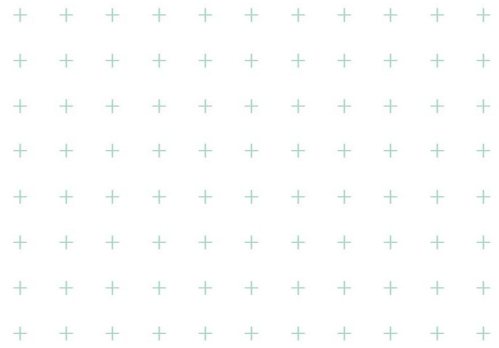
표

페루 헌법재판소	285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289
폴란드 헌법재판소	292
프랑스 헌법재판소	297
핀란드 대법원	302

ㅎ

헝가리 헌법재판소	307
호주 연방대법원	312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그리스 특별대법원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과테말라 공화국(República de Guatemala)
2. 수도 : 과테말라시(Ciudad de Guatemala, 292만명)
3. 인구·면적 : 1,685만명(2020년), 108,890km²(한반도의 약 1/2)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4,603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1. 9. 15.(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Corte de Constitucionalidad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2. 연혁

- 1965. 9. 15.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 설립
- 1982. - 1983.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José Efraín Ríos Montt)의 군사 쿠데타로 1965년 헌법의 효력 중지 선언
정부령 2-82호로 정부의 기본법규 공포
- 1985. 5. 31. 군사 독재 정권 몰락 이후 헌법 제정
- 1986. 6. 9.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Presidente)을 포함하여 5인의 재판관(Magistrado Titular)과 5인의 예비재판관(Magistrado Suplente)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법원, 국회, 대통령 및 부통령, San Carlos 대학교의 최고위원회, 법률가협회에서 각각 1인을 지명
 - － 재판관 지명과 동시에 예비재판관 지명도 이루어짐
-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 가능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5인 가운데서 연장자순으로 1년씩 순환
 - － 임기는 당해 연도 4월 14일에 개시되어 다음 해 4월 14일에 종료
- 재판관 자격
 - 과테말라 출생으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4. 권한

- 법률 또는 규칙의 위헌여부 심판
 - － 청구권자: 법률가협회 대표, 검찰총장, 인권위원회장, 3명의 등록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자
- 조약, 협약, 헌법개정안, 법률안의 합헌성 심사
- 의회, 대법원, 대통령 및 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
-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관할권 문제
-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5. 심리 및 결정

-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전원이며, 재판관 부재시 예비재판관 참석
-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절대 과반수의 찬성 요구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설명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불복할 수 없음
 - － 결정 통지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설명을 요청해야 함
- 위헌 결정된 법률, 규칙의 내용은 관보에 결정이 공포된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과 공권력을 기속하며, 일반적 효력을 가짐
- 의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서면에 의함

6. 연락처

- 주 소 : 11 avenida 9-37, zona 1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 전화번호 : +502 2323 4646
- 홈페이지 : <https://www.cc.gob.gt/>

※ 출처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과테말라 1985년 헌법
과테말라 ‘보호, 개인의 제기 및 합헌성에 관한 법’(Ley de Amparo, Exhibición Personal y de Constitucionalidad)

(2021. 8. 작성)

그리스 특별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그리스 공화국(Hellenic Republic)
2. 수도 : 아테네(Athens, 370만명)
3. 인구·면적 : 1,071만명(2020년), 131,960km²(한반도의 2/3)
4. 공용어 : 그리스어
5. 1인당 GDP : 17,676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1. 3. 25.(오토만 제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특별대법원

- Supreme Special Court of Greece
(Ανώτατο Ειδικό Δικαστήριο)

2. 연혁

- 1975년 민주적인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대법원 조항(제100조) 신설

3. 구성

- 특별대법원은 상설법원이 아니며 헌법 제100조에 의한 권한 행사가 필요할 경우 소집됨
- 특별대법원은 민·형사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 회계감사법원장, 4인의 민·형사대법원 판사 및 4인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총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특별대법원장은 민·형사대법원장 또는 최고행정법원장 중 연장자로 임명됨
- 행정부와 사법부 간, 법원 간의 권한쟁의 및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부는 11인의 재판관에 2인의 법학 교수가 추가됨

4. 권한

- 그리스의 모든 법원은 법률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당해 재판에 심판대상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며 위헌결정을 내릴 수는 없음
- 반면 특별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선포할 권한이 주어짐
- 선거 관련 소송 및 국민투표 관련 소송(헌법 제100조)
- 국회의원 해임, 행정부·사법부, 행정법원·민사법원, 감사원·일반법원 간의 권한쟁의(헌법 제100조)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00조)
- 국제조약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헌법 제100조)
- 특별대법원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음

5.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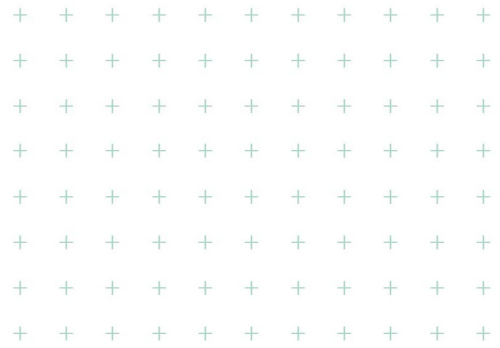
- 홈페이지 : <http://www.areiospagos.gr> (대법원 홈페이지)

※ 출처 : 그리스 헌법¹⁾

(2021. 8. 작성)

1) 2019년 그리스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9년 개정헌법의 영어 번역본이 검색되지 않아 그 직전 개정인 2008. 5. 27. 개정헌법을 기준으로 작성함.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2. 수도 : 행정수도-프리토리아(Pretoria)
입법수도-케이프타운(Cape Town)
사법수도-블룸폰테인(Bloemfontein)
3. 인구·면적 : 5,930만명(2020년), 1,219,090km²(한반도의 5.5배)
4. 공용어 :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등 11개 공용어
5. 1인당 GDP : 5,090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Africa

2. 연혁

- 1993. 임시헌법(민주주의 헌법) 제정
- 1994. 4. 27. 헌법재판소 설립
- 1996. 12. 10. 헌법 제정(1996. 12. 4. 헌법재판소 승인)
- 2004. 3. 21. 헌법재판소 신청사로 이전(요하네스버그 헌법의 언덕)
- 2013. 2. 1. 제17차 헌법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자격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법관 임용 자격이 있는 자
- 임기 : 재판관 임기는 1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사법위원회(Judicial Service Commission)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및 각 정당 원내 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재판관은 사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및 각 정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사법위원회는 임명예정자에 3인을 더한 후보자를 추천
 - 항상 재판관 중 4인 이상은 임명 당시 법관이었던 사람이어야 함
- 재판관이 공석 또는 부재중인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여 예비재판관(Acting Judge)을 임명할 수 있음
- 재판관은 국회의원, 정부관직, 정당의 당원 등의 겸직 금지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의 해석·보장·이행에 관한 사건, 기타 일반적 공공의 중요성을 가진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소가 상고를 허가한 사건을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안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심판
-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및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헌법개정안의 위헌여부심판
-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심판
- 주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5. 심리 및 결정

- 연방법률안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대통령, 연방하원의원이, 주법률 안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주지사, 주의회의원이 헌법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청구
- 심판청구의 절차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헌법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상고하는 방법과, 헌법상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심리 및 결정의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8인 이상

-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 등은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의 기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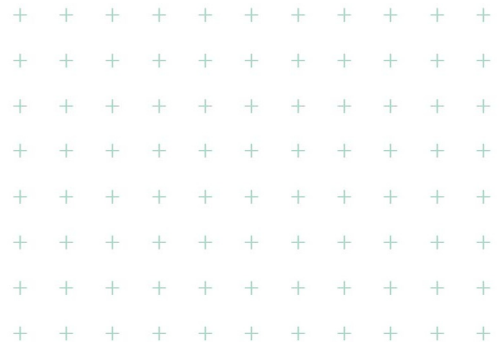
6. 연락처

- 주 소 :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 Hill, Braamfontein,
2017,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화번호 : +27 11 359 7400
- 팩스번호 : +27 11 339 5098
- 홈페이지 : <https://www.concourt.org.za/index.php>

※ 출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덴마크 대법원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수도 : 서울(Seoul, 약 959만명)
3. 인구·면적 : 5,182만명(2021년), 100,413km²
4. 공용어 : 한국어
5. 1인당 GDP : 34,870달러(2021년)
6. 독립일 : 1945. 8. 15.(일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 연혁

- 1948. 7. 17. 헌법 제정(헌법위원회 설치 규정)
- 1950. 헌법위원회 설치
 - 10년간 위헌법률심판사건 6건 처리
- 1960. 제2공화국 헌법(헌법재판소제도 도입)
 - 5·16 군사혁명으로 구성되지 못함
- 1962. 제3공화국 헌법
 -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 수행
- 1972. 제4공화국 헌법(헌법위원회 설치 규정)
- 1980. 제5공화국 헌법(헌법위원회 설치 규정)
- 1987. 10. 29. 현행 헌법(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88. 8. 5. 헌법재판소법 제정·공포
- 1988. 9. 1. 헌법재판소법 시행
- 1988. 9. 15. 헌법재판소 구성

- 1991. 11. 30. 헌법재판소법 개정(비상임재판관 3인의 상임화)
- 2005. 7. 29. 헌법재판소법 개정(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재판관 임명 등)
- 2010. 5. 4. 헌법재판소법 개정(헌법재판연구원 설치조항 신설)
- 2014. 12. 30.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관 정년 연장 등)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 자격 :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문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조정·해결
- 헌법소원심판
 -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 심리 및 결정

-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
-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및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되, 서면심리와 평의는 비공개

6. 기타사항

- 중장기적 측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무원·법조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헌법재판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을 두고 있음

7. 연락처

- 주 소 : 15, Bukchon-ro, Jongno-gu
Seoul, 03060
Republic of Korea
- 전화번호 : +82 2 708-3460
- 팩스번호 : +82 2 708-3566
-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

※ 출처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덴마크 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
2. 수도 : 코펜하겐(Copenhagen, 370만명)
3. 인구·면적 : 583만명(2020년), 42,920km²(한반도의 1/5)
4. 공용어 : 덴마크어
5. 1인당 GDP : 60,908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하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대법원

- Supreme Court of Denmark (Højesteret)

2. 연혁

- 1661. 2. 14. 대법원 설립
- 1849. 6. 5.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의 독립성 인정
- 1953. 6. 5. 헌법 개정으로 법원에 권한쟁의심판 권한 부여

3. 구성

- 덴마크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모든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함
-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 유럽의회법 및 유럽인권협약에 합치하는지 최후적으로 심사함
-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8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됨
- 대법관의 임기는 무기한이나 70세의 정년이 적용됨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 대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여도 이를 통해 곧바로 법률이 효력을 잃지는 않음

5. 연락처

- 주 소 : Prins Jørgens Gård 13
DK-1218 Copenhagen K
- 전화번호 : +45 33 63 27 50
- 팩스번호 : +45 33 15 00 10
- 홈페이지 : <http://www.supremecourt.dk> (영문홈페이지)

※ 출처 : 덴마크 대법원 홈페이지
베니스 헌법위원회 홈페이지

(2021. 8. 작성)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도미니카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
2. 수도 :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220만명)
3. 인구·면적 : 1,084만명(2020년), 48,670km²(한반도의 약 1/4 크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7,268달러(2020년)
6. 독립일 : 1844. 2. 27.(아이티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Dominican Republic
(Tribunal Constitucion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 연혁

- 1844. 11. 6. 제헌 헌법
- 2010. 1. 26.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과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및 선거고등 법원 신설
- 2011. 6. 15.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Ley No. 137-11) 공포
- 2015. 6. 13. 개정 헌법 공포

3. 구성

- 헌법재판소장(Juez Presidente)을 포함한 13인의 재판관(Juez)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가사법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agistratura)에서 지명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대통령 외에 상원의장, 상원의원

(상원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2순위 정당 소속), 하원의장, 하원의원 (하원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2순위 정당 소속), 대법원장, 대법관 및 검찰총장으로 구성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으며, 또한 재판관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은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음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부재시 권한대행을 하게 될(첫 번째의 및 두 번째의) 재판관을 지명함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 불가

- 다만, 대행하는 재판관이 5년 미만 재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임 가능
-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3년마다 부분적으로 갱신됨

○ 재판관 자격(대법관 자격과 동일)

- 도미니카공화국 출생으로 35세 이상이면서 75세 미만인 자
- 정치적, 사법적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자
- 변호사이거나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 변호사, 교수, 판사, 검찰에서 적어도 1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이 기간은 누적 가능함

4. 권한

- 법률, 규칙, 명령, 결정에 대한 규범통제(Control concentrado de constitucionalidad)
 - 청구권자 : 대통령, 상원 또는 하원의 1/3 이상의 의원, 법적으로 보호되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
- 법관이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 규칙,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 (Control difuso de constitucionalidad)
- 국회가 동의하기 전의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Control preventivo de los tratados internaciones)
-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Conflictos de competencia)
- 재판소원(Revisión constitucional de las decisiones jurisdiccionales)
 - 1) 어느 결정에서 법률, 규칙, 명령 등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어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반하는 경우, 3)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관련 사법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침해가 구제되지 않은 경우 등

- 특징적인 것은 헌법소원심판(Acción de amparo)을 일차적으로 일반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이상의 가중 다수결에 의함
 -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판력이 있고 불복할 수 없음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지님. 다만 사안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음
 -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
- 헌법재판소는 행정상 및 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Ave. 27 de Febrero esq. Ave. Gregorio Luperón
Provincia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 전화번호 : +1 809 274 4445
- 이 메 일 : oai@tc.gob.do
- 홈페이지 : <https://www.tribunalconstitucional.gob.do/>

- ※ 출처 : 도미니카공화국 헌법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Ley No. 137-11)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법(Ley No. 145-11)

(2021. 8. 작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
2. 수도 : 베를린(Berlin, 357만명)
3. 인구·면적 : 8,319만명(2020년) / 357,582km²(한반도의 1.6배)
4. 공용어 : 독일어
5. 1인당 GDP : 47,603달러(2018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연방헌법재판소

○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2. 연혁)

- 1949. 5. 24. 독일 기본법 발효
- 1951. 4. 17. 연방헌법재판소법 발효
- 1951. 9. 28. 연방헌법재판소 설립
- 1956. 3. 19. 기본법 개정(군사 규정 삽입)
- 1968. 6. 24. 기본법 개정(비상사태 규정 도입)
- 1969. 5. 12. 기본법 개정(연방과 주 간의 금융관계 개혁)
- 1990. 9. 3.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 발효
- 1990. 9. 23. 기본법 개정(통일 조약)
- 1992. 12. 21. 기본법 개정(마스트리히트 조약)
- 2006. 8. 28. 기본법 개정(연방주의 개혁)

1) 독일 기본법은 1949년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60회 이상 개정되었다. 기본법에서 국가 조직에 관한 세부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고, 또 독일 정치문화 내에서 기본법 개정요건(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의원 2/3 이상의 동의)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분석된다. 여기에서는 독일 학자들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본법 개정 내용만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3. 조직

가. 재판부의 구성

- 2개의 재판부(Senate)로 구성
 - 각 재판부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제1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제2재판부는 부소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제1재판부는 기본권 보호를 담당하고 제2재판부는 국가질서에 관한 소송(권한쟁의, 연방국가적 쟁의)을 담당,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완화되어 제2재판부에서도 헌법소원 담당
- 각 재판부에는 그 소속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Kammer) 3개를 설치하고 있음.²⁾ 지정재판부는 주로 헌법소원심판의 수리·불수리 여부를 심사함. 반면, 헌법소원이 명확히 이유있는 경우로서 법적 관점이 이미 재판부에서 결정된 바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기도 함.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항상 재판부가 결정함
- 전원합의체(Plenum)는 재판관 16인 전원으로 구성됨. 한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법적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합의체가 심판함. 전원합의체는 조직관리 업무도 담당하며,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재판부의 관할권도 규제함

나. 재판관의 자격·임기·정년 등

- 독일 법관법상 법관자격을 가진 자
- 40세에 달하고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자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 연임·중임 불가
- 정년은 68세가 되는 월의 말일
- 재판관은 독일대학의 법학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기타의 직업적 활동은 불가

2)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a조. 현재 각 재판부마다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몇몇 재판관은 지정재판부에 중복되어 소속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은 3년 이내에 변경되어야 한다.

다. 재판관의 선출

- 각 재판부의 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의해 각각 2분의 1(4명)씩 선출
- 각 재판부의 재판관 3인은 연방대법원의 법관 중에서 선출(연방최고법원에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법관만이 피선 자격)
- 연방대법관 중에서 임명될 재판관(3명)은 두 선출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이 1인을 선출하고 다른 한 기관이 2인을 선출. 나머지 재판관(5명)은 연방대법관 1인을 뽑은 기관이 3명을 선출하고 2인을 뽑은 기관이 2명을 선출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의 재판관 선출은 3분의 2의 가중다수결로 선출
-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 선출은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 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데, 12인 중 8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재판관으로 선출
- 연방참사원에서는 표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교대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하는데, 부소장은 소장이 속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최초선거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소장을 선출하고 연방참사원이 부소장을 선출
-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선출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

4. 권한

가. 기관쟁의

- 헌법기관(연방최고기관)들 사이에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
-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유사

나. 연방국가적 쟁송

- 연방과 주 사이의 헌법분쟁에 대하여 심판
- 연방과 주 간, 상이한 주들 상호간 또는 동일한 주의 기관 상호간에 공법상

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연방행정재판소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타의 소송방법이 없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

다. 규범통제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 그 법률을 무효로 하는 제도
- 연방의 법률이나 주의 법률이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위반되거나 주의 법률이 연방의 법률에 저촉되어 분쟁이 발생할 때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
-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어떠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되어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경우(구체적 규범통제)에는 법관의 위헌제청이 있어야 함
- 재판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위헌심판(추상적 규범통제)은 연방정부·주정부 또는 연방의회의원 3분의 1의 신청이 있어야 함

라. 헌법소원

-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중에 사법권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주의 법률에 의하여 자치행정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을 때에만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 연방대통령이 헌법이나 연방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이 탄핵심판을 신청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
- 법관이 헌법과 주법률의 합헌적 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때 연방의회가 탄핵심판을 신청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
-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

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짐

바. 기타

- 개인의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심판을 할 수 있음
- 선거의 효력 또는 연방의회 의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소원심판권을 가짐

5. 심리 및 결정

- 재판에 참여한 재판부 재판관의 다수결로 재판. 단, 기본권 상실, 정당 해산, 탄핵심판의 경우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3분의 2의 찬성 필요
- 각 재판부는 8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
- 평의에서 다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재판관이 제시한 이유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함이 없이 중국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주문별 평의방식)’이 아니라, ‘제기된 법적 및 사실적 문제들을 대상으로 한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쟁점별 표결방식,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 제27조 제2문 참조)’
- 심판청구의 적법성(심판청구적격, 청구의 형식과 청구기간의 준수 등)이나 심사의 범위에 관한 소송법적 문제들에 대해 먼저 표결이 있고, 그 이후에 본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짐. 그 경우 적법요건 판단에서 다수의견이 적법성을 긍정하면 각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본안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을 제시해야 함(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195조 참조)
- 본안심사에서 문제된 각 쟁점별로 평의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예컨대, BVerfGE 22, 180 결정의 경우 각 쟁점별로 “이 결정은 4 : 3에 의한 것이다.”라거나 “이 결정은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6. 연락처

- 주 소 : Schlossbezirk 3, 76131 Karlsruhe, Germany
(Postfach 1771, 76006 Karlsruhe)

- 전화번호 : +49 0721/9101-0
- 팩스번호 : +49 0721/9101-382
- 홈페이지 :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 ※ 출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독일 기본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

(2021. 2.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러시아 헌법재판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라트비아 공화국(Republic of Latvia)
2. 수도 : 리가(Riga, 62만명)
3. 인구·면적 : 186만명(2021년), 64,589km²(한반도의 약 3/10)
4. 공용어 :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5. 1인당 GDP : 19,105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5. 4.(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Latvia

2. 연혁

- 1922. 2. 15. 첫 번째 헌법 제정
- 1991. 9. 6.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6. 6. 5. 헌법에 헌법재판소 규정 신설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6. 12. 9. 헌법재판소 설립
- 2018. 10. 4. 제15차 헌법 개정
- 2020. 9. 3. 제20차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Sacima)의 승인(총 국회의원 100인 중 51인 이상의 동의 필요)을 받아 임명(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1항, 헌법 제85조)

- 3인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추천, 2인은 내각이 추천, 2인은 법관 중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추천
-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8조)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3년의 임기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재판관 비밀투표에서 재적재판관 과반수 득표로 선출, 헌법재판소법 제12조)
- 재판관 자격: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법조인·법학 대학교수 또는 법학 분야 학술연구원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40세 이상의 라트비아 국민(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2항)
 - 재판관은 정치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으나 교수직과 연구직 외의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됨

4. 권한

- 규범통제(헌법재판소법 제16조)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라트비아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의 위헌 여부 심판(국회 동의 전 사전적 통제 포함)
 - 법규명령의 상위규범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국회, 내각, 대통령, 국회의장 및 총리가 제정한 명령(행정규칙 제외)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내각의 위임에 의해 장관이 발한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 라트비아 국내 법령의 국제협약(라트비아가 가입한 것으로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국제협약에 한함)에의 합치 여부 심판
- 헌법소원 심판(헌법재판소법 제19.2조)
 - 상위규범과 합치하지 않은 법령의 적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개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5. 심리 및 결정

- 사건이 접수되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1년 임기로 재적재판관 과반수로 선출)에서 1개월 내에 심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 다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0조)
- 전원재판부는 5인 이상 재판관의 참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규범 통제 권한 사건을 담당(헌법재판소법 제25조)
- 그 외의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3인 재판부에서 담당
- 심리에서 최종 표결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하는 찬반투표에 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함. 가부동수일 경우 합헌(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30조)
- 반대의견을 표시한 재판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으나 공표는 불가(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6항)

6. 기타사항

- 재판관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며, 이때부터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됨(헌법재판소법 제5조)
 - 이미 법관선서를 마친 법관이 재판관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과 동시에 임기 개시

7. 연락처

- 주 소 : Jura Alunāna iela 1
Riga LV-1010
Latvia
- 전화번호 : +371 67210274
- 이메일 : tiesa@satv.tiesa.gov.lv
- 홈페이지 : <http://www.satv.tiesa.gov.lv>

※ 출처 : 라트비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법

(2021. 6. 작성)

러시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2. 수도 : 모스크바(Moscow, 1,268만명)
3. 인구·면적 : 14,674만명(2020년), 17,098,246km²(한반도의 78배)
4. 공용어 : 러시아어
5. 1인당 GDP : 11,585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8. 24.(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2. 연혁

- 1990. 12. 15.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1. 7. 12. 헌법재판소법 제정(재판관 정원 15인)
- 1991. 10. 30. 제1기 헌법재판소 구성(재판관 13인 선출)
- 1993. 10. 7. 열린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 1993. 12. 12. 신헌법 제정
- 1994. 7. 21. 신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5. 2. 9. 제2기 헌법재판소 구성(재판관 19인 선출)
- 2008. 12.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 2020. 7. 1. 헌법 개정
 - 개헌투표(all-Russian vote)로 개정 승인
 - 재판관 정원 11인으로 변경

- 2020. 11. 9. 제17차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125조, 헌법재판소법 제2장, 제3장)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¹⁾
-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 상원(Federation Council, 연방평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상원의원, 하원(State Duma)의원, 연방대법원,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 기관, 연방법무부, 전(全)러시아의 법률단체 및 법률 연구, 교육기관이 연방대통령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
- 재판관의 임기는 없고,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제청에 의해 상원에서 임명하며, 연임 가능.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소장의 정년은 76세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법조 실무경력 15년 이상이며, 법학분야의 공인된 고등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이 없는 자
- 재판관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기타 입법기관 의원 및 기타 공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기업 활동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4. 권한(헌법 제125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 추상적 규범통제
대통령, 상원, 하원, 상원의원 1/5, 하원의원 1/5, 대법원,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입법 및 행정기관의 제청이 있을 때,
 - 연방 헌법적 법률²⁾, 연방 법률 및 연방대통령, 상원, 하원과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1) 헌법상 재판관의 수는 11명이지만, 2020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은 1994년 헌법에 근거하여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은 12명

2) 조직법과 유사하며, 비상사태, 헌법개정, 연방구성체 지위 변화, 정부, 국민투표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

- 소속공화국(Republic)의 헌법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Charter) 및 연방관할 업무와 연방과 구성주체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연방구성주체들의 법률 및 기타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연방 기구와 연방구성주체의 기구 간에 체결된 협약과 연방구성주체들 상호 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구체적 규범통제
 - 소송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또는 당해사건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 혹은 적용될 연방 법률과 연방대통령,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및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규명령 등의 위헌 여부 심판
 - 소송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
-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 서명 전, 러시아 연방 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연방 헌법적 법률 및 연방법률 등의 합헌성 검토
- 공포 전, 연방 구성체 법률의 합헌성 검토
- 국민투표에 부의된 문제의 헌법 합치 여부
- 러시아 연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 국제법원 및 중재법원의 결정이 공공질서에 위반될 경우, 해당 결정의 이행 가능성 판단
- 권한쟁의심판
 - 연방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연방기관과 연방구성주체의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 연방구성주체들의 최고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 연방헌법의 유권 해석
- 상원 제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반역 및 중대 범죄 등에 관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심판
-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에 관한 법률안 제출권
- 기타 연방 헌법, 연방 헌법적 법률, 연방협약에서 부여한 권한 행사

5. 심리 및 결정

-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짐(헌법재판소법 제70조)
-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참석 재판관 과반

수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2조)

– 법규명령, 연방 기관간 협약,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 조약, 국민투표에 붙여진 사안, 연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국제법원 및 중재법원의 결정, 대통령 소추 관련 절차, 대통령의 사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대통령직무수행불가 등으로 인한 대통령의 조기 퇴임과 관련한 결정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합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2조)

– 권한쟁의와 관련한 결정은 모두 과반수로 결정

– 연방헌법에 대한 해석은 재적 재판관 2/3 이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재판관들은 기권이 불가능하고(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반대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회의록에 첨부되거나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법 제76조)

○ 위헌으로 인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에 상치되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들은 발효되지 않음(헌법 제125조 제6항)

○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합헌이라고 판단된 법률이나 조항은 다른 해석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됨(헌법 제125조 제6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법 제79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러시아 연방 내에 위치한 행정, 입법, 사법기관, 지방정부, 기업, 단체, 공무원, 시민을 기속함(헌법재판소법 제6조)

6. 연락처

○ 주 소 : 1, Pl. Senatskaya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190000

○ 전화번호 : +7 (812) 404-33-11

○ 팩스번호 : +7 (812) 404-31-99

○ 홈페이지 : <http://www.ksrf.ru/>

※ 출처 : 러시아연방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 5. 작성)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루마니아(România)
2. 수도 : 부카레스트(Bucharest, 182만명)
3. 인구·면적 : 1,912만명(2021년), 238,391km²(한반도의 1.1배)
4. 공용어 : 루마니아어
5. 1인당 GDP : 12,813달러(2020년)
6. 독립일 : 1877. 5. 9.(오스만제국 - 옛 터키제국 - 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Romania

2. 연혁

- 1923. 구(舊) 헌법에서 대법원(Court of Cassation and Justice)이 위헌법률심판 담당
- 1965.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설립시까지 위헌법률심판 이루어지지 못함
- 1991. 12. 8. 자유민주주의 신헌법 제정
 - 신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
- 1992. 5. 18.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2. 6. 6. 헌법재판소 설립
- 2003. 10. 29.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신 헌법 시행
 - 개정헌법 제142조 제1항¹⁾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

1) 헌법 제142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정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장 및 재임 불가(헌법 제142조 제2항)
- 재판관은 하원, 상원 및 대통령이 각각 3인씩 임명
 - 매 3년마다 재판관 3인씩 교체(헌법 제142조 제5항)
- 헌법재판소장은 3년의 임기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
- 재판관 자격 : 법학과를 졸업한 후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법률분야 나 대학교수로 18년 이상 종사한 자(헌법 제143조)
- 재판관의 직무수행은 독립적이고, 임기동안 파면되지 않음
- 재판관으로 임명받고 임기를 시작하기 전, 대통령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앞에서 선서함
- 재판관의 직은 사법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직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공·사직과 겸직불가하며 정당활동은 금지됨(헌법 제144조)

4. 권한(헌법 제146조)

- 공포 전 법률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²⁾
- 조약 및 국제협정의 위헌 여부 심판
- 의회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 공공기관 상호간 헌법적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 선거절차 감시 및 선거결과 확정
-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의 존재 확인
-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국민투표의 준비와 실시절차 감시 및 투표결과 확정

2)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총 49,430건을 심판했다. 그 중에서 1992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공포 전 법률에 대한 571개의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다.

- 국민의 법률제안에 대한 발의요건 심사
- 정당의 위헌성에 관한 심판

5. 심리 및 결정(헌법 제147조, 헌법재판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 법률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는 대통령,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정부, 대법원, 국민변호사, 50인 이상의 하원의원, 25인 이상의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공포전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재심의를 회부되어 상하 양원의 각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경우에만 법률로 확정
 -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직권으로 심사
- 조약 및 국제협정과 의회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은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50인 이상의 하원의원 또는 25인 이상의 상원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
- 사후적 통제로서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제청할 수 없음
- 공공기관 상호간 헌법적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총리 또는 지방최고의회의장이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20일내에 변론을 개시하여야 함
- 대통령 권위상황 존재확인은 상원의장, 하원의장 또는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시적 권한행사 불가의 경우 권한대행 상황 존재확인은 대통령,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이 신청
- 정당의 위헌성에 관한 심판은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이나 정부가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은 정당등록명부에서 삭제됨
- 변론과 평의에는 주심재판관(judge-rapporteur)에 배속된 연구관(magistrates-assistant)이 재판관과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평의를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되나, 의사록을 기록하며 참석한 재판관과 연구관이 서명함
-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표결은 주심재판관부터 시작하여 재판관 서열의 역순으로 진행(재판소장이 마지막으로 표결)

- 재판관은 결정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장래효를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Parliament Palace, Entrance B1,
Calea 13 Septembrie no.2, sector 5,
Bucarest, code postal 050725
Romania
- 전화번호 : (40-21) 313 25 31 ; 312 34 84
- 팩스번호 : (40-21) 312 54 80 ; 312 43 59
- 홈페이지 : <http://www.ccr.ro>
- 이메일 : ccr@ccr.ro

※ 출처 :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루마니아 헌법(2003년 개정)
헌법재판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47-1992호
헌법재판소 구성원 조직에 관한 법률 제124-2000호

(2021. 3. 작성)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é de Luxembourg)
2. 수도 : 룩셈부르크(Luxembourg, 12만명)
3. 인구·면적 : 63만 5천명(2021년), 2,586km²(제주도의 약 1.4배)
4. 공용어 :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5. 1인당 GDP : 112,000달러(2020년)
6. 독립일 : 1839. 4. 19.(네덜란드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내각책임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2. 연혁

- 1996. 7. 12.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7. 7. 27. 헌법재판소 설립
- 2019. 12. 6. 헌법 개정
- 2020. 5. 15.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부소장 포함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최고재판소장(Président de la Cour supérieure de justice)이 헌법재판소장 겸임, 행정법원장(Président de la Cour administrative)이 부소장 겸임
- 7인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공통의견을 토대로 대공령(Grand-Duc)이 임명하는 2인의 파기원 법관(conseiller) 및 5인의 법관(magistrat)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공통의견을 토대로 대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예비 재판관이 있음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권한을 대행함

4. 권한

- 각급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 국제조약을 승인하는 법률은 위헌제청 대상법률에서 제외

5. 심리 및 결정

- 소송 당사자가 사법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법률의 합헌성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법법원 또는 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함. 다만, 제청받은 사건이 결정할 필요 없는 경우, 이유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필요 없음
-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또한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결정에 항고할 수 없음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통지함
- 사건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Chambre)에서 심리하나,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함. 소장과 부소장은 모든 심리에 참석 가능
- 헌법재판소장은 각 사건에 따라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결정하고, 주심재판관(conseiller-rapporteur)을 지명함
- 주심재판관은 임명 순에 기초한 위계서열을 존중하여 임명
- 최고재판소의 서기(greffe)가 헌법재판소의 서기 역할을 함
- 사건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소송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변론을 실시하여 주심재판관의 보고 및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하

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함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신, 부모 혹은 친족과 관련된 사안의 심의, 주재 및 결정에서 제척됨
- 평의는 비공개이고, 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짐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조항은 해당 위헌결정에서 다른 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위헌결정이 공표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규정이 발생시킨 영향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정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arrêt)은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보에 게재되며,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게재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소송비용은 무료임

6. 연락처

- 주 소 : Cité judiciaire
Bâtiment CR
L-2080 – Luxembourg
- 전화번호 : (+352) 475981 – 2368
- 홈페이지 : <http://www.justice.public.lu/fr/organisation-justice/cour-constitutionnelle>

※ 출처 :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 조직에 관한 1997년 7월 27일 법률

(2021. 8. 작성)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리투아니아 공화국(Republic of Lithuania)
2. 수도 : 빌니우스(Vilnius, 57.4만명)
3. 인구·면적 : 279만명(2019년), 65,290km²(한반도의 약 1/3)
4. 공용어 : 리투아니아어(러시아어 통용)
5. 1인당 GDP : 19,550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0. 3. 11.(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2. 연혁

- 1992. 10. 25. 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3. 2. 3.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3.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헌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 국회(Seimas)에서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 불가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1/3씩 교체
-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중에서 국회가 임명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리투아니아 국민

4. 권한(헌법 제105조 및 제106조 등)

- 추상적 규범통제
 - 정부, 국회 재적의원의 1/5이상의 제청에 의한 법률 및 국회 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 국회 재적의원 1/5이상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심판
 - 대통령 및 국회 재적의원 1/5이상의 제청에 의한 행정부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심판
- 구체적 규범통제(헌법 제106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 및 국회 규칙, 대통령령 및 행정부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심판
- 헌법소원심판
 - 법률, 국회 규칙, 대통령령 및 행정부령을 적용한 결정이 개인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 제기 가능
 -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
- 권고결정
 - ①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여부(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요청 가능)
 -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여부
 - 탄핵소추된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
 - ② 국회 또는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5. 심리 및 결정

- 재판소장은 소송요건 심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재판관을 지명하고, 지명 받은

재판관은 각하 또는 보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건 심리를 위한 논점을 정리함(헌법재판소법 제24조)

- 대통령이나 국회가 제정한 법령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소송요건 심사는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사건이 본안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표된 때부터 결정시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이 정지됨(헌법재판소법 제26조)
- 법원이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됨(헌법재판소법 제67조)
- 본안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변론을 열고 증거 조사를 행함(헌법재판소법 제44조)
- 평의는 공개하지 않음(헌법재판소법 제53조)
- 결정과 권고결정의 의사정족수는 전체 재판관의 2/3, 의결정족수는 전체 재판관의 과반(헌법재판소법 제19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개인을 기속하고,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제72조)
-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법률, 국회 규칙, 대통령령, 행정부령은 그 결정이 공표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장래효, 헌법 제107조 제1항)
- 권고결정도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법 제83조)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 사임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을 지명할 권한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 3년 이상인 재판관 중 최연장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대행함(헌법재판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는 결정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 사실이 발견되면 직권에 의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62조)

7. 연락처

- 주 소 : Gedimino pr. 36 LT-0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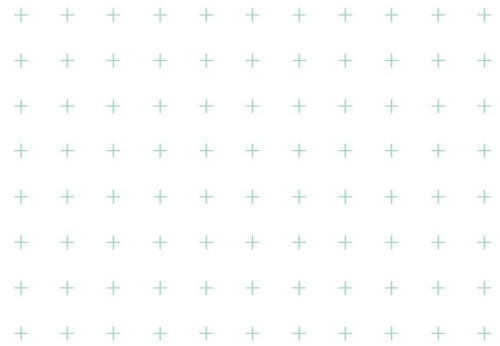
Vilnius

Lithuania

- 전화번호 : +370 5 261 1466
- 이 메 일 : pastas@lrkt.lt
- 홈페이지 : <http://www.lrkt.lt/>

※ 출처 :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리투아니아 헌법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법

(2021. 7. 작성)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

말레이시아 사법제도

멕시코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모로코 헌법재판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몽골 헌법재판소

미국의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미얀마 헌법재판소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마다가스카르 공화국(République de Madagascar)
2. 수도 :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약 300만명)
3. 인구·면적 : 2,842만명(2021년), 587,040km²(한반도의 약 2.6배)
4. 공용어 : 프랑스어, 마다가스카르어
5. 1인당 GDP : 522.2달러(2019년)
6. 독립일 : 1960. 6. 26.(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최고헌법재판소

- Haute Cour constitutionnelle de Madagascar

2. 연혁

- 1959. 4. 29. 제1공화국 헌법제정
 -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은 대통령, 상원, 하원 및 기관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Institutions)가 있음
- 1975. 12. 31. 제2공화국 헌법제정 - 헌법재판소 규정 신설
- 1992. 9. 18. 제3공화국 헌법제정
- 1998. 4. 8. 헌법개정
- 2010. 11. 17. 제4공화국 헌법제정(국민투표)

3. 구성(헌법 제114조, 제115조)

- 헌법재판소장 포함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대통령이 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상원과 하원 및 최고사법위원회가 각각 2인을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 재판관은 정부각료직, 의원직, 선출직 및 보수를 받는 모든 직업활동(교육활동 예외), 정당 및 조합활동과 겸직 불가

4. 권한(헌법 제116조, 제117조, 제119조)

- 법률, 오르도낭스(ordonnance), 독립명령(règlement autonome)의 합헌성 심사
- 조약의 합헌성 심사
- 국가기간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합헌성 심사
- 국민투표 시행에 관한 소송, 대통령 선거소송, 국회의원 선거소송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결과 선언
- 공포 전 조직법률, 법률, 오르도낭스에 대한 합헌성 심사
- 국회 의사규칙에 대한 합헌성 심사
- 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직이 요청한 헌법조항의 해석 또는 자치법안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자문

5. 심리 및 결정

- 심리는 최소 6인의 재판관으로 개시(2001년 오르도낭스 제43조)
- 심리는 주심재판관 다음으로 최연소 재판관이 발언하고, 재판소장이 마지막에 발언함(2001년 오르도낭스 제43조)
- 헌법재판소장이 각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명함(2001년 오르도낭스 제42조)
-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위헌성 항변(exception d'inconstitutionnalité)을 한 경우 법원이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1개월 내)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헌법 제118조)
-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또는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이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1개월 내)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헌법 제118조)

- 위헌이 선언된 법률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됨(헌법 제118조)
- 최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보에 게재됨(헌법 제118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음(2001년 오르도낭스 제43조)

6. 연락처

- 주 소 : 101 ANTANANARIVO
BP 835
Madagascar
- 전화번호 : +261 20 22 660 61
- 홈페이지 : <http://www.hcc.gov.mg/>

※ 출처 : 마다가스카르 헌법
최고헌법재판소 조직법률에 관한 오르도낭스 제2001-003호

(2021. 8. 작성)

말레이시아 사법제도

국 가 개 요

1. 국명 :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2. 수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181만명)
3. 인구·면적 : 3,236만명(2020년), 330,345km²(한반도의 약 1.5배)
4. 공용어 : 말레이어(공식어), 영어(통용어), 중국어
5. 1인당 GDP : 10,401달러(2020년)
6. 독립일 : 1957. 8. 31.(영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연방제

1. 명칭 : 연방법원

- Federal Court of Malaysia
(Mahkamah Persekutuan Malaysia)

2. 연혁

- 1948. 1. 21. 말라야 대법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말라야연방 협정(Federation of Malaya Agreement)의 체결
- 1957. 8. 31. 말라야 연방의 독립 및 말라야 연방헌법 제정
- 1963. 9. 16. 말라야연방과 싱가포르, 사라왁, 사바가 함께 말레이시아 건립. 말라야 대법원은 말레이시아 연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대체
- 1965. 8. 9.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탈퇴. 싱가포르 고등법원도 탈퇴
- 1985. 1. 1. 헌법개정으로 연방법원의 이름을 대법원으로 변경(1983년 헌법 개정, 1985년 1월 1일 시행)
- 1988. 6. 10. 헌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킴. 법원에 사법권이 있다는 규정 대신 의회가 법령으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으로 헌법 개정

- 1994. 6. 24. 헌법개정으로 대법원의 이름을 연방법원으로 변경

3. 구성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최고 법원이고 헌법적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원임
- 연방법원은 연방법원장 1인, 항소법원장 1인, 말라야 고등법원장 1인, 사바와 사라왁(Sabah and Sarawak) 고등법원장 1인 및 재판관 11인 이하(총 재판관 15인 이하)로 구성됨(헌법 제122조)
 - 이전에는 연방법원 재판관을 8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2009년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재판관 15인 이하로 규정
 - 국왕(양 디페르투안 아공, Yang di-Pertuan Agong)은 추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추가 재판관들은 국왕이 정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사법부 고위직(high judicial office)에 있던 자로 함
- 연방법원장은 통치자회의(Conference of Rulers)와의 상의를 거쳐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헌법 제122B조)
- 다른 재판관은 총리와 연방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헌법 제122B조)
- 재판관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정년은 66세. 국왕이 승인한 경우, 66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재판관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헌법 제125조)
- 재판관들은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음(헌법 제125조)
- 연방법원 재판관의 자격 :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호사였거나 연방 또는 주의 법률 업무에 종사하였던 국민(헌법 제123조)
- 국왕에 대한 소송은 특별법원에서만 진행가능하고, 특별법원 법관들은 연방법원장,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이나 연방법원의 재판관 중 2인으로 구성(헌법 제182조)

4. 권한

- 고유관할권(헌법 제128조)

- 연방의회나 주 의회가 만든 법률의 타당성
- 주와 다른 주 또는 연방정부의 분쟁
- 상고심(헌법 제121조 제2항)
 -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온 상고 심판
- 제청에 대한 심판(헌법 제128조)
 - 다른 법원에서 제기된 연방헌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심판
- 자문(헌법 제130조)
 - 국왕은 연방헌법 해석문제에 대해 연방법원의 의견이나 자문을 부탁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의견을 발표해야 함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3명 이상의 홀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재판관 몇 명이 사건을 심리하는지는 연방법원의 재량
- 연방법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선임(most senior) 재판관이 주재함
- 심리하는 재판관 중 다수의 뜻에 따라 사건을 결정함
- 상고를 거부할 수 있음

6. 연락처

- 주 소 : Persiaran Perdana, Presint 3, 62100 Putrajaya,
Wilayah Persekutuan Putrajaya
Malaysia
- 전화번호 : 603 8880 3500
- 홈페이지 : <http://www.kehakiman.gov.my/>

※ 출처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헌법
말레이시아 사법부의 법원에 관한 법률(Malaysia Courts of Judicature Act 1964)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규칙(Malaysia Rules of the Federal Court 2012)

(2021. 8. 작성)

멕시코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국 가 개 요

1. 국명 : 멕시코 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
2. 수도 :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인구 885만명)
3. 인구·면적 : 12,893만명(2020년), 1,964,375km²(한반도의 약 9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8,346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헌법 개정

- 1917. 2. 5. 멕시코 혁명의 결과로 신헌법 제정. 이후 2021년 8월 현재 250여 번 이상 개정됨
-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지위는 약하였음. 1994년 대통령 선거당시 정치인들과 법조계는 사법개혁이 절실함에 동의하였음. 또한 1994년의 경제 위기는 상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원제도를 요구
- 1994년 헌법 개정
 - － 연방대법원의 외부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법원의 효율성을 도모
 - － 대법관 수를 26명에서 11명으로 감축. 대법관 임기를 종신에서 11년으로 단축
 - － 추상적 규범통제인 위헌소송(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과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해결을 위한 헌법분쟁(controversia constitucional) 도입
 - － 연방사법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 설립

2. 사법부(연방헌법 제94조~제107조)

□ 연방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 구성

-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의 임기는 15년이며, 중임 불가(다만, 임시 또는 잠정 대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외)(연방헌법 제94조)
- 대통령이 3명의 후보를 상원에 추천하면 30일 이내에 상원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상원이 1명을 인준(연방헌법 제96조)¹⁾
-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4년. 연임 불가(연방헌법 제97조)

○ 대법관 자격(헌법 제95조)

- 참정권과 시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멕시코 태생의 멕시코인
- 임명일 당시 35세 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소지한 자
- 평판이 좋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 임명일 이전 최근 2년간 멕시코에 거주한 자
-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방정부의 국무장관, 검찰총장, 상·하원의원으로 재직하거나, 연방의 행정부 관련 직책을 맡지 아니한 자

○ 대법관의 권리 및 의무

- 재임 중 연봉 삭감은 금지되며,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됨(연방헌법 제94조)
- 연방대법원은 대법관에게 1개월 미만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대법관의 최대 휴직가능 기간은 최대 2년(단, 휴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허가)(연방헌법 제98조)
- 연방, 주 또는 민간회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단, 과학, 교육, 문화 분야 또는 자선단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제외)(연방헌법 제101조)

1) 만일 상원이 30일 이내에 인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지명권 행사함. 상원이 대통령 추천명단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 3명을 다시 추천하고 새로운 후보도 모두 상원이 거부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추천명단에서 1명을 지명함

- 퇴임 후 2년 내에 연방법원에서 대리인 활동 금지(연방헌법 제101조)

□ 연방선거법원(Tribunal Electoral)

- 선거소송을 비롯하여 선거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연방헌법 제99조)
- 7인의 판사로 구성된 1개 상급위원회(Sala Superior), 3인의 판사로 구성된 7개의 지역위원회(Sala Regional) 및 3인의 판사로 구성된 1개 지역특별위원회(Sala Regional Especializada)로 이루어짐. 대통령 선거소송은 상급위원회 관할이며, 연방의회 선거소송은 지역위원회에서 1심을 담당하고, 상급위원회가 2심 담당(연방사법부조직법 제165조)

□ 지역전원재판소(Pleno Regional)(연방사법부조직법 제25조, 제42조)

-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연방순회법원들의 기준 충돌을 해결하고 사법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 연방순회법원(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연방사법부조직법 제25조, 제38조)

-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직접 헌법소원(amparo directo)²⁾ 담당

□ 연방항소법원(Tribunales Colegiados de Apelación)(연방사법부조직법 제25조, 제35조)

-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간접 헌법소원(amparo indirecto)³⁾ 및 지방법원 1심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다룸

□ 지방법원(Juzgado de Distrito)

- 연방사법부의 제1심법원으로 형사, 민사, 행정, 노동 등의 분야 소송을 담당

□ 연방사법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연방헌법 제100조)

- 1994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사법행정, 연방 하급법원 판사의 선발 및 교육 등이 모두 연방대법원의 소관사항이었음. 연방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사법위원회 설립

2) 공권력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 사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

3)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공권력의 처분, 절차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소

-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연방사법부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 감독, 징계 기능은 연방사법위원회에 귀속됨
- 연방사법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연방대법원장이 연방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3인의 위원은 연방대법원의 전원재판부에서, 2인은 의회에서, 1인은 대통령이 지명

3.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

○ 관할

① 헌법소원(amparo)

- 재산권, 공적 자유권, 평등권,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생명에 대한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
- 헌법 제103조와 제10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과 조약, 행정법규를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 및 주, 지방정부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거의 모든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
- 대법원이 간접 헌법소원을 통해 일반 법령의 위헌성을 심사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위헌

② 헌법 분쟁(controversia constitucional)(헌법 제105조 제1항)

- 선거관련 문제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정부기관 간의 일반 법령 및 작위나 부작위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한 제도
- 1917년 헌법개정시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4년 헌법개정시 헌법 제105조를 통하여 헌법 분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 헌법기관으로서의 연방대법원의 역할 강화
- 연방대법원은 다음 기관 간의 쟁의를 심판⁴⁾
 - 연방과 연방기관

4) 연방헌법 제105조 제1항에는 더 많은 기관 간의 쟁의가 열거되어 있음

- 연방과 지방자치단체
- 행정부와 연방의회
- 연방기간 간
- 다른 주에 속하는 2개 지방자치단체 간
- 주와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
- 연방기관 및 다른 주의 지방자치단체 간 등
-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
- 연방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일반 법령과 관련한 결정은 전원재판부 대법관 11인 중 8명이 동의할 경우 일반적 효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음

③ 위헌 소송(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헌법 제105조 제2항)

- 헌법기관으로서의 연방대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 청구권자는 연방법의 경우 연방 하원·상원 의원의 33%,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경우 상원의원의 33%, 연방 및 연방기관의 일반 법령과 관련하여서는 연방행정부로 제한되어 있음⁵⁾
- 문제 법령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만 제기 가능
- 1994년 헌법 개정에는 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위헌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6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법 위헌 소송이 가능해짐. 연방 및 지방 선거법은 선거절차 개시 90일 전에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음
- 대법관 8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문제 법령은 무효화됨
-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

○ 심리

- 대법원은 1년에 2번의 회기를 가짐(연방사법부조직법 제3조)
 - ※ 1월 첫 근무일부터 7월 15일 / 8월 첫 근무일부터 12월 15일
- 11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o)와 5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2개의 부(Sala)가 있음

5) 연방헌법 제105조 제2항에는 더 많은 청구권자가 열거되어 있음

- 대법원장은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음
 - 각 부의 위원장은 매 2년마다 그 구성원 중 호선하며, 연임불가
 - 전원재판부의 의사정족수는 대법관 7인이고, 부의 의사정족수는 구성 대법관 4인
- 연방대법원이 재량에 따라 상소를 허가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함

5. 연락처

- 주 소 : Pino Suárez no. 2,
Colonia Centro Histórico, Delegación Cuauhtémoc,
C.P. 06065, Ciudad de México
- 전화번호 : +52 55 4113 1000
- 홈페이지 : <http://www.scjn.gob.mx/>

- ※ 출처 : 멕시코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멕시코 연방하원 홈페이지
중남미 헌법재판회의(Conferencia Iberoamericana de Justicia Constitucional)
홈페이지
멕시코 연방헌법
멕시코 연방사법부조직법
José María Serna de la Garza, The Constitution of Mexico, Hart Publishing, 2013

(2021. 8. 작성)

모로코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모로코 왕국(Royaume du Maroc)
2. 수도 : 라바트(Rabat, 191만명)
3. 인구·면적 : 3,734만명(2021년), 446,550km²(한반도의 약 2배)
4. 공용어 : 아랍어, 베르베르어(Berber dialects), 프랑스어
5. 1인당 GDP : 3,192달러(2019년)
6. 독립일 : 1956. 3. 2.(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du Royaume du Maroc

2. 연혁

- 1962. 12. 7. 헌법제정
- 1962. 12. 14. 헌법 공포
- 1992. 9. 4.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위원회 설립
- 2011. 7. 1. 헌법개정으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추가되고, 헌법재판소로 변경

3. 구성

- 재판소장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 6인은 국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인은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ésentants)이 각각 3인씩 선출함
- 재판관 선출 선거 결과는 결과 발표로부터 8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일 이내에 선고함

-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왕이 임명
- 재판관은 법학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법 전문가, 학자 또는 행정 전문가로 구성됨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매 3년마다 1/3씩 교체
- 재판관은 겸직 불가 : 임기 동안 정부, 의회, 사법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u pouvoir judiciaire),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또는 사법기관 그 밖에 공적 임무 수행, 외국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무, 국제기구 등과 겸직 불가

4. 권한(헌법 제132조, 제133조)

- 공포 전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공포 전의 조직법(Loi organique), 시행 전 상·하원 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 국회의원 선거의 적법성 심사
- 국민투표의 적법성 심사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5. 심리 및 결정

- 재판부는 재판관 9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출석재판관 2/3이상 찬성으로 사건에 관하여 결정함
- 조직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평의(séance)는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모든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 조직법, 법률, 상·하원 규칙의 합헌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라 8일 이내에 결정함
- 공포 전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는 국왕, 수상(Chef du gouvernement), 상원의장, 하원의장 및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됨. 이 경우 심판대상 법률의 공포절차는 정지됨
- 공포 전 사전적으로 위헌 여부 심사 대상이었던 조항에 대해 위헌이 선고되면 공포되지 않고, 사후적 위헌법률 심사대상 조항은 위헌이 선고되면 결정에

서 정한 날부터 폐지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공권력 및 모든 행정·사법기관을 기속함
-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는 결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6. 연락처

- 주 소 : Place Ach-Chouhada BP 10000 Rabat Maroc
- 전화번호 : +212 0537 73 72 82
- 팩스번호 : +212 0537 72 80 02
- 홈페이지 : <https://www.cour-constitutionnelle.ma/>

※ 출처 : 모로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모로코 헌법
모로코 헌법재판소 조직법률

(2021. 8. 작성)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몬테네그로(Montenegro)
2. 수도 : 포드고리차(Podgorica, 18.7만명)
3. 인구·면적 : 62만명(2021년), 13,812km²
4. 공용어 : 몬테네그로어, 세르비아어
5. 1인당 GDP : 8,728달러(2019년)
6. 독립일 : 2006. 6. 3.(新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대통령직선),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Montenegro

2. 연혁

- 1963. 몬테네그로 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64. 2. 15.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활동 개시
- 1992. 4. 유고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개 공화국으로 구성) 신헌법 제정
- 2003. 2. 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 헌법채택
- 2004. 4. 7.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설립
- 2006. 6. 3. 유고연방공화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부터 탈퇴·독립
- 2007. 10. 22. 몬테네그로 공화국 헌법 공포
- 2008. 10. 27. 신 헌법재판소법(Law on the Constitutional Court) 제정
- 2009. 5. 12. 신 헌법재판소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제정

- 2013. 7. 31. 헌법 개정
- 2015. 2. 26.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5. 12. 28. 헌법재판소절차규칙 개정

3. 구성

-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2인은 대통령 추천, 5인은 국회 추천), 임기는 12년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3년의 임기로 재판관들이 선출(중임불가)
- 재판관 자격 :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40세 이상의 저명한 법률가

4. 권한

- 법률의 헌법 및 국제협정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기타 법령 및 규정의 헌법과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모든 법적 구제책 거친 후)
- 대통령 직무집행의 헌법 위반 여부 심판
- 행정부와 법원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치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당 및 사회단체의 해산심판
-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심판
- 전시 또는 비상시 행정부의 조치 및 행위의 합헌성 여부 심판
- 기타 헌법에 규정된 사항

5. 심리 및 결정

- 합헌성 및 적법성 심사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법원, 행정부, 지방자치 정부 및 5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권으로도 개시할 수 있음(헌법 제150조 제1항 내지 제3항)
- 합헌성 및 적법성 심사 절차 진행 중, 심사 대상 법령 및 규정의 집행이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헌법 제150조 제4항)

-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조)
- 공개변론(public hearing)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복잡한 헌법적·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개최(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1항)
-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표결은 비공개 재판관 회의에서 이루어짐(헌법재판소법 제40조)
- 헌법재판소는 판결(decisions)과 결정(resolutions)을 내림(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 판결문은 사건의 소개(recitals), 주문(disposition), 이유(reasoning)로 구성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다수의견에 반대한 재판관은 회의시 구두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혀야 하며, 반대의견은 결정문과 함께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3항)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문이 소송관계인들에 송달된 날에 효력 발생(헌법재판소법 제78조)

6. 연락처

- 주 소 : Njegoševa Street No. 2, 81 000 Podgorica, Montenegro
- 전화번호 : +382 20 665 410
- 팩스번호 : +382 20 665 410
- 이 메 일 : ustavni.sud@ustavnisud.me
- 홈페이지 : <http://www.ustavnisud.me/ustavnisud/index.php>

※ 출처 :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몬테네그로 헌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법

(2021. 4. 작성)

몽골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몽골(Mongolia)
2. 수도 : 울란바토르(Ulaanbaatar, 150만명)
3. 인구·면적 : 323만명(2019년), 1,564,120km²(한반도의 약 7배)
4. 공용어 : 몽골어(Mongolian)
5. 1인당 GDP : 4,340달러(2019년)
6. 독립일 : 1921. 7. 11.(중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2. 연혁

- 1992. 2. 12. 신 민주헌법 제정
- 1992. 헌법재판소 설치
- 2019. 11. 14. 제3차 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State Great Hural)가 임명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대법원이 각각 지명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정년 규정 없음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재판관 과반수 찬성)하며,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재판관 자격 : 정치와 법률 분야에 평판이 훌륭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40세 이상의 몽골 국민

4. 권한(헌법 제66조, 헌법재판소법 제8조, 헌법재판소절차법 제13조)

- ① 법령 등의 위헌여부심판
 - 법률, 국회가 발한 결정,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한 결정, 정부의 결의와 결정,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
- ② 선거소송
 -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및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 심판
- ③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행위의 위헌 여부 심판
- ④ 대통령, 총리에 대한 탄핵과 국회의원 파면의 법률상 이유 유무 심판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 및 헌법의 위반에 관한 분쟁 소송을 직권으로 또는 심판 청구에 의하여 개시함(심판청구권자: 국회, 대통령, 총리, 대법원, 검찰총장)
- 일반국민은 청원서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몽골 국민 외에도 몽골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헌법재판소에 청원서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 일반국민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관이 14일 내에 청구요건 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함(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절차법 제21조 제2항). 국가기관이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심판에 회부함(헌법재판소절차법 제21조 제3항).
-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재판부는 3인재판부, 5인재판부, 전원재판부(7~9인)로 구성됨(헌법재판소절차법 제3조)
-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청구요건에 대한 재판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

- 의신청은 3인재판부에서 담당함.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분쟁 해결의 개시 여부는 재판소장이 지명한 3인의 재판관의 회의를 통해 결정(헌법재판소절차법 제21조 제4항)
- 5인재판부는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담당함
 - 권한 ③, ④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담당
 - 헌법재판소는 권한 ①~④ 사건 심리 후 결정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재판소 결정에 있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짐(헌법 제66조 제3항)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법률, 법령, 정부 결정 또는 국제조약은 즉시 무효로 간주됨(헌법 제66조 제5항, 제67조)
 - 결정 후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나 재판관 과반수가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의한 전원재판부에서 참석재판관 2/3 이상 동의에 의해 결정

6. 연락처

- 주 소 : Khan-Uul District, 11 Constitution Committee,
Zaisan Court, UB 17024, Mongolia
- 팩스번호 : + 976-62262130
- 이 메 일 : info@conscourt.gov.mn, court@mongol.net
- 홈페이지 : <http://www.conscourt.gov.mn>

※ 출처 : 몽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몽골 헌법
 몽골 헌법재판소법
 몽골 헌법재판소절차법

(2021. 7. 작성)

미국의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

국 가 개 요

1. 국명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2.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70만명)
3. 인구·면적 : 32,948만명(2020년), 9,831,510km²(한반도의 45배)
4. 공용어 : 영어
5. 1인당 GDP : 63,543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개관

- 미국 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제정·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 3권분립에 입각하여 미국의 사법부는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고 탄핵에 의하지 않는 한,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않음¹⁾
-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이라는 이원적인 사법체계가 병존하고 있음. 서로 독립적이고, 상하 혹은 우열관계에 있지 아니함
-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13개소),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94개소)으로 구성
- 사건에 따라 연방법원²⁾이나 주법원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1) 미연방법관의 종신제(Life tenure): 사법부의 독립 보장을 위해 연방법관들에게 수여된 권한으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및 하급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사망이나 자발적 퇴직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임기나 정년 없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음(헌법 제3조 제1항)

2) 헌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음

사법권은 이 헌법과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인 쟁송, 2개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의 쟁송,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쟁

양자가 함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양자가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연방법원

○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 1인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³⁾
- 연방사법권 행사,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해석할 최종적 권리를 가짐. 연방법의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도모하며, 주상호간·주와 연방간의 권한 충돌을 중재하며, 삼권분립에서 나타나는 기관간의 분쟁의 중재자 역할 담당
-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한 사건과 주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중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하여 이송명령(writ of certiorari)을 내려서 사건을 심판함

○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 각 연방항소법원 법관의 수는 상이함
- 대부분의 경우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Panel)에서의 합의로 심리하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도 있음
- 연방지방법원 사건과 연방행정과 관련된 일부 사건에 대한 항소 담당
- 워싱턴 D.C.에 설치된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미국 전 지역을 관할로 하며, 국제통상, 특허, 상표권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연방청구법원(U.S. Court Federal Claims), 연방국제통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및 연방재향군인청구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 결정에 대한 2심을 담당

○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 한 주에 최소 한 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뉴욕 주는 각 4개씩 지방법원을 갖고 있음
- 단독법관에 의한 심리를 원칙으로 함. 연방의회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송,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같은 주 시민 사이의 쟁송,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또는 외국 신민(subject)과의 쟁송에 미친다.

3) 연방법 28 U.S. Code 제1조

또는 연방의회 및 주 입법기관 선거구획의 합법성에 관한 소송은 3인의 법관이 심리

- 해사(海事) 사건을 비롯한 민사 및 형사 사건 관할. 일부 연방행정기관 결정 심사

○ 연방특별법원

- 연방청구법원(U.S. Court Federal Claims): 연방정부에 대한 각종 금전지급청구 사건을 관할. 세금환급, 개인사유지의 연방정부수용, 군인 및 연방정부고용인의 급여 및 해고 문제, 특히, 인디언 부족의 토지관련 소송 등을 다룸. 16명의 법관으로 구성. 임기는 15년
- 연방국제통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민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 법관 1인이 심리하는 것이 원칙.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종신
- 연방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파산절차에 따르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 연방지방법원의 특별부로서 기능하며, 파산법관이 심리. 파산법관의 임기는 14년
-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연방 관세에 관한 사건을 관할. 19명의 법관으로 구성. 임기는 15년

3. 주 법원(State Court)

- 미국의 각 주는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채택
- 주 법원과 연방법원은 서로 독립·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주 법원의 권한에 간섭할 수 없음. 다만, 연방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주 법원의 사건이라도 연방대법원이 최종심판권을 보유
- 주 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은 주별로 상이함. 주지사 임명 방식, 선거방식, 실적에 기반한 선발 방식 등이 있음
- 각 주는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4. 연방대법원

○ 관할권(헌법 제3조 제2항 제2호)

- 원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사건, 주(州)가 사건의 당사자인 사건에 대하여 제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짐
- 상고심 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 헌법, 연방 법률 혹은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해사(海事) 사건, 미합중국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서로 다른 주의 주민 사이의 민사사건으로 소송가액이 75,000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 등에 대해서 상고심 재판 관할권을 가짐

○ 상고방식

- 일정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상소(appeal)와 연방 대법원의 재량으로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는 사건이송명령(writ of certiorari)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나, 1988년 의회가 상소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현재는 거의 사건이송명령을 통해서 상고가 이루어짐

○ 연방대법원의 사건처리절차

- 사건이송명령청구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접수⁴⁾: 사건이송명령영장 청구는 주 최고법원, 연방항소법원 및 하급심 법원이 결정을 선고한 후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서기에 제출되어야 함
- 사건이송명령청구서 심사: 사건이송명령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선별을 위해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law clerk)이 사건의 요지를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들은 공동연구제도(cert pool)을 통해 모든 대법관이 회람. 이후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conference)에서 토론될 사건목록(Discuss list)을 작성
- 사건이송명령신청에 대한 투표: 대법관회의에서 사건이송명령신청에 대한

4) 사건이송명령발부의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연방대법원규칙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①동일한 연방법 해석에 관하여 연방항소법원들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 ②주 최고법원 사이 또는 연방항소법원과 주 최고법원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 ③연방항소법원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소송절차에서 이탈하거나, 하급심 법원의 이탈을 승인하는 경우, ④연방 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이 그때까지 판결하지 않은 사건이나 주 최고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배치된 결정을 내린 경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나 올바르게 진술된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을 경우 사건이송명령청구는 거의 인용되지 않음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본 회의에는 오직 대법관만 참석이 가능하고 엄격하게 기밀이 지켜짐. 대법관이 4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인용

○ 연방대법원의 심리 및 결정·선고

- 사건이송영장 신청이 인용되면 당사자들은 상고이유서(briefs)⁵⁾를 제출하고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건의 이해당사자들(amicus curiae)도 의견서를 제출함
-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열리는 구두변론에서 각 당사자에게 구두변론 시간이 30분씩 주어짐
- 구두변론 후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법원장이 먼저 의견을 말하고, 연공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대법관들이 발언을 마친 후 대법원장이 먼저 투표를 하고, 연공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표를 함. 투표 합계 후 대법원장이 법정의견을 작성할 대법관을 지정하고,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중 가장 연공서열이 높은 대법관이 반대의견 작성자를 지정함
- 의사정족수는 대법관 6인, 다수의 의견이 법정의견이 됨

○ 연방대법원의 위헌선언의 형식 및 그 효력

-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위헌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 미국 헌법에는 사법부의 사법심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방대법원은 *Marbury v. Madison*(1803) 결정에서 헌법 원리로서 권력분립 원리와 연방주의에 의해 사법심사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소송당사자, 하급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함
- 위헌심사의 형식: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어떠한 국가행위를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선언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하는 형식을 취함
- 위헌심사의 범위: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에서 연방 사법부의 권한은 ‘사건(case)’과 ‘쟁송(controversy)’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존재, 나)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실질적 법률상의 이해관계, 다) 가

5)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판례·법률·헌법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정이 아닌 현실적 사실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 및 라)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의 가능성을 요구한다는 의미

- 위헌심사의 효력: 위헌결정에는 문면상 위헌(facially unconstitutional)⁶⁾과 적용위헌(unconstitutional as applied)⁷⁾이 있는데, 문면상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당해 사건을 넘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적용위헌의 경우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에 의하여 해당 법률이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을 가짐

5. 연락처

- 주소 : 1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543
- 전화번호 : 202-479-3000
- 홈페이지 : <http://www.supremecourt.gov/>

- ※ 출처 : 미국연방대법원, 미국연방법원행정처, 연방 청구법원, 연방 국제통상법원, 연방 파산법원 및 연방 조세법원 홈페이지
미국연방헌법
미국연방대법원규칙
이명웅, 미국과 한국의 위헌심사제 비교: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57호, 2006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출판사, 2007
유은정, 류지민, 미국연방 대법원의 지위 및 기능, 헌법재판소 헌법재연구원, 2011
미국 사법제도 연구반, 외국사법제도연구(27) 각국의 사법제도, 사법정책연구원, 2021
Savage, David G., Guide to the U.S. Supreme Court, CQ Press, 2010
E. Allan Farnsworth,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William Burnham,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omson Reuters, 2011
Louis Fisher & Katy J. Harriger, Constitutional Structure: Separated Powers and Federalism, Carolina Academic Press, 2013

(2021. 8. 작성)

6) 문면상 위헌이란 법률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

7) 적용위헌이란 법률이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

미얀마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 수도 : 네피도(Nay Pyi Taw, 약 110만명)
3. 인구·면적 : 약 5,440만명(2020년), 약 676,590km²(한반도의 약 3배)
4. 공용어 : 미얀마어
5. 1인당 GDP : 1,400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Tribunal of Myanmar

2. 연혁

- 2008. 5. 29. 국민투표를 거쳐 신헌법 제정
- 2011. 3. 31. 헌법재판소 설치

3. 구성

- 인원 :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자격 : 미얀마 의회의원. 또는 50세 이상의 미얀마 국민으로 헌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5년 이상 지방·주 고등법원 법관 또는 10년 이상 지방·주 단위 이상에서 사법공무원 또는 법무관으로 재직하였거나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였거나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저명한 법률전문가로,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의회의원이 아닌 자
- 임기 : 재판소장 및 재판관 모두 5년 임기

○ 임명 절차

- 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중 1인을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장으로 임명
- 헌법재판관 :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한 후보로 구성된 9인의 후보 명단을 대통령이 제출하고,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연방의회는 후보들이 명백히 자격이 없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

4. 권한

-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 연방의회, 지방·주 의회 및 자치지역·구 협의체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연방정부, 지방·주, 자치지역 행정 조치의 위헌여부 심판
- 연방정부와 지방·주 정부 간, 지방과 주 정부 간, 지방·주 정부 상호간, 지방·주와 자치지역 간, 자치지역 상호간 헌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
- 지방·주, 자치지역에서 연방정부 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방정부, 지방·주, 자치지역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분쟁 심판
- 연방 영토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표한 사건 관련사건 심사 및 심판

5. 심리 및 결정

- 대통령, 상·하원 및 상·하원 합동 연방의회 의장, 대법원장 및 선거 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사건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해석, 판결 및 의견을 구할 권리를 가짐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주의 장(長), 지방·주 의회 의장, 자치지역·구 협의체 의장 및 상·하원 의원 1/10의 결의로 사건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해석, 판결 및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임

6. 연락처

- 주 소 : No.54,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전화번호 : +95 67 3430263
- 팩스번호 : +95 67 3430247
- 홈페이지 : <https://www.constitutionaltribunal.gov.mm>

※ 출처 : 미얀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미얀마 헌법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레인 헌법재판소

베냉 헌법재판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벨기에 헌법재판소

벨라루스 헌법재판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바레인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바레인왕국(Kingdom of Bahrain)
2. 수도 : 마나마(Manama, 15만명)
3. 인구 : 약 170만명(2020년)
4. 면적 : 780km²(본섬과 36개 도서로 구성, 서울의 약 1.2배)
5. 공용어 : 아랍어
6. 1인당 GDP : 23,443달러(2019년)
7. 독립일 : 1971. 8. 15.(영국으로부터)
8. 정부형태 및 의회 : 왕정체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Bahrain

2. 연혁

- 2002. 2. 14. 신헌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2003. 12. 헌법재판소 설립
- 2004. 4. 26. 헌법재판소 첫 결정

3. 구성

- 인원 : 재판소장 및 부소장과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총7인)
- 자격 : 만 40세 이상의 바레인 또는 아랍국가 국민으로 법학학위를 보유하고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지닌 자
- 임기 : 5년 임기로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하고 해임될 수 없음
- 임명 절차 : 국왕의 칙령으로 임명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 국왕의 요청으로 공포 전 법안의 헌법에의 합치여부심판
 - 국무총리, 자문위원회장(Consultative Council Speaker) 및 하원의장(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의 요청으로 일반법률 및 규제의 위헌 여부 심판
 - 법원의 제청으로 일반법률 및 규제의 위헌 여부 심판
 - 소송 당사자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관이 그 청구를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 당해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1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5. 심리 및 결정

- 심리정족수는 과반수인 4인이며,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판소장의 표에 따름
-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도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기속력을 가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판소가 별도의 날짜를 적시하지 않는 한 즉시효를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PO Box 18380, Manama, Kingdom of Bahrain
- 전화번호 : +973 1757 8181
- 팩스번호 : +973 1722 4475
- 이 메 일 : Info@ccb.bh
- 홈페이지 : www.ccb.bh

※ 출처 : 바레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레인 헌법
바레인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베냉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베냉 공화국(République du Bénin)
2. 수도 : 포르토훈노보(Porto-Novo, 27만명)
3. 인구·면적 : 1,245만명(2021년), 112,622km²(한반도의 약 1/2)
4. 공용어 : 프랑스어
5. 1인당 GDP : 1,219달러(2019년)
6. 독립일 : 1960. 8. 1.(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du Bénin

2. 연혁

- 1990. 12. 11. 헌법제정
- 1993. 6. 7. 헌법재판소 설치
- 2019. 11. 17. 헌법개정

3. 구성(헌법 제115조, 제116조)

-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 7인 가운데 4인은 국회, 3인은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1회 연임 가능
- 재판관 3인은 적어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magistrats)이어야 하며(그 중에 2인은 국회에서, 1인은 대통령이 임명), 재판관 2인은 적어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juristes)이어야 하고(국회와 대통령이 각 1인씩 임명), 나

- 머지 2인은 직업적 명성이 높은 자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이 각 1인씩 임명함
- 재판관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이 소추 또는 체포되지 않음
- 재판관은 모든 공직 및 다른 직업활동 겸직불가
- 재판소장은 법관 혹은 법률가 출신 재판관들 중에서 5년 임기로 호선

4. 권한(헌법 제117조 등)

- 공포 전 조직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 시행 전 국회 의사규칙, 방송통신고등위원회 내부규칙, 경제·사회위원회 내부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 기본권 및 공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 심사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적법성 감시
- 국민투표의 적법성 판단 및 투표 결과 공포
- 국회의원 선거의 적법성 판단
- 공화국 대통령의 궐위 확인
- 대통령 및 정부위원의 직무상 국가재산(domaine de l'Etat) 매수 또는 소유에 대한 사전허가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절대과반수로 의결한 후에도 대통령이 당해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이 합헌일 경우 집행력 있는 법률임을 선언함
-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30일 동안 답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의 제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를 3일 이내에 판결
- 국회 회기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항 확인
- 데크레(décret)를 통한 법률 텍스트 개정에 대한 자문¹⁾

1) 베냉 헌법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헌법 제99조) 그 외에는 법규명령으로 정

-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정에 대한 자문
- 법률사항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판단
-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관한 합헌성 심사
- 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자문

5. 심리 및 결정

- 심리는 최소 5인의 재판관으로 개시
- 결정은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공권력 및 모든 민사·군사 및 사법기관을 기속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또는 인간의 권리와 공적자유 침해소송을 제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8일로 단축됨. 처리 기간 동안 법률의 공포기간은 중단됨
-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공포 및 시행될 수 없음
- 심판비용은 무료

6. 기타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및 공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하여 직권으로 합헌성 심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8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함

6. 연락처

- 주 소 : Boite postale n°2050
Recette Principale
COTONOU

하도록 규정함(헌법 제100조). 또한 헌법 제100조 제2항은 현행 헌법 제정 전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 데크레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홈페이지 : www.cour-constitutionnelle-benin.org

※ 출처 : 베냉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베냉 공화국 헌법
베냉 헌법재판소 내규

(2021. 8. 작성)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수도 : 하노이(Ha Noi, 752만명)
3. 인구·면적 : 9,733만명(2020년), 331,230km²(한반도의 1.5배)
4. 공용어 : 베트남어
5. 1인당 GDP : 2,785달러(2020년)
6. 독립일 : 1945. 9. 2.(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사회주의 공화제, 단원제

1. 명칭 : 최고인민법원

-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연혁

- 1992. 인민법원조직법 제정
- 1993. 12.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최고인민법원 설치
- 2013. 11. 28. 헌법 개정¹⁾
- 2014. 11. 4. 인민법원조직법 개정²⁾

3. 구성

- 대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최소 13인 최대 17인의 법관으로 구성됨(인민법원조직법 제22조 제1항³⁾)

1) 2013년 개정된 헌법의 공식 영문 번역이 없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의 비공식 영문 번역을 참조하였음

2) 인민법원조직법의 공식 영문 번역이 없어 Asian judges Network on Environment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공식 영문 번역 참조

- 대법원장의 선임, 해임 및 파면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가 결정함(인민법원조직법 제26조)
-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함(인민법원조직법 제65조),
- 법관 자격: 베트남 시민으로 법학 학사 이상 소지자로, 고등법관으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절차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능력이 있는 자. 법원 경력은 없으나 정부 중앙기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 조예가 깊고 최고인민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능력이 있는 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인민법원조직법 제69조)
- 최고인민법원장의 임기는 국회 회기와 일치함(헌법 제105조 제1항, 인민법원조직법 제26조)

4. 권한 및 결정(헌법 제104조, 제106조, 인민법원조직법 제20조)

- 베트남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항소심과 재심법원으로서 기능함
- 인민법원의 판사 등을 교육
- 인민법원 및 군사법원을 인민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각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
-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며 국가기관과 자연인 모두는 이에 기속됨

5. 연락처

- 주 소 : 262 Doi Can Street, Ba Dinh District,
Ha Noi, Viet Nam
- 전화번호 : +84 24 376 230 36
- 홈페이지 : <http://www.toaan.gov.vn/>

3) 2021년 8월 현재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출처 :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베트남 헌법
베트남 인민법원조직법

(2021. 8. 작성)

벨기에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벨기에 왕국(Royaume de Belgique)
2. 수도 : 브뤼셀(Bruxelles, 121만명)
3. 인구·면적 : 1,150만명(2021년), 30,528km²(경상남북도 크기)
4. 공용어 :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5. 1인당 GDP : 53,612달러(2019년)
6. 독립일 : 1830년 10월 4일(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 혁명)
7.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de Belgique

2. 연혁

- 1831. 2. 7. 헌법초안이 국민의회에서 채택
- 1960년대 중반까지 5회 헌법 개정, 이후 언어분쟁에 따른 문제로 매년 1회 이상의 헌법 개정 행하고 있음(최근 개정 : 2019. 4. 22.)
- 1980년 헌법 개정에 의해 단일국가(Etat unitaire)에서 연방국가(Etat fédéral)로 전환¹⁾되면서 국가, 공동체²⁾ 및 지역³⁾ 간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권한분배의 준수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중재재판소(Cour d'arbitrage) 창설
- 1988. 7. 15.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재재판소의 권한이 확장됨

1)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에는 공동체와 지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2) [벨기에 헌법 제2조]

벨기에에는 플라망어 공동체, 프랑스어 공동체 및 독일어 공동체 등 3개의 공동체로 구성된다.

3) [벨기에 헌법 제3조]

벨기에에는 플라망르 지역, 왈롱지역 및 브뤼셀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 헌법 제10조,⁴⁾ 제11조⁵⁾ 및 제24조⁶⁾에 대한 준수여부 통제 : 평등의 원칙, 교육에 대한 비차별, 권리 및 자유

○ 2007. 5. 7. 중재재판소가 헌법재판소로 명칭 변경

3. 구성

- 재판소장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12명의 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에 의해서 교대로 작성된 이종리스트⁷⁾에 근거하여 국왕이 임명(종신직)
- 6명의 재판관은 각각 프랑스어 그룹과 네덜란드어 그룹에 속해 있음. 두 그룹은 독일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한 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함
- 각 어권별 그룹에 속하는 6인의 재판관 중 3인은 적어도 5년 이상 의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3인은 법률분야(벨기에 대학 법학교수, 파기원 또는 최고행정법원의 사법관,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의 경력이 있을 것
- 각 어권별 그룹은 장(président)을 선출함(헌법재판소법 제33조)

4) [벨기에 헌법 제10조]

어떠한 신분의 구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벨기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벨기에 국민이 아니면 민사 및 군사관련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 법률로써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남녀평등은 보장된다.

5) [벨기에 헌법 제11조]

벨기에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와 자유는 차별 없이 보장된다. 이를 위하여, 법률(연방 양원제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및 연방법률(공동체 및 지역의 양원제 의회에 의하여 채택된 법률)은 특히 이념적 및 철학적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6) [벨기에 헌법 제24조]

① 교육은 자유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 조치도 금지된다. 교육에 수반되는 범죄의 처벌은 법률 또는 연방법률로만 정한다. 공동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공동체는 특정 종교와 관계없는 교육을 행한다. 이것은 학부모 및 학생의 철학적·이념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특별히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는 의무 교육이 종료될 때까지, 공인된 종교의 교육과 특정 종교와 무관한 윤리 교육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공동체는, 투표자 2/3 이상 찬성으로 채택된 연방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직화 기관의 자격으로 1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모든 사람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령에 달한 모든 학생들은 공동체의 비용으로 도덕 또는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교육기관은 법률 또는 연방법률 앞에 평등하다. 법률과 연방법률은 적절한 취급을 정당화하는 각 조직화 기관의 특성을 비롯한 객관적 차이점을 고려한다.

⑤ 공동체에 의한 교육의 조직, 승인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서는 법률 또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7) 적어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투표로써 채택된다.

- 헌법재판소 전체를 관장하는 소장의 임기 : 1년(각 언어권 의장이 번갈아 가며 맡음, 매해 9월 1일 임기시작)
-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최소연령은 40세이며 다른 직(職)과의 겸직불가

4. 권한

-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안은 크게 무효소송(Recours en annulation)⁸⁾과 선결문제(Question préjudicielle)⁹⁾가 있음
- 무효소송에서 무효, 위헌선언 및 적용중지여부 판단대상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어야 함
 - 연방의회, 공동체 의회가 제정한 법률(lois) 및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령(décret, ordonnance)에 대한 판단은 가능
 - 국왕령(arrêtés royaux), 공동체 및 지방의 행정부령(arrêtés des gouvernements), 부령(arrêtés ministériels), 지방 및 코뮌의 규칙 및 명령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
- 무효소송의 청구권자 : 국무회의, 공동체 및 지역정부, 소의 이익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의회의원 2/3 이상의 요구에 따른 상·하원의회의 장(헌법재판소법 제2조)
- 선결문제¹⁰⁾의 청구권자 : 법률, 명령 등의 합헌성 문제에 직면한 사법법원 혹은 행정법원
- 선결문제에서는 법률, 명령 등이 다음의 헌법 조문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
 - 헌법 제8조 내지 제32조의 벨기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
 - 헌법 제170조 및 제172조의 조세의 평등 및 적법성
 - 헌법 제143조 제1항¹¹⁾의 이해충돌 방지 및 중재
 - 헌법 제191조¹²⁾의 외국인의 보호규정

8)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추상적 규범통제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법률, 명령 등의 합헌성 문제에 직면한 사법법원 혹은 행정법원은 당해사건에 관련된 규범에 대한 합헌성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사건 절차가 중지된다.

10) 구체적 규범통제와 유사하다.

11) [벨기에 헌법 제143조 제1항]

연방국가, 공동체, 지역 및 합동공동체위원회는 담당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충성한다.

12) [벨기에 헌법 제191조]

벨기에의 영토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법률로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및 재산에 관한

- 권한쟁의심판 : 헌법 및 제도적 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방국가, 공동체 및 지역 간의 권한의 분배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 사건은 서면 및 대심주의 원칙
- 각 어권별 그룹의 장(président) 1인과 2명의 주심재판관(rapporteurs)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전심사
- 제청받은 사건의 결정은 재판관 7인(각 그룹의 장 2명+재판관 5인)의 다수결로 함
- 결정은 벨기에 관보(Moniteur belge)¹³⁾에 게재됨으로써 기판력(chose jugée) 발생
- 헌법재판소에 의한 무효결정은 소급효를 가짐(헌법재판소가 소급효를 제한하는 결정은 제외)
- 헌법조항 혹은 권한분배에 대한 헌법적·입법적 조항에 반하는 법률, 법률명령 및 행정명령은 일부 혹은 전부 무효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가변력(不可變力)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7, Place Royale B-1000 - Bruxelles(Belgique)
- 전화번호 : +32 (0)2 500 12 11
- 홈페이지 : <http://www.const-court.be/>

※ 출처 : 벨기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재판소법

(2021. 3. 작성)

보호를 받는다.

13) <http://www.vocabulairepolitique.be/moniteur-belge/>

벨라루스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
2. 수도 : 민스크(Minsk, 198만명)
3. 인구·면적 : 945만명(2021년), 207,595km²(한반도의 약 95%)
4. 공용어 :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5. 1인당 GDP : 6,658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8. 25.(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elarus

2. 연혁

- 1991. 8. 25.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4. 3. 15. 헌법 제정
- 1994. 3. 30.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4. 4. 헌법재판소 설립
- 1996. 11. 24. 헌법 수정조항 채택
- 2004. 10. 17. 헌법 수정조항 채택
- 2006. 6. 29.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 : 제19조~제27조)
- 2008. 6. 26. 헌법재판소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대통령령¹⁾ 제정

1)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14 of June 26, 2008 On Certain Measure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elarus

(제1조: 사전통제 등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 2014. 1. 8. 헌법소송법 제정
- 2014. 4. 8.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16조 제2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재판관은 6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6인은 상원(The Council of the Republic)에서 선출(헌법 제116조 제3항 제1문)
-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16조 제3항 제2문)
-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으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부소장은 소장의 부재 혹은 요청 하에 소장의 권한 행사 가능
- 재판관의 임기는 11년으로 재선 및 중임 가능하며, 정년은 70세(헌법 제116조 제3항 제3문,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92조)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 이수 및 학위를 취득하고,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의 지식을 가진, 고도의 법률적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한 벨라루스 국민(헌법 제116조 제2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상·하원이나 지역의회 의원 겸직 불가, 후보 등록 시 재판관 권한 정지(헌법 제92조 제4항,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4조)

4. 권한

- 사후적 규범통제(헌법 제116조)
 - 법률, 명령, 대통령령 및 벨라루스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규의 헌법예의 합치 여부 심판
 - 국가조직에 관한 규칙 및 대통령령의 헌법, 법률, 명령과 국제법규예의 합치 여부 심판
 - 내각령, 대법원규칙, 최고경제법원규칙, 검찰총장령의 헌법, 법률, 국제법규와

- 기타 명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기타 국가기관이 제정한 명령의 헌법, 법률, 명령과 국제법규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사전적 규범통제
 - 국회 법률안 위헌 여부 심판
 - 서명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판단
- 의회에 의한 제도적 또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실 및 지방의회에 의한 제도적 또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 판단
-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대통령령 및 명령에 대한 공식적 해석 제공
- 외국, 국제기구 또는 그 기관의 문건이 벨라루스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의 합치 여부에 관한 입장 표명
- 국가기관의 규칙 제정 및 법률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합헌성 심사
- 헌법상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연례 메시지 채택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8인 이상 출석 시 심리 가능(헌법소송법 제14조)
- 규범통제의 청구권자는 대통령, 상·하원, 대법원, 각료회의임
- 기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일반국민은 규범통제 청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헌법재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장은 1인 이상의 주심재판관을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하고 2개월의 범위 안에서(1개월 연장가능) 검토 기간을 지정(헌법소송법 제37조)
- 구술심리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함(헌법소송법 제7조, 제11조)
-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결정, 가부동수일 경우 합헌으로 결정(헌법소송법 제75조)
-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반대의견을 명시하여야 함(헌법소송법 제76조)
- 규범통제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유를 제시하고 심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제기한 국회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심판사건의 경우 심리를 거부할 수 없음(헌법소송법 제132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법소송법 제85조)

6. 기타사항

- 재판관은 재판 준비 과정 중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조사 요청 가능(헌법소송법 제39조)

7. 연락처

- 주 소 : 4 Krasnoarmeyskaya St., Minsk, Belarus
- 전화번호 : +375-17-327-32-73
- 이 메 일 : interdept@kc.gov.by
- 홈페이지 : <http://www.kc.gov.by/en/main.aspx>

- ※ 출처 : 벨라루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소송법
벨라루스 사법제도 및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2021. 4. 작성)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2. 수도 : 사라예보(Sarajevo, 52만명)
3. 인구·면적 : 330만명(2019년), 51,210km²(한반도의 약 1/4)
4. 공용어 :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5. 1인당 GDP : 6,108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2. 3. 1.(구 유고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제(3인 공동대통령제), 양원제
8. 국가형태 : 연방제, 1국 2체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 스르프스카공화국)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

2. 연혁

- 1963. 구 유고슬라비아 헌법재판소 설립
- 1964. 2. 15. 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설립
- 1992. 3. 1. 구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5. 12. 14.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및 스르프스카공화국(RS, Republika Srpska)으로 구성된 2개의 정치적 독립체가 존재하는 보스니아 연방국가(BiH, Bosnia and Herzegovina) 유지
 - － 데이턴 평화협정 부속서 4에 헌법이 있었음
 - － 현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기능의 골격을 규정

- 1997. 5. 22. 헌법재판소 설립
- 1997. 7. 29.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규칙 제정
- 2005. 7. 23. 제6차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규칙 개정

3. 구성(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규칙 제83조, 제84조, 제86조)

- 헌법재판소장과 3인의 부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하원에서 4인을 선출하고, 스프스카공화국(RS)의 국회에서 2인을 선출하며, 유럽인권재판소장이 대통령위원회(Presidency, 3인의 공동대통령으로 구성)와 협의를 거쳐 3인을 선출
- 초대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이후 재판관은 별도의 임기 없이 정년이 70세임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3인은 3년의 임기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
 - － 헌법재판소장은 직전과 그 이전 헌법재판소장이 속한 민족(보스니아계 50%, 세르비아계 30%, 크로아티아계 15%)과 같은 민족에서 선출 불가
 - －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민족에서 선출
- 재판관 자격 : 고도의 자질과 도덕성을 겸비한 법률가로서 투표권이 있는 자. 단, 유럽인권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또는 인접국의 국민이 아닐 것

4. 권한(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4조 제3항 제f호)

- 추상적 규범통제
대통령위원회, 내각의장, 국회 상·하원의장이나 부의장, 국회 상·하원 의원 1/4 혹은 연방구성국의 입법부 의원 1/4의 제청으로,
 - － 연방구성국의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계된 규정을 포함하여, 연방구성국의 인접국가와의 관계수립에 관한 결정의 헌법예외의 합치 여부 심판
- 구체적 규범통제
 - － 법원의 제청으로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헌법 또는 ‘인권 및 기본

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과 그 의정서’ 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는 국제공법의 일반원칙의 존재 또는 범위에 관한 심판

○ 권한쟁의심판

- 연방구성국 상호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연방구성국 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항소심 심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각급 법원 판결에서 야기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항소심 심판

○ 기타

- 상원 또는 하원의 결정이 구성 민족의 불가결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원 의장이 합동위원회(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대표 각 1인)를 소집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합동위원회가 5일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회부
- 브르치코 행정구(Brcko District)의 지위와 권한의 보호에 관한 분쟁에 대한 심판

5. 심리 및 결정(헌법 제6조 제5항,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 전원재판부(Plenary Session)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됨.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주체가 청구한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와 권한쟁의심판, 구성 민족의 불가결한 이익 침해에 관한 심판, 브르치코 행정구의 지위와 권한의 보호에 관한 분쟁 및 전원재판부의 의제에 포함된 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과반수로 결정

○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입법부(FBiH 하원 및 RS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으로 구성됨. 헌법상 권한 없는 주체가 청구한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와 권한쟁의심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 중에서 전원재판부 관할이 아닌 사건은 대재판부에서 과반수로 결정

- 소재판부(Chamber)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2인으로 구성됨. 잠정 조치 및 행정적 문제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임

6. 연락처

- 주 소 : Reisa Dž.Čauševića 6
71000 Sarajevo
Bosna i Hercegovina
- 전화번호 : +387 33 251 226
- 팩스번호 : +387 33 561 134
- 홈페이지 : <https://www.ustavisud.ba/>

※ 출처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 심판절차규칙

(2021. 6. 작성)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볼리비아 공화국(República de Bolivia)
2. 수도 : 라파스(La Paz, 행정수도),
수크레(Sucre, 헌법상 수도)
3. 인구·면적 : 1,167만명(2020년), 1,098,580km²(한반도의 약 5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 총 37개 언어가 공용어
5. 1인당 GDP : 3,143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5. 8. 6.(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다민족헌법재판소

- Plurinational Constitutional Tribunal of Bolivia
(Tribunal Constitucional Plurinacional de Bolivia)

2. 연혁

- 1994. 8. 12.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규정)
- 1999. 6.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활동 개시
- 2009. 2. 7. 헌법 개정
- 제1조에서 “다민족 공동체 법의 사회적 단일국가”(Estado Unitario Social de Derecho Plurinacional Comunitario)라고 명시
- 2010. 7. 6.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다민족헌법재판소로 명칭 변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7인의 재판관 및 7인의 예비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

197조, 헌법재판소법 제13조)

- 재판관 중 최소 2명은 토착민으로 구성되어야 함(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2항)
- 예비재판관은 보수를 받지 않으며, 재판관 부재 시 또는 법률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만 기능 수행(헌법 제197조 제2항)

○ 재판관 자격(헌법 제199조, 제234조)

- 볼리비아 국적을 가진 35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 헌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나 겸직금지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볼리비아 공용어 2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자
- 헌법, 행정법, 인권법 분야에서 최소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 재판관 입후보 및 선정 방식(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20조)

- 재판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의회에 직접 재판관 후보자 신청
- 사회단체나 토착민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 가능
- 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출석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8인을 예비 선출하며, 이 중 절반은 여성이어야 함. 이후 예비 선출인 명단을 다민족 선거기구(Organo Electoral Plurinacional)에 송부
- 다민족 선거기구가 보통선거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7인을 재판관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7인을 예비재판관으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 불가(헌법재판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 가능(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

4. 권한(헌법 제202조)

- 법률, 자치법규, 조직현장, 명령 등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추상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는 대통령, 상원 및 하원 의원, 자치령의 행정부 수반만 제청할 수 있음
- 국가기관 상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

의심판

- 헌법 조항을 위반하여 도입·개정·폐지된 세금, 수수료, 특허, 기여금 등에 대한 불복
-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부 결의(resolución)에 대한 상고
- 헌법소원심판(Acción de defensa)
 - 자유에 관한 소송(Acción de libertad): 생명, 신체보전, 신체 및 이동의 자유 보호를 위한 소송
 - 기본권 보호 소송(Acción de amparo constitucional): 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 사생활 보호 소송(Acción de protección de privacidad): 개인정보가 공공 및 개인에 의해 저장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류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 삭제,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
 - 이행소송(Acción de cumplimiento): 공권력이 헌법 및 법률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
 - 민중소송(Acción popular): 공권력, 개인, 법인에 의해 재산, 안전, 환경 등이 위협 또는 침해받을 때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
- 대통령, 의회, 대법원, 농업환경법원 법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 국제조약의 비준에 대한 사전적 위헌 여부 심판
- 헌법 일부 개정 절차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권한남용이나 법률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위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 심판

5. 심리 및 결정

- 전원재판부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재판관의 절대 과반(헌법소송절차법규 제10조 제2항)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대세효를 가지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법소송절차법규 제15조 제1항, 헌법 제203조)
- 헌법재판소 제시한 결정의 이유는 선례(jurisprudencia)를 형성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개인을 기속함(헌법소송절차법규 제15조 제2항)

-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행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함(헌법소송절차법규 제17조 제1항)

6. 연락처

- 주 소 : Av. del Maestro No. 300
Sucre- Bolivia
- 전화번호 : +591 4 644 0455
- 팩스번호 : +591 4 642 1871
- 이 메 일 : tcp@tcpbolivia.bo
- 홈페이지 : <https://tcpbolivia.bo/tcp/>

※ 출처 :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볼리비아 헌법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법
볼리비아 헌법소송절차법규

(2021. 7. 작성)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북마케도니아(Republic of North Macedonia)
2. 수도 : 스코피예(Skopje, 48만명)
3. 인구·면적 : 208만명(2021년), 25,713km²(한반도의 약 1/8)
4. 공용어 :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
5. 1인당 GDP : 6,093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9. 8.(구 유고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North Macedonia

2. 연혁

- 1963. 마케도니아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64. 2. 15. 헌법재판소 설립
- 1991. 9. 8. 구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1. 11. 17. 신헌법 제정
- 1992. 10. 7.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17. 5. 31. 신정부 출범
- 2019. 1. 국명합의에 대한 헌법 개정 완료
- 2019. 2.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국명 공식 변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09조 제1항)

- 재판관 6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그 과반수에는 소수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함(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¹⁾)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재판관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 불가(헌법 제109조 제3항)
- 재판관은 저명한 법조계 인사 중에서 선출(헌법 제109조 제4항)

4. 권한(헌법 제110조 등)

- 위헌법령심판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 명령의 위헌·위법여부심판
-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권한쟁의심판
 -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 대통령 탄핵심판
- 정당, 사회단체의 당헌·강령의 위헌여부심판
- 기타 권한
 - 대통령 권한정지 및 면책특권 박탈에 대한 심판
 -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과 직무수행불능 확인심판

5. 심리 및 결정

- 위헌법령심판의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사후적 규범 통제만이 가능(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법령심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직권으로도 심리 가능(헌법재판소법 제11조, 제12조)

1) 북마케도니아 헌법은 수정조항들(amendments)을 통해 기존의 헌법규정을 교체한 부분들이 있는데 헌법 수정 제15조 제1항은 기존의 헌법 제109조 제2항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 전체회의(Meeting)는 재판관 5명 이상이 참석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림. 다만, 헌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2/3 이상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참석할 때 개최함(헌법재판소법 제6조)
-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예비회의(Preparatory Meeting)를 개최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9조)
-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한 경우 및 결정에 필요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함
- 헌법소원심판은 개별 법령이나 행위에 의해서 헌법상의 양심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성, 인종, 종교, 국가, 민족·사회·정치적 지위 등)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헌법소원심판 심리를 위해 공개변론(public hearing)을 개최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3조).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의하여 침해 행위는 금지되고 개별 법령은 무효화 됨(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80조)
- 심판의 대상인 개별 법령 및 행위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57조)
-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발의하여, 재판관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헌법 제87조 제2항)
- 대통령 권한정지 심판은 대통령의 사망, 사임, 직무수행 불능, 헌법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의 사유를 확정하는 것이며,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헌법 제82조)
-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박탈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조사를 위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헌법재판소법 제61조)

6. 연락처

- 주 소 : kej “Dimitar Vlahov” no.19
1000, Skopje

- 전화번호 : +389 2 3165 153
- 팩스번호 : +389 2 3119 355
- 홈페이지 : <http://ustavensud.mk/>

※ 출처 : 마케도니아 헌법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법

(2021. 2. 작성)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불가리아 공화국(Republic of Bulgaria)
2. 수도 : 소피아(Sofia, 124.2만명)
3. 인구·면적 : 690만명(2021년), 111,000km²(한반도의 약 1/2)
4. 공용어 : 불가리아어
5. 1인당 GDP : 9,842달러(2020년)
6. 독립일 : 1908. 9. 22.(오스만제국-옛 터키제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2. 연혁

- 1989. 11. 공산정권 붕괴, 민주화 시작
- 1991. 7. 12. 민주주의 신헌법 제정
- 1991. 8. 16.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1. 10. 3.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에서 1/3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1/3을 임명하며, 최고파기원과 최고행정법원의 법관합동총회에서 1/3을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정년은 없음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4인씩 교체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 재판관 자격 :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법률가
-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면책특권 누림(헌법 제147조 제6항)

4. 권한(헌법 제149조, 헌법재판소법 제12조)

- 구속력 있는 헌법의 해석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 심판
- 국회, 대통령, 각료회의 간, 지방자치정부기관과 국가행정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비준 전 합헌성 여부 심판과 국내 법률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불가리아 정부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의 합치성 여부 심판
- 정당과 정치단체의 위헌성 여부 심판
-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의 위법성 여부 심판
- 국회의원 선거의 위법성 여부 심판
- 유럽의회 불가리아 의원 선거의 위법성 여부 심판
- 국회가 탄핵소추한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 헌법적 법률관계의 사실 확정 등
 -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과 영구적 직무수행불능 여부
 - 국회의원의 자격상실과 부적격성 여부
 - 헌법재판관의 사임, 1년 이상의 직무수행불능 및 헌법 제147조 제5항의 겸직금지행위 수행 여부
 -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

5. 심리 및 결정

-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 진행
- 헌법재판소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해당사자의 불출석이 원칙이나, 대통령·

부통령의 탄핵심판과 국회의원의 부적격성,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당사자 출석 가능

- 재판관 2/3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개시. 단,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3/4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개시
- 전체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단,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 박탈과 직무수행불능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전체 재판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탄핵심판과 재판관의 면책특권박탈 및 직무수행불능확인 은 비공개 투표로 결정
-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비밀투표에 의한 결정에는 소수의견 표시 불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 3일 후에 발효됨. 위헌으로 선고된 법령은 헌법재판소 결정 발효일로부터 적용 중지. 다만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선거, 헌법재판관 지위 관련 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가짐(헌법 제15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14조)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청구권은 국회 재적의원 1/5이상, 대통령, 각료회의, 최고파기원, 최고행정법원, 검찰총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소원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일반 국민이나 법인은 소송이나 진정, 청원만이 가능하고 헌법재판 청구권 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헌법재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7. 연락처

- 주 소 : 1 Dondukov Blvd, 1594 Sofia
Bulgaria
- 이 메 일 : v.argirova@constcourt.bg
- 전화번호 : +359 2 987 5008

- 팩스번호 : +359 2 987 1986
- 홈페이지 : <http://constcourt.bg/>

※ 출처 :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불가리아 헌법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법

(2021. 7. 작성)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브라질연방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2. 수도 : 브라질리아(Brasília, 303만명)
3. 인구·면적 : 21,255만명(2020년), 851만km²(한반도의 약 37배)
4. 공용어 : 포르투갈어
5. 1인당 GDP : 6,796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2. 9. 7.(포르투갈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연방최고법원

- Supremo Tribunal Federal do Brasil

2. 연혁

- 1824. 3. 25. 헌법 제정(제국헌법)
- 1891. 2. 24. 헌법 개정(대통령제와 연방제 채택)
- 1937. 11. 10.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최고법원의 명칭을 Corte Suprema에서 현재의 Supremo Tribunal Federal(STF)로 변경하고, 사법부의 구성을 연방최고법원, 주법원, 군사법원으로 함
- 1967. 3. 15. 헌법 개정(가스텔루 브라쥘 장군에 의한 군사정부)
- 1988. 10. 5. 헌법 개정(현행 헌법)
- 2020. 5. 8. 제106차 헌법 수정¹⁾

1) 브라질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헌법을 재검토하는 방식과 수정하는 방식이 있음. 1988년 헌법이 현행헌법이나 그 이후 106차례 수정되었음

3. 구성

- 연방최고법원은 브라질 법원조직법상 규정된 최상위의 법원임
- 대법관은 11인으로 구성됨
 - － 대법관은 연방 상원의원 절대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 대법관의 자격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법적 지식과 도덕적 명망을 갖춘 자이어야 함
 - －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탄핵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재직함
- 연방최고법원장의 임기는 2년

4. 헌법재판에 관한 연방최고법원의 권한

- 추상적 규범통제
 - － 위헌직접소송(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ADI) : 브라질 연방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연방 또는 주 법률의 위헌여부를 제기함. 청구권자로는 대통령, 연방상원 상임위원회, 연방하원 상임위원회, 주 입법의회 상임위원회, 주지사, 연방검찰총장, 브라질변호사회 연방위원회, 연방의회에 대표를 보유한 정당, 노사단체연합이 있음
 - － 부작위위헌직접소송(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por Omissão, ADO) : 위헌직접소송 중에서 특별히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제기함
 - － 합헌확인소송(Ação declaratória de constitucionalidade, ADC) : 법률의 헌법합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
 - － 헌법근본원리불이행쟁송(Arguição de Descumprimento de Preceito Fundamental, ADPF) : 연방헌법 발효 이전의 법을 포함하여 공권력이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 청구함
- 구체적 규범통제
 - －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여부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고,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문제가 일반적인 파급력을 가질 경우 연방최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브라질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분산적 통제 및 사후적 통제가 혼합된 방식임

- 청구권자로는 소송당사자, 소송참가자로 인정된 제3자, 검찰의 대리인이 있음
- 인신보호명령(Habeas corpus)
 -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
- 권리보장명령(Mandado de segurança)
 - 인신보호심판이나 정보보호심판을 통해 보호되지 않으나,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
- 헌법규정실시명령(Mandado de injunção)
 - 기본권과 헌법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시행규범의 결여로 인해 불가능할 때 청구
- 정보보호명령(Habeas data)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기록 또는 데이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청구
- 권한쟁의심판
 -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행정부와 사법부, 사법부 내의 권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
- 외국과의 분쟁관할
 -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와 연방정부, 지방정부(주, 연방특구), 직할령(Território)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
 - 또한 외국정부에서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도 연방최고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관할
 -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의원, 연방최고법원 대법관, 연방검찰총장 등의 형사범죄에 대한 판단
 - 국무대신, 연방지방합의법원·연방감사원의 구성원, 해군·육군·공군사령관 등의 형사범죄 및 책임범죄²⁾에 대한 판단

5. 심리 및 결정

- 위헌직접소송, 합헌확인소송에서의 위헌판단은 대세효(erga omnes), 소급효(ex tunc),

2) 책임범죄란 공직자들의 정치·행정적 불법행위로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기속력(efeito vinculante)을 가짐

-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선언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소급효)을 가지며,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않음
 - － 법률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연방상원에 의한 결의(resolução)가 요구됨

6. 연락처

- 주 소 : Praça dos Três Poderes
Brasília- DF-CEP 70175-900
- 전화번호 : +55 61 3217 3000
- 이 메 일 : ain@stf.jus.br
- 홈페이지 : <http://portal.stf.jus.br/>

- ※ 출처 :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홈페이지
브라질 헌법
노호창, “브라질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27집, 2016.
조희문, “브라질의 헌법재판제도”,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

세네갈 헌법재판소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스위스 연방대법원

스페인 헌법재판소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상투메프린시페 민주공화국(República Democrática de São Tomé e Príncipe)
2. 수도 : 상투메(São Tomé)
3. 인구·면적 : 219,161명(2020년), 960km²(제주도의 0.5배)
4. 공용어 :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기타 토착어
5. 1인당 GDP : 2,157달러(2020년)
6. 독립일 : 1975. 7. 12.(포르투갈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São Tomé e Príncipe

2. 연혁

- 1975. 헌법 제정
- 1980. 헌법 개정
- 1987. 헌법 개정
- 1990. 헌법 개정
- 2003. 헌법 개정

3. 구성

- 2005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음(헌법 제131조)
-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32조 제1항)
 -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어 국회에서 선출됨

- 재판관 중 3인은 현직 대법관, 2인은 법학자 출신이어야 함(헌법 제132조 제2항)
- 재판관의 임기는 5년(헌법 제132조 제3항)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선출됨(헌법 제132조 제4항)
- 재판관은 독립성, 영속성 및 공정성을 보장받고 면책특권이 인정됨(헌법 제132조 제5항)
- 재판관의 면책특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헌법 제132조 제6항)

4. 권한

- 사전적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33조, 제145조)
 - 대통령은 공포되기 전의 법률, 국제조약 및 협정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수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의 1/5은 공포되기 전의 조직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제청 후 25일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대통령이 제청한 법률, 국제조약 및 협정의 경우 긴급한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심사기간이 단축됨
- 대통령의 궐위 여부 심사(헌법 제133조 제2항 제a호, 제b호)
- 정당의 합헌성 심사(헌법 제133조 제2항 제e호)
- 국민투표의 합헌성 심사(헌법 제133조 제2항 제f호)
- 추상적 규범통제(헌법 제133조, 제147조)
 -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법무부장관, 국회의원의 1/10은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법률의 위헌 선언(헌법 제148조)
- 재판소원(헌법 제149조)
 - 법원이 특정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은 재판 또는 심판 중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헌법 제149조 제1항)
 -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헌법 제149조 제5항)

5. 심리 및 결정

-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함(헌법 제150조 제1항)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조약이나 협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함(헌법 제146조 제1항)

6.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st/>

※ 출처 : 상투메프린시페 헌법

(2021. 8. 작성)

세네갈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세네갈 공화국(République du Sénégal)
2. 수도 : 다카르(Dakar, 350만명)
3. 인구·면적 : 1,674만명(2020년), 196,723km²(한반도와 유사)
4. 공용어 : 프랑스어, 월로프어
5. 1인당 GDP : 1,522달러(2019년)
6. 독립일 : 1960. 4. 4.(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eil Constitutionnel du Sénégal

2. 연혁

- 1960.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담당
- 1992. 5. 30.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신설(199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조직법 제92-23호)
- 2016. 7. 14. 헌법재판소조직법 개정(제2016-23호)
- 2001. 1. 22. 헌법 개정(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6년, 2018년 조문별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1인, 부소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89조, 2016. 4. 5. 개정)
- 재판소장, 부소장 및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2명은 국회의

장이 추천하는 4인의 리스트에서 임명해야 함

- 재판관 자격 :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전·현직 법관, 전·현직 법과대학 교수, 전·현직 검사 또는 변호사(헌법재판소조직법 제4조)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불가
- 재판관의 요청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임기만료 전에 임기를 종료할 수 있음(재판관의 독립성 보장, 헌법 제89조)
- 재판관직은 정부직, 각료직, 선거직, 변호사직, 사법보조관 및 모든 사영리활동과 겸임불가
- 재판관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허가 없이 체포, 구속 또는 소추되지 않음(헌법 제93조)

4. 권한

-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공포 전 법률 또는 비준 전 국제조약의 합헌성 심사
 -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1/10이상이 청구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 공포된 법률 혹은 비준 및 승인된 조약에 관하여 국민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사건은 정지됨
- 집행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헌법 제92조)
-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통제(헌법 제52조)
- 국민투표에 관한 자문(헌법 제51조)
 -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회부하기 전에 국회의장의 자문을 듣고 수상의 제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함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결과 공표 등
 -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1차 투표¹⁾ 전 60일~75일 사이에 헌법재판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함(헌법 제29조, 2018. 5. 11. 개정)

1) 절대다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가 치러짐. 2차 투표에서는 상대다수만으로 당선 이 결정됨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1차 투표 35일 전에 선거후보자 명부 공표(헌법 제30조, 2018. 5. 11. 개정)
- 헌법재판소는 선거 전 선거후보자 등록 시와 개표결과국가위원회의 선거결과에 대한 가(假)선언 후에만 개입가능,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으로 선거결과 공표(헌법 제35조)
- 대통령 사임, 사망 및 권한행사 장애상황 확인(헌법 제31조)
 - 대통령의 사임 확인은 대통령, 부통령 및 장관(서열순)이, 사망 및 권한행사 장애상황 확인은 국회의장, 부통령 및 장관(서열순)이 각각 청구

5. 심리 및 결정

- 심판은 재판소장에 대한 청원(requête)의 형식으로 청구
- 심리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진행
-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판소장이 결정권 가짐(헌법 제89조, 헌법재판소조직법 제23조)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련하여 세네갈의 국가 의전서열은 ① 대통령, ② 국회 의장, ③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④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순임
- 각 사건마다 재판소장은 주심재판관을 임명함(헌법재판소조직법 제14조)
- 심판비용은 무료, 대심주의 원칙 적용 안 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공권력과 모든 행정 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속함(헌법 제92조)

6. 연락처

- 주 소 : Rue Saint Jean X XⅢ No° 68 Dakar
- 전화번호 : (+221) 33 826 57 51
- 홈페이지 : <https://conseilconstitutionnel.sn>

※ 출처 : 세네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2001년 1월 22일 세네갈 헌법
2016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조직법 제2016-23호

(2021. 3. 작성)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세르비아(Republic of Serbia)
2. 수도 : 베오그라드(Belgrade, 163만명)
3. 인구·면적 : 870만명(2021년), 88,361km²(한반도의 1/3)
4. 공용어 : 세르비아어
5. 1인당 GDP : 7,149달러(2019년)
6. 독립일 : 2006. 6. 5.(新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Serbia

2. 연혁

- 1963. 4. 9. 세르비아(Socialist Republic of Serbia) 헌법에 따라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설립
- 1963. 12. 25. 세르비아 헌법재판소법 제정 - 헌법재판소의 권한, 재판 및 그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 1964. 2. 15.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활동 개시
- 1992. 4. 유고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개 공화국으로 구성) 신 헌법 제정
- 2003. 2. 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 헌법채택
- 2004. 4. 7.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설립
- 2006. 6. 5. 몬테네그로가 탈퇴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 계승
- 2006. 9. 30.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c of Serbia) 헌법 채택

- 2006. 11. 10.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발효
- 2007. 11. 24. 헌법재판소법 채택(2011년, 2013년, 2015년 5월 및 12월 개정)
- 2013. 11. 14. 현행 헌법재판소 규칙 채택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포함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한번만 중임 가능
- 재판관은 5명씩 각각 국회, 대통령, 파기대법원에서 임명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임기는 3년이며 중임 가능
- 재판관 자격 : 40세 이상의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저명한 법률가

4. 권한

- 규범통제
 - 법률의 헌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비준된 국제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가능(헌법 제168조, 제169조)
 - 국제조약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기타 일반법령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자치지역 및 지방정부 법령과 일반법령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법령, 단체협약 (collective agreements)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권한쟁의
 -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 중앙정부기관과 자치지역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 자치지역이나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자치지역과 지방정부의 보호
 - 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청구)
 - 자치지역 또는 지방정부 권한 침해 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법률 및 일반 법령의 합헌성(적법성) 심판(헌법재판소 직권으로 개시)

- 헌법적 질서의 폭력적 전복, 인권 침해, 인종·국가·종교에 대한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금지 심판
- 대통령의 헌법 위반 심판
- 법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소송
- 헌법소원 심판
- 기타 헌법에 규정된 사항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의 청구는 개인, 단체 및 국가기관이 하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위헌 여부 심사
-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예비회의(preparatory meeting), 자문회의(consultative meeting)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예비회의는 헌법재판소장, 재판소회의의 의결, 재판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공청회(public hearing) 또는 자문회의(consultative meeting)의 필요성 및 그 참가자, 회의소집 시기 등을 결정
- 실무회의는 일주일 단위로 개최. 헌법재판소장, 재판소회의의 의결 또는 실무기구(working body)나 재판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 공청회는 합헌성(적법성) 심사, 선거소송,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종교단체의 활동 금지 사건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거나 법령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임
-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공무원, 학자 등을 소환하여 의견과 설명을 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짐. 단, 재판소 직권으로 개시한 법률의 합헌성(적법성) 심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재판관의 2/3
-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 및 기타 규정은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효력 상실
- 다수의견에 반대한 재판관은 회의시 구두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결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반대의견은 결정문과 함께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
- 일반법령의 위헌성 및 적법성 심사의 경우, 법령 및 기타 규정의 집행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면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집행

정치 가치를 내릴 수 있음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원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누림
- 헌법재판소의 상설기구로서 편집위원회(Redaction Commission), 합헌성 및 적법성 집행 감시 위원회(Commission for Monitoring the Achieved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 조직 및 재정문제 위원회(Organizational and Financial Affairs Commission)가 있음

7. 연락처

- 주 소 : 15 Bulevar kralja Aleksandra st.
1120 Belgrade 35,
Republic of Serbia
- 전화번호 : +381 11 285 5000
- 홈페이지 : <http://www.ustavni.sud.rs/page/home/en-GB>

※ 출처 :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세르비아 헌법
세르비아 헌법재판소법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규칙

(2021. 2. 작성)

스위스 연방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
2. 수도 : 베른(Bern, 15만명)
3. 인구·면적 : 863만명(2020년), 41,290km²(한반도의 1/5)
4. 공용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5. 1인당 GDP : 86,601달러(2020년)
6. 독립일 : 1648. 8. 1.(프랑크왕국,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 양원제

1. 명칭 : 연방대법원

- 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

2. 연혁

- 1874. 5. 29. 연방헌법 제정
- 1875. 1. 1. 연방대법원 신설
- 1943. 12. 16. 사법기관법 제정
- 1999. 4. 18. 헌법 개정
- 2005. 6. 17. (신)연방대법원법 제정

3. 구성

- 대법원장과 부원장 포함 35인에서 45인의 대법관¹⁾과 대법관 수의 2/3를 넘지 않는 수의 예비대법관(juge suppléant)으로 구성(연방대법원법 제1조)

1) 현재 대법관은 37인(이탈리아어 3인, 프랑스어 12인, 독일어 22인, 로망슈어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의회가 대법관을 선출(연방대법원법 제5조)하고, 선출된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부원장을 연방의회가 선출(연방대법원법 제14조)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68세임(연방대법원법 제9조)
- 대법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연방대법원법 제14조)
- 대법원장 궐위 시 부원장이, 부원장 궐위 시 대법관 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신함(연방대법원법 제14조)
- 대법관은 연방의회, 연방내각, 기타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활동, 외국을 위한 공식직무, 주 기관, 기타 영리활동과 겸직금지(연방대법원법 제6조)

4. 권한(헌법 제189조 등)

- 연방법률, 국제법, 주 상호간 법률, 주 헌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가 공법인에 승인한 보장, 참정권에 관한 연방과 주의 규정 위반 여부 심판
- 연방과 주, 주 간의 권한쟁의
- 민사법원, 행정법원, 조정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기능(연방대법원법 제72조 이하)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의회 및 연방내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음

5. 심리 및 결정

- 소송은 공용어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원심 결정의 언어로 진행됨. 당사자가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언어가 채택될 수 있음(연방대법원법 제54조)
- 즉흥적인 평의, 심리, 표결은 공개법정에서 개시하며, 안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 중인 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일부 또는 전부의 비공개를 명할 수 있음(연방대법원법 제59조)
-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연방대법원법 제122조)
- 항소는 일반적으로 정지효가 없으나, (a) 민사에서 형성적 판결에 반하는 경

우, (b) 형사에서 자유박탈형을 선고한 결정의 경우, (c)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 출입국금지 결정 및 기타 비밀재산, 목적물의 양도 등에 관한 정보 전달을 허가하는 결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정지효가 있음(연방대법원법 제103조)

- 예심판사(juge instructeur)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지효에 대하여 다르게 판결할 수 있음(연방대법원법 제103조)

5. 연락처

- 주 소 : Avenue du Tribunal-Fédéral 29, 1005
Lausanne, Switzerland
- 전화번호 : +41 21 318 91 11
- 팩스번호 : +41 21 323 37 00
- 홈페이지 : <http://www.bger.ch/fr> (불문 홈페이지)

- ※ 출처 : 스위스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대법원법

(2021. 8. 작성)

스페인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스페인(España)
2. 수도 : 마드리드(Madrid, 333만명)
3. 인구·면적 : 4,735만명(2020년), 505,957km²(한반도의 약 2.3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27,057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ribunal Constitucional de España

2. 연혁

- 1931. 12. 9. 제2공화국 헌법 승인
 - 헌법보장재판소(Tribunal de Garantias Constitucionales) 설립
 -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자문 기구 역할 담당
- 1936. 8. 20. 스페인 내전으로 재판관 사임
- 1978. 12. 27. 헌법 승인(헌법 제4장: 헌법재판소 설립 규정)
- 1979. 10. 3.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80. 2. 14. 첫 재판관들 임명
- 1980. 8. 11. 첫 번째 결정 선고
- 2011. 9. 27. 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159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6조, 제26조)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4인을, 정부와 사법부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가 각각 2인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매 3년마다 1/3 교체
 - 재판관은 연임 불가. 다만, 임기를 마치지 못한 다른 재판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재판관은 3년 미만으로 재직할 경우 연임 가능
-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 비밀투표를 통해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고, 국왕이 임명.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 가능
-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
- 재판관 자격 : 법관,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 중에서 15년 이상 법률가로서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스페인 국민
- 재판관은 대법원 형사재판부 앞에서만 형사책임을 짐

4. 권한

- 추상적 규범통제
 - 총리, 호민관(Defensor del pueblo), 50명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의 제청에 따른, 공포된 법률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다만, 해당 법률 또는 명령·규칙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청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구체적 규범통제
 -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나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제청할 경우 이에 대해 심판(헌법재판소법 제35조)
- 조약의 합헌성에 대한 사전통제
 - 국가가 승인하기 전의 국제조약에 대하여, 정부, 상원 또는 하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8조)
- 의회의 승인을 거친 자치주 헌장안 또는 자치주 헌장 개정안에 대한 사전통제(헌법재판소법 제79조)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법재판

- 소법 제41조 제2항), 재판소원도 인정되나, 권리나 자유의 침해 여부 및 침해시 그 회복에 권한을 한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심사하는 것은 자제함(헌법 재판소법 제54조)
- 청구권자는 호민관, 검찰,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자나 소송의 당사자(헌법 재판소법 제46조)
- 권한쟁의심판
- 국가와 자치주 간, 자치주 상호간(헌법재판소법 제60조), 행정부·상원·하원·사법부총평의회 등 헌법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헌법재판소법 제73조)
 - 국가 또는 자치주의 법률의 지위를 갖는 규범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 침해 관련 지방자치 방어의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2)
- 자치주 결정과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하여 정부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판(헌법재판소법 제76조)

5. 심리 및 결정

-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o)와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2개의 재판부(Sala)가 있으며, 제1재판부의 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제2재판부의 의장은 부소장이 맡음(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제7조)
- 전원재판부가 규범통제, 권한쟁의심판을 관할하고(헌법재판소법 제10조), 헌법소원심판은 지정재판부(Sección)에서 사전심사 후, 재판부(Sala)로 이송하여 심리(헌법재판소법 제50조, 제51조).
- 전원재판부와 재판부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재판관 2/3(헌법재판소법 제14조), 의결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참여 재판관의 과반. 단, 가부동수일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헌법재판소법 제90조)
-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83조)
- 헌법재판의 선고는 결정(Sentencia)의 형식으로 하지만, 각하, 소송 취하 등의 경우는 불수리결정(Auto)의 형식을 채택(헌법재판소법 제86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판력이 있고, 불복할 수 없으며, 법률이나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한 위헌결정은 대세효를 가짐(헌법 제164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함(헌법재판소법 제87조)

6. 기타 사항

-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90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재판관 개별의견이 있는 경우 결정에 포함)은 관보에 게재됨(헌법 제164조 제1항)
- 헌법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조항 이외 부분의 법률 효력은 존속(헌법 제164조 제2항)

7. 연락처

- 주 소 : C/Domenico Scarlatti, 6
28003 Madrid
España
- 전화번호 : +34 915 508 000
- 홈페이지 :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es>

※ 출처 : 스페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

(2021. 8. 작성)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
2. 수도 :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42.9만명)
3. 인구·면적 : 546만명(2021년), 49,035km²(한반도의 약 1/4)
4. 공용어 : 슬로바키아어
5. 1인당 GDP : 19,546달러(2018년)
6. 독립일 : 1993. 1. 1.(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제)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Slovak Republic

2. 연혁

- 1992. 9. 1. 헌법 제정(1993. 1. 1. 발효)
- 1993. 1. 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로 독립
- 1993. 2. 15. 헌법재판소 설립
- 1998. ~ 2017. 13번의 헌법 개정
- 2019. 4. 18. 현행 헌법 개정(2019. 7. 1. 발효)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가 2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중임불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 자격 :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률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0세 이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슬로바키아 국민

- 재판관은 국회의원 겸임 혹은 행정부 소속 금지
- 재판관 직의 사임 혹은 해임시, 대통령은 국회가 제안한 2명의 후보 중에서 새로운 임기의 헌법재판관 임명

4. 권한

- 법률, 명령,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헌법 제125조)
 - 법률의 헌법, 헌법적 법률¹⁾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정부, 장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 헌법적 법률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의 헌법, 헌법적 법률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 헌법적 법률, 공포된 조약, 법률 및 정부·장관·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헌법 제125a조)
 - 국회 동이가 필요한 조약안의 헌법과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대통령 또는 정부가 조약안의 국회제출 전 심판청구 가능
- 국민청원 또는 국회결의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공고 전 투표 안건의 헌법과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25b조)
 - 대통령이 국민투표안 공고 전에 심판청구 가능
- 분쟁의 소지가 있는 헌법과 헌법적 법률의 해석(헌법 제128조)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단, 법률에 의하여 타 국가기관에게 권한쟁의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헌법 제126조)
- 헌법소원심판(헌법 제127조, 제127a조)
 - 기본권 및 슬로바키아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조약상의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과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1) 헌법재판소법, 종교자유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등의 법률을 말한다.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위헌 또는 위법적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심판
- 국회의원 권한의 존부확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판(헌법 제129조 제1항)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소송(헌법 제129조 제2항)
- 일반 국민투표 및 대통령 해임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소송(헌법 제129조 제3항)
- 정당과 정치결사의 해산결정 및 정치활동 금지결정의 헌법적 법률과 기타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29조 제4항)
- 대통령의 반역행위나 의도적인 헌법 침해 행위 시, 국회의 소추에 의한 대통령 탄핵심판(헌법 제129조 제5항)
- 국가비상사태 선포행위와 그에 수반한 부수적 행위의 헌법 및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29조 제6항)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um)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Senate)가 있음(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전원재판부는 과반수인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석으로 심리·결정하며, 재판관 전원의 과반수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4항, 제5항)
- 지정재판부 재판관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12개월(헌법재판소법 제11조 제2항, 제4항)
-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의 심리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주심 재판관(Rapporteur)을 임명(헌법재판소법 제6조)
- 이미 결정한 지정재판부와 법리를 달리하는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판결(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1항)
-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조약안의 위헌 여부 심판, 국민투표안건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 해석권,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정당과 정치결사의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결정의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 탄핵심판, 국가비

상사태 선포행위와 그에 수반한 부수적 행위의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 궐위 확인 등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헌법 제13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 전원재판부의 관할이 아닌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다수결로 결정(헌법 제13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Chancellery)과 심판업무의 실무적 보조를 위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연구관(Court advisor)을 두고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조~제3조)
- 재판관이 유죄확정판결을 받거나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 직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재판절차에 불참한 경우,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항)

7. 연락처

- 주 소 : Hlavná 110
045 65 Košice
slovakia
- 전화번호 : +451 55 720 7211
- 팩스번호 : +421 55 622 7629
- 홈페이지 : <http://www.concourt.sk>

※ 출처 :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슬로바키아 헌법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법

(2021. 2. 작성)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슬로베니아 공화국(Republic of Slovenia)
2. 수도 : 류블라나(Ljubljana, 28만명)
3. 인구·면적 : 208만명(2021년), 20,270km²(한반도의 약 1/11)
4. 공용어 : 슬로베니아어
5. 1인당 GDP : 25,039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6. 25.(구 유고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대통령중심제 가미),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 연혁

- 1963. 6. 5. 구 유고슬라비아 헌법재판소 설립
- 1991. 6. 25. 슬로베니아 공화국 분리 독립
- 1991. 12. 23. 슬로베니아 공화국 헌법 제정
- 1994. 4. 2. 슬로베니아 공화국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7. 7. 15.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6. 11. 30. 제7차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63조)
-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을 받아 하원(National Assembly)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하원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헌법 제163조, 헌법재판소법 제14조)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헌법 제165조)
-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재판관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함(헌법 제165조)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헌법 제163조). 전임 소장 임기가 끝나기 전 선거 개시(헌법재판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장 부재시에는 부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을 대리(헌법재판소법 제10조)
- 재판관 자격 : 40세 이상의 법률전문가(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은 하원의원(National Assembly Deputy)와 동일한 면책특권을 가짐(헌법 제167조)

4. 권한(헌법 제160조 등)

- 규범통제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법률 및 기타 법규의 비준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의 합치 여부 심판
 -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헌법 및 법률과의 합치 여부 심판
 - 행정부령의 헌법, 법률, 법규와의 합치 여부 심판
 - 비준절차과정에 있는 조약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국회에 구속력을 갖는 의견 제시
-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한 개별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모든 구제조치 완료 후 심판청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간, 하원과 대통령 및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당의 강령 및 활동의 위헌 여부 심판
- 대통령, 총리 및 각료에 대한 탄핵심판(헌법 제109조, 제119조)
- 하원의 국회의원 당선 확정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헌법 제82조)
- 기타 헌법과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한 심판

5. 심리 및 결정

- 심판사건은 재판소장 및 재판관과 함께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에서 심리하며, 특정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담당 연구관도 참석(헌법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칙 제58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헌법 제162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헌법소원사건의 심리 시작여부 결정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비공개 재판관회의에서 담당(헌법재판소법 제54조), 사건 수리 후 심리는 비공개 재판관회의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재판이 열릴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57조)
-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재판관회의 혹은 공개재판에서 담당하며, 과반수이상의 재판관이 참여 필요(헌법재판소법 제35조), 결정은 재판관회의에서 이루어짐(헌법재판소법 제40조)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 공포된 다음날부터 해당 법률 전체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효력이 있음. 다만 헌법재판소가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폐지 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로부터 법률 전체 또는 일부가 폐지됨(헌법 제161조, 헌법재판소법 제43조)
- 계속적 사실관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폐지효가 미침(헌법재판소법 제44조)
- 헌법재판소는 법규 또는 행정부령이 위헌 또는 위법인 경우 해당 법규 또는 행정부령을 폐지하거나 또는 위헌성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5조)

6. 기타사항

- 결정문의 자구수정을 하는 편집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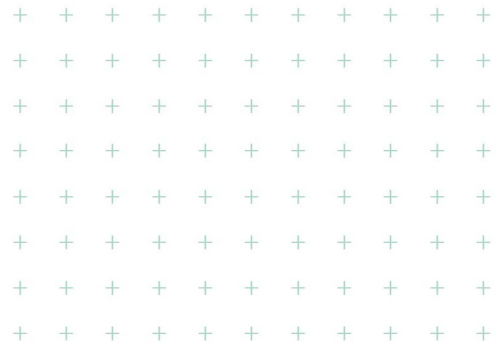
7. 연락처

- 주 소 : Beethovnova ulica 10
SI-1001 Ljubljana
p. p. 1713
Slovenija
- 전화번호 : +386 1 477 64 00
- 팩스번호 : +386 1 251 04 51
- 이 메 일 : info@us-rs.si
- 홈페이지 : <http://www.us-rs.si/en/>

- ※ 출처 :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슬로베니아 헌법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법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칙

(2021. 7.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아프가니스탄 대법원

안도라 헌법재판소

알바니아 헌법재판소

알제리 헌법재판소

에콰도르 헌법재판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요르단 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이집트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아르메니아 공화국(Republic of Armenia)
2. 수도 : 예레반(Yerevan, 109만명)
3. 인구·면적 : 297만명(2021년), 29,800km²(한반도의 약 1/7)
4. 공용어 : 아르메니아어
5. 1인당 GDP : 4,605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9. 21.(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 연혁

- 1995. 7. 5. 헌법 제정
- 1997. 12. 9.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5. 11. 27. 헌법 개정
- 2006. 7. 1.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5. 12. 6. 헌법 개정
- 2018. 1. 17.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166조, 헌법재판소법 제2장, 제3장)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9인의 재판관 중 대통령 추천 3인, 정부 추천 3인, 법관총회 추천 3인으로 구성

-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중임 또는 연임 불가
- 직무수행 종료를 원하는 재판관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헌법 재판소장에게 통지함(헌법재판소법 제12조)
- 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19조)과 부소장(헌법재판소법 제20조)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6년이고 재선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장 부재시 부소장이 한시적으로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재판소장과 부소장의 부재시 재판소장의 직은 재판관 중 연장자가 대리(헌법재판소법 제18조)
- 재판관 자격 :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15년 이상 전문 법조인으로 종사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아르메니아 공화국 시민(헌법재판소법 제4조)
- 재판관은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못함(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4조)
- 재판관은 어떠한 지시를 요청하거나 받지 않으며, 재판관의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금지하여 인적 독립성 확보(헌법재판소법 제7조)
- 재판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면책특권을 가짐(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9조)

4. 권한(헌법 제168조, 제169조)

- ① 법률, 국회의 결의, 대통령령 및 대통령 행정명령, 정부와 수상의 결정사항, 2차 규제적 법령의 헌법상의 합치 여부 심판
 - 청구권자 : 대통령, 국회의원 1/5, 정부, 지방자치기관, 규제적 법령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2장에서 규정한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국민(관련 사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함),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제적 법령의 위헌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경우 당해사건 법원
- ② 헌법 개정안 채택 전 또는 국민투표에 부의된 법률안 채택 전 해당 초안의 헌법 합치 여부 심판
 - 청구권자 : 국회
- ③ 비준 전 국제조약에 명시된 의무조항의 헌법상의 합치 여부 심판
 - 청구권자 : 정부

- ④ 헌법기관 간의 헌법적 권한에 관한 쟁의 심판
 - 청구권자 : 국회의원 1/5, 대통령, 정부, 최고사법위원회, 지방자치기관
- 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 청구권자 :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국민 발안에 따라 국민투표에 입안된 법률안의 권한 있는 대표
- ⑥ 국회의원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
 - 청구권자 : 국회의원 1/5, 국회의 위원회
- ⑦ 대통령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청구권자 : 국회(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 ⑧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 여부 확정
 - 청구권자 : 정부
-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징계책임에 관한 문제의 결정
 - 청구권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이상
- 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
 - 청구권자 : 국회(국회의원 3/5 찬성에 의해)
- ⑪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형사소송 제기에 대한 동의 또는 재판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자유 박탈에 대한 동의 여부 심판
 - 청구권자 : 정부, 검찰총장
- ⑫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정당 활동의 정지 또는 금지에 관한 심판
 - 청구권자 : 국회(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정부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session)는 헌법재판소 소재지인 예레반에서 개최함. 필요시 절차적 결정을 통해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 다른 지역에서 개정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조)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제반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헌법재판소법 제32조)
- 청구인은 본안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청구를 철회할 수 있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이 공공의 이익에 연관될 경우에는 철회를 거절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30조)

-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유형으로는 결정(Decision)과 의견(Opinion)이 있음. 권한 중 ⑦의 경우에만 의견을 공표하고 그 외에는 결정을 선고함(헌법 제170조)
-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결정은 모두 최종적이며, 공표(선고)시 효력 발생
- 본안 사건의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과반수이며, 다음의 경우에만 재판관 2/3 이상임
 - 대통령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권한 ⑦)
 - 헌법재판관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권한 ⑩)
 - 정당 활동의 정지 또는 금지에 관한 심판(권한 ⑫)
-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시 해당 법령이 폐지되는 장래의 시점을 정할 수 있음(헌법 제170조 제3항)

6. 연락처

- 주 소 : 10, av. Marshall Baghramian 375019 Yerevan Armenia
- 전화번호 : +374 10 58 81 30
- 팩스번호 : +374 10 52 67 64
- 홈페이지 : <http://www.concourt.am/>

※ 출처 :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아르메니아 헌법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법

(2021. 5. 작성)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아르헨티나 공화국(República Argentina)
2.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377만명)
3. 인구·면적 : 4,537만명(2020년), 278만km²(한반도의 약 28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8,441달러(2020년)
6. 독립일 : 1816. 7. 9.(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연방대법원

- 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Argentina

2. 연혁

- 1853. 5. 1. 헌법 제정
 - 이후 1860년, 1866년, 1898년, 1949년, 1957년, 1972년, 1994년 개정됨
- 1863. 1. 15. 연방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운영 개시
- 1994. 12. 15. 헌법 개정(현행 헌법)
 - 헌법 제75조 제22항에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세계인권선언, 미주인권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제노 사이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이 헌법적 지위(jerarquía constitucional)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3. 법원 조직 및 연방대법원의 구성

- 법원 체계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되며, 연방법원은 주로 국가적인 사안이나 서로 다른 주나 주민들이 상호 당사자인 사안을 관할함
- 대법관은 9인으로 구성됨
 -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임명됨(헌법 제99조 제4항)
 - 대법관의 자격은 8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상원의원 자격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이고, 6년 이상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법관의 정년은 75세이며,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경우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음
 - 한편,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죄를 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탄핵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하원이 먼저 탄핵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함
- 연방대법원장은 대법관 2/3 이상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3년임
- 사법위원회(Consejo de la Magistratura)
 - 1994년 헌법에 의해 창설된 사법위원회는 연방판사 임명 및 징계 등 사법부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임(헌법 제114조)
 - 2006년 당시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한 바 있음

4. 헌법재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권한

- 규범통제
 - 헌법 제116조는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이 헌법에 관한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산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
 - 헌법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국연방대법원과 같이 판례(Caso Sojo, 1887년)를 통해 위헌법률심사권이 확립됨
 - 위헌여부의 제청은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inaplicabilidad)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규범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이는

입법자의 권한에 속함

○ 헌법소원

- 1994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소원(amparo)제도 도입됨
- 헌법 제43조는 공권력 또는 사인(particular)¹⁾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적절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헌법소원 절차는 약식의(sumarísimo)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청구, 준비서면,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짧음. 또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는 자체로 원칙적으로 문제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 판사는 경우에 따라 판결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규범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음

○ 연방대법원의 원심관할권

- 연방대법원은 ① 대사,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② 주(provincia)가 당사자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원심관할권(jurisdicción)

5. 심리 및 결정

- 법률의 위헌선고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미치며(대사인효),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선고에 따른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법률은 계속 효력을 가짐
-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기판력(cosa juzgada)이 있음.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재판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음

6. 연락처

○ 주 소 : Talcahuano 550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1) 이 절차는 아르헨티나 ‘국가민사상사소송법’에 기반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서의 사인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점의 형태를 지니는 기업 및 단체를 지칭한다.

(C1013AAL)

- 전화번호 : +54 11 4370 4600
- 이 메 일 : consultas@csjn.gov.ar
- 홈페이지 : <http://www.csjn.gov.ar/>

※ 출처 : 아르헨티나 헌법

국가법원의 관할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48호

DALLA VIA, Alberto Ricardo, “La justicia constitucional en Argentina”, Anuario iberoamericano de justicia constitucional, N^o 1, 1997.

NOGUEIRA ALCALÁ, Humberto,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es de Sudamérica a principios del Siglo XXI”, Ius et Praxis v.9 n.2 Talca, 2003.

(2021. 8. 작성)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Republic of Azerbaijan)
2. 수도 : 바쿠(Baku, 222만명)
3. 인구·면적 : 1,022만명(2021년), 86,600km²(한반도의 약 4/10)
4. 공용어 : 아제르바이잔어(러시아어 통용)
5. 1인당 GDP : 4,851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8. 30.(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 연혁

- 1995. 11. 12. 헌법 제정
- 1998. 7. 14. 헌법재판소 설립
- 2002. 8. 24.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 2003. 12. 23. 헌법재판소법 채택
- 2009. 3. 18.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 2016. 9. 26.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30조 제1항)
- 헌법재판소의 권한행사는 7인 이상의 재판관 임명으로 개시(헌법재판소법 제

12조 제2항)

-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Milli Majlis)가 선출(헌법 제130조 제2항)
- 재판관의 임기는 15년이고, 중임 불가. 재판관 정년은 70세이나, 후임 재판관이 선출될 때까지는 70세에 달한 이후에도 계속 직무 수행(헌법재판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헌법재판소법 제20조 제1항)
- 재판관 자격 : 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 국민으로서,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헌법 제126조, 헌법재판소법 제11조 제1항)

4. 권한

(1) 규범통제(헌법 제130조 제3항 제1호~제7호)

- ① 법률, 대통령령 및 대통령 훈령, 국회규칙, 내각령 및 내각 훈령,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
- ② 대통령령, 내각령,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③ 내각령,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의 대통령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 ④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내각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Nakhichevan 자치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자치 정부 헌법·법률·내각령에의 합치 여부도 심판)
- ⑥ 발효되지 않은 국제협약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사전적 규범통제), 정부 간 협약의 헌법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 ⑦ Nakhichevan 자치정부의 헌법·법률·의회규칙·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 Nakhichevan 자치정부의 법률·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 Nakhichevan 자치정부 내각령의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및 내각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30조 제3항 제8호)

(3) 헌법 및 법률의 해석(헌법 제130조 제4항)

(4) 헌법소원심판(헌법 제130조 제5항)

- (5) 인권 및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법원이 청구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헌법 제130조 제6항)
- (6)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권위원(human rights commissioner, 옴부즈만)의 청구에 의한 심판(헌법 제130조 제7항)
- (7) 헌법이 정한 기타 임무(헌법 제130조 제8항)
 - ① 국회의원 선거소송(헌법 제86조)
 -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 최초 회기 개시일 결정(헌법 제88조 제1항)
 - ③ 전쟁 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 임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결정(헌법 제101조 제5항)
 - ④ 대통령 선거결과 공표(헌법 제102조)
 - ⑤ 대통령 사임 의사 수리에 관한 사항 결정(헌법 제104조 제2항)
 - ⑥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사실 확정(헌법 제104조 제3항)
 - ⑦ 대통령 탄핵소추(헌법 제107조)
 - ⑧ 국회 또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헌법 제153조)

5. 심리 및 결정

- 권한 (1) - (3)의 청구는 대통령, 국회, 내각, 대법원, 검찰청, Nakhichevan 자치정부 의회가 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1항)
- 권한 (1)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채택한 법령에 의하여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권한 (4)의 헌법소원(Complaints)의 형태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권한 (1) ④에 대한 개인과 인권위원의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함(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2항)
 -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적용되지 말아야 할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용된 경우
 - 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석되지 못한 경우
-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 본안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하며(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요건심리는 지정

재판부에서 진행(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단, 권한 (7)에 대한 사건은 요건 심리 없이 전원재판부에서 즉시 본안심리(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

- 전원재판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헌법 재판소법 제6조 제6항),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권한 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9항)
- 전원재판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2항)
-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사실의 확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헌법 제104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3항)
-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가 결정.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후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이 결의안은 다시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어 국회 의결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한 후 재판관 7인 이상의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결의안에 서명하여 대통령 탄핵을 확정(헌법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59조)
-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국적이고, 그 결정의 효력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전역에 미침(헌법 제130조 제9항, 헌법재판소법 제66조)
- 주문 또는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결정과 함께 공표(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7항, 제64조)
- 위헌 또는 위법으로 선언된 법률, 기타 법령, 그 개별조항 및 정부협정은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적 규범통제에 의 해 위헌으로 선언된 국제협약은 발효되지 못함(헌법 제130조 제10항, 헌법재 판소법 제66조 제3항)

6. 연락처

- 주 소 : 1 Gencler Meydani
Baku AZ1005
Azerbaijan
- 이 메 일 : contact@constcourt.gov.az
- 전화번호 : +994 12 492 96 68

- 팩스번호 : +994 12 492 36 78
- 홈페이지 : <http://www.constcourt.gov.az/>

※ 출처 :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아제르바이잔 헌법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법

(2021. 7. 작성)

아프가니스탄 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2. 수도 : 카불(Kabul, 500만명)
3. 인구·면적 : 3,892만명(2020년), 652,860km²(한반도의 약 3배)
4. 공용어 : 다리어, 파슈토어
5. 1인당 GDP : 508달러(2020년)
6. 독립일 : 1919. 8. 19.(영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대법원

- Supreme Court of Afghanistan

2. 연혁

- 1964. 10. 민주헌법 제정
- 2004. 1. 4. 대법원 설립
- 2004. 1. 26. 신헌법 비준

3. 구성

- 대법원은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하원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함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 불가
-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자격 : 임명 당시 40세 이상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며 법학 또는 이슬람 법학 분야의 고등교육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사법부에서 적

절한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재직 중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음
-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재직 중 헌법 제127조의 예외(형사범죄 또는 직무에 관한 범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함

4. 헌법재판 관련 권한

- 정부 또는 하급심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 법령,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판(헌법 제121조)
- 재판소원 심판(법원조직법 제26조)

5. 연락처

- 주 소 : Great Massoud Road
Kabul, Afghanistan
- 홈페이지 : <http://supremecourt.gov.af/>

※ 출처 : 아프가니스탄 헌법
아프가니스탄 법원조직법

(2021. 8. 작성)

안도라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안도라 공국(Principauté d'Andorre)
2. 수도 : 안도라 라 벨라(Andorra la Vella)
3. 인구·면적 : 7만 7천명(2019년), 468km²
4. 공용어 : 카탈로니아어(catalan), 불어 및 스페인어
5. 1인당 GDP : 42,029달러(2018년)
6. 독립일 : 1278. 9. 8.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단원제
8. 공동국가원수제 :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의 우르헬(Urgel) 교구 대주교가 공동공후로 되어 있고, 봉건제도 속의 자체제도 유지

1. 명칭 : 헌법재판소

- Tribunal constitucional d'Andorre
(Tribunal constitutionnel d'Andorre)

2. 연혁

- 1993. 4. 28. 안도라 최초 성문헌법 제정(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3. 9. 3.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2. 6. 28.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06. 5. 7.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공동공후(Coprinceps : 프랑스 대통령 및 Urgel 대주교)가 각각 1인씩 지명, 나머지 2인은 국회(Consell General)가 선출하며 공동공후가 임명

- 국가가 임명하는 2인은 국회의원 3/5 이상 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8년이며, 매 2년마다 1인씩 교체됨
- 재판관 궐위 시,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전 재판관의 남은 임기 동안이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불가
- 재판관 자격 : 25세 이상의 법조 및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
- 재판관은 국가 및 지방행정 기관에서 공적업무와 겸직이 불가하며, 안도라 영토 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 정당·국내외 단체 또는 조합 활동 및 기타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됨

4. 권한

- 법률, 데크레(décret), 명령의 위헌 여부 심사
 - 추상적 규범통제
- 법원의 제청에 의한 구체적 규범의 위헌 여부 심판
- 비준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사
- 공동공후가 요청한 법률 및 국제조약의 합헌성에 대한 사전의견 제시
- 공동공후, 국회, 정부(Govern), 최고법원, 꼬뮌(Comuns) 간의 권한쟁의심판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공적자유(libertés publiques), 참정권을 보호하는 보호소송(recours d'empara)

5. 심리 및 결정

- 법률, 명령의 위헌심판(recours direct d'inconstitutionnalité)은 법령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1/5 이상, 정부수반(Cap de Govern) 또는 3개 꼬뮌이 제청
- 국회규칙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국회 재적의원 1/5 이상만 가능
- 소송 계속 중에 법원 및 대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 국제조약 비준 전 조약의 위헌 여부 심사는 공동공후, 정부수반 또는 국회 재

적의원 1/5 이상이 제청

- 공동공후, 국회, 사법부 및 정부 간 권한쟁의 사건은 타 기관이 헌법상 인정된 당해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분쟁, 타 기관이 헌법상 인정된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분쟁이 있으며, 소극적 분쟁의 경우 당해 기관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를 변호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청구권 인정
-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또는 제3자로서 침해받은 자는 관련 결정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부 또는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변호사 강제주의)
- 접수된 사건은 전원합의체(session plénière)에서 사건의 유형을 정하며, 재판관 중에서 제비뽑기로 주심재판관(magistrat rapporteur)을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함
- 표결은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동수일 경우 주심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짐
 - 최소 3인의 재판관이 출석하고, 사법사건(les affaires juridictionnelles)의 경우 출석 재판관 가운데 1인은 주심재판관이어야 함
- 심리 및 표결은 비공개이며, 표결은 헌법재판소장의 결정 또는 2명의 출석재판관의 요청에 따라, 비밀투표로 행해짐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은 사건의 실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된 명령(ordonnance), 본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해결방식인 아레떼(arrêté), 헌법소송(procès constitutionnels)에서만 내려지는 종국결정인 판결(jugement)이 있음
- 명령(ordonnance)과 판결(jugement)은 다른 사법기관에 항소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은 무상, 다만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요청된 문서, 사법적 보조, 증인의 출두 요청 및 소송절차상의 요청을 위하여 재판소가 명령한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모든 지출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7. 연락처

- 주 소 : Carrer de la Vall, 28
AD500 – Andorra la Vella
Andorra
- 전화번호 : +376 805 000
- 홈페이지 : <http://tribunalconstitucional.ad>

※ 출처 : 안도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안도라 헌법
안도라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알바니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알바니아 공화국(Republic of Albania)
2. 수도 : 티라나(Tirana, 70만명)
3. 인구·면적 : 287만명(2021년), 28,750km²(한반도의 약 1/8)
4. 공용어 :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5. 1인당 GDP : 5,336달러(2019년)
6. 독립일 : 1912. 11. 28.(오스만제국-옛 터키제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대통령제 가미),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lbania

2. 연혁

- 1991. 4. 29. 잠정헌법(주요 헌법조항에 관한 법률 Law no. 7491 of April 1991 및 이에 대한 추가 법률 Law no. 7561 of 29 April 1992)채택 - 잠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
- 1992. 6. 1. 헌법재판소 설립
- 1998. 11. 28. 신헌법 제정
- 2000. 2. 10. 헌법재판소법 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25조 제1항)
-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며, 3인은 대법원에 의해 선출됨(헌법 제12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헌법 제12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정년은 70세이며(헌법 제127조 제1항 제a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직을 유지함(헌법 제125조 제7항)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3인씩 교체(헌법 제125조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 헌법재판소장은 비밀투표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임 가능(헌법재판소법 제7/d조 제1항)
- 재판관 자격 : 법학 학위를 지니고, 15년 이상의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강사, 고위공무원의 경력을 지닌 명성있는 법률가(헌법 제125조 제4항)

4. 권한

- 규범통제
 - 법률의 헌법 또는 비준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a호)
 - 비준 전 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b호)
 -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 및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c호)
- 국가기관 상호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c호)
-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와 그 활동의 위헌 여부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d호)
- 대통령 해임결정 및 직무수행불능 확정(헌법 제131조 제1항 제dh호)
-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기관 공직자의 선거에 관한 문제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e호)
- 국민투표의 합헌여부와 투표결과의 확정(헌법 제131조 제1항 제e호)
-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개인 헌법소원의 심판(헌법 제131조 제1항 제f호)
- 국회의 대통령, 대법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해임결의에 대한 심판(헌법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2항, 제140조 제4항, 제115조)
-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양립불가능(영리활동)에 관한 문제 심판(헌법 제70조 제4항)

5. 심리 및 결정

-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장이 1인의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헌법재판소법 제 27조 제6항)
- 주심재판관을 포함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심리 담당(헌법재판소법 제31조)
- 본안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공개변론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헌법재판소법 제 21조 제1항)
 - － 공중도덕, 공공질서, 국가안전보장, 사생활권에 관한 심판은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1조 제2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법령의 폐지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헌법 제132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2항, 제3항)

6. 기타사항

- 의전서열상 헌법재판소장은 수상 바로 다음, 헌법재판관은 장관과 동일하게 대우(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2항)

7. 연락처

- 주 소 : Bulevardi Deshmoret e Kombit, Nr. 26
Tirana
Albania
- 전화번호 : +355 2259055
- 팩스번호 : +355 2259055
- 홈페이지 : <http://www.gjk.gov.al>

※ 출처 : 알바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바니아 헌법
알바니아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률

(2021. 7. 작성)

알제리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2. 수도 : 알제(Alger, 198만명)
3. 인구·면적 : 4,461만명(2021년), 2,381,741km²(한반도의 10.8배)
4. 공용어 : 아랍어
5. 1인당 GDP : 3,550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이원정부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 d'Algérie

2. 연혁

- 1963. 9. 10. 독립 및 헌법의 제정. 헌법위원회가 서류상으로만 설치됨
- 1989. 2. 23. 헌법개정 및 헌법위원회의 부활
- 1996. 11. 28. 새로운 헌법개정 및 헌법위원회의 권한 확장
- 2020. 12. 20.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변경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포함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4명의 재판관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은 최고법원이(최고법원 법관 중에서), 1명은 국사원이(국사원 법관 중에서) 선출하며, 헌법 교수 중에서 6명을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함
- 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의 임기는 6년 단임이고 매 3년마다 1/2씩 교체됨

- 헌법재판관은 50세 이상의, 법학 경력 20년과 헌법 연수를 받은, 민사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자유박탈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임명·선출됨. 단 헌법재판소장은 연령 제한 없음
- 헌법재판관에 임명·선출된 자는 기존의 직무 및 기타 모든 직업활동이 정지됨
- 헌법재판관은 직무상 행한 행위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가짐

4. 권한

-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
- 비준 전 조약의 합헌성 심사
- 법규명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령의 합헌성 심사
- 국회에서 통과된 조직법률에 대한 합헌성 심사(대통령의 제청으로)
- 의회(양원) 내부규칙에 대한 합헌성 심사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의 적법성 심사
-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 헌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5. 심리 및 결정

- 심리는 비공개로 함
- 결정의 선고는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함. 다만 긴급한 경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함
- 최고재판소 또는 국사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위헌성 심사는 제소된 날부터 4개월 내에 결정이 선고되어야 하며, 최대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음
-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며(다만 조직법률의 합헌성 통제에서는 재판관 절대다수로 결정),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짐

- 헌법재판소가 조약, 협정 또는 협약이 위헌임을 판단한 경우 당해 조약, 협정 또는 협약은 비준될 수 없음
- 사전적 위헌 법률심사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법률은 공포될 수 없음
- 위헌으로 결정된 오르도낭스 및 규칙(règlement)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공권력 전체와 행정청 및 사법기관 전체를 기속함

6. 연락처

- 주 소 : Boulevard du 11 décembre 1960
El-Biar – ALGER
- 홈페이지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dz/>

※ 출처 : 알제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제리 헌법

(2021. 8. 작성)

에콰도르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에콰도르 공화국(República del Ecuador)
2. 수도 : 키토(Quito, 162만명)
3. 인구·면적 : 1,764만명(2020년), 256,370km²(한반도의 약 1.3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케추아어
5. 1인당 GDP : 5,600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2. 5. 24.(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rte Constitucional del Ecuador)

2. 연혁

- 1851년, 1906년, 1929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국가 평의회(Consejo de Estado)가 존재하였으나, 법령의 위헌성을 선언하지는 못하고 제한된 권한만 행사
- 1945. 3. 6. 헌법 개정으로 헌법보장재판소(Tribunal de Garantías Constitucionales) 설립
- 1998. 8. 11.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구성과 권한의 수정
- 2008. 10. 20.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행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 명칭으로 변경

3. 구성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Juez)으로 구성
- 재판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명되는데, 동 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투명성(Transparencia) 및 사회적 통제(Control Social) 기관」에서 각각 2인으로 구성
 - 재판관 선출은 상기 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들 가운데 공개선발의 절차를 통해 결정
 - 헌법재판소의 구성 비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추구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불가
 - 3년마다 재판관 1/3씩 교체
- 재판관 자격
 -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에콰도르 국민
 - 에콰도르 법으로 인정되는 법학 학위의 소지자
 -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판사, 법학 교수의 경력이 있는 자
 - 진실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
 - 지난 10년간 정당이나 정치적 운동의 지도직에 소속되지 않았던 자

□ 헌법연구증진센터(Centro de Estudios y Difusión del Derecho Constitucional, CEDEC)

- ‘관할권 보장 및 헌법적 통제에 관한 조직법’(Ley Orgánica de Garantías Jurisdiccionales y Control Constitucional)을 통해 2009년에 설립
- 에콰도르 헌법, 비교 헌법, 인권 및 에콰도르 헌정사 분야의 연구 담당
- 법조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법, 인권 교육 담당

4. 권한

- 규범통제
 - 헌법 및 에콰도르에서 승인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최종적 해석
 - 법, 규칙, 행정행위의 위헌여부 심판
 - 부수적 규범통제
 -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 국가 비상사태시 헌법적 권리의 보장과 권력분립에 관한 합헌성 통제
- 보호소송, 이행 절차, 인신보호영장 절차, 개인정보보호 절차, 공적 정보 접근권, 성차별에 근거한 인디언 재판 등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이행에 관한 재확인 및 이행강제
- 국가와 헌법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의회해산

5. 심리 및 결정

- a)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개인, 공동체, 민족 등
- b) 호민관(Defensor del Pueblo)은 모든 심판 절차에서 청구 가능
-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5인 이상이며, 종국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소 재판관 5인의 찬성이 있어야 함
- 규범통제의 결정은 기판력을 가지고 장래효 발생
 - 법적 안정성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헌법 규범의 최고 우위성, 헌법적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
 -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선고로 법적 공백이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할 수 없음

6. 연락처

□ 헌법재판소

- 주 소 : Av. 12 de Octubre N16-114 y

Pasaje Nicolás Jiménez, Quito

Ecuador

- 전화번호 : +593 2 394 1800
- 홈페이지 : <https://www.corteconstitucional.gob.ec/>

□ 헌법연구증진센터

- 주소 : Av. 12 de Octubre N23-99
entre Wilson y Veintimilla, Quito
Ecuador
- 전화번호 : +593 2 394 1800 Ext. 2101 - 2104

- ※ 출처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에콰도르 2008년 헌법
에콰도르 관할권 보장 및 헌법적 통제에 관한 조직법
Galo Stalin Blacio Aquirre,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en la historia constitucional ecuatoriana”, Revista SurAcademia, N°2, diciembre 2014

(2021. 8. 작성)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k Österreich)
2. 수도 : 빈(Wien, 191만명)
3. 인구·면적 : 890만명, 83,871km²(한반도의 약 5분의2)
4. 공용어 : 독일어
5. 1인당 GDP : 51,935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집정부제(또는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Verfassungsgerichtshof Österreich

2. 연혁

- 1867년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제국재판소(Reichsgericht)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
- 1920년 연방헌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설립
- 1938년 나치에 의하여 헌법 폐기되어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 1945년 1920년의 헌법이 부활하면서 헌법재판소 기능 회복

3. 조직 및 구성

(1) 재판관의 구성, 자격, 임명 등

- 소장 1인, 부소장 1인, 재판관 12인, 예비재판관 6인으로 구성
- 임기는 없고 정년이 70세임. 법학 및 국가학을 수료하고 이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업에 10년 이상 종사자가 재판관 자격을 가짐
- 소장, 부소장 및 재판관 6인, 예비재판관 3인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하여, 나

머지 재판관 6인, 예비재판관 3인은 국민의회(Nationalrat) 및 연방의회(Bundesrat)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대통령이 임명

- 다만, 재판관 3인과 예비재판관 2인은 연방수도인 비엔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야 함
- 재판관은 원래의 자기 직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예외 : 재판관으로 임명된 행정공무원)
- 예비재판관은 재판관의 신병이나 이해충돌의 경우 대체됨. 재판관이 정년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되면 다시 임명하고 예비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승격되는 것이 아님

(2) 상임재판관 제도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의 상임재판관(ständige Referenten)을 선출함(연방헌법재판소법 제2조)
- 상임재판관(주심재판관)은 전문영역별로 사건을 배당받아서 심사초안 및 결정초안의 작성과 완성을 담당
- 상임재판관 1인당 2-3명의 헌법연구원(Mitarbeiter) 배속
- 헌법연구관은 상임재판관이 심사초안 및 결정문 작성하는 것을 보조
- 상임재판관은 사건의 평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임. 재판관 전원이 평의에서 동등하게 발언하고 표결함

4. 권한

(1) 규범통제(연방헌법 제139, 제140, 140a)

가. 법률(Gesetz)의 위헌여부심판(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65a조)

- 추상적 규범통제
 - 주법률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또는 주의회의원 1/3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 법률에 대하여는 주정부 또는 연방하원의원 1/3 또는 연방상원의원 1/3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
- 구체적 규범통제
 - 법원(독립행정위원회 등 포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 경우 위헌인 법률의 폐지를 요청하는 심판제청
-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법률이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의 발령 없이 그 개인에게 그러한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폐지를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
 -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
 - 제1심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하여 선고된 판결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당사자는, 그 적용법률에 대하여 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판 청구 가능(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제1호 제d목 신설)

나. 법규명령(Verordnungen)의 위법여부심판(헌법재판소법 제57조 - 제61a조)

- 법원(독립행정위원회 등 포함)은 법규명령이 계속중인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법규명령의 위법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규명령 폐지 심판제청
- 위법한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법규명령이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의 발령 없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의 폐지를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
-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규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

다. 조약의 위헌, 위법 여부 심판(헌법 제140조의a)

- 국가조약의 위헌 여부 또는 위법 여부를 심판

라. 오스트리아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 법률, 조약,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모든 국내 법 규범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관장함
- 민·형사최고법원, 행정재판소를 비롯한 모든 법원(1심인 하급심 법원제외)은 법규범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위법여부의 심사를 제청

- 구체적 규범통제와 더불어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제청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
-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개인도 법규범의 위헌, 위법심판신청
- 독립행정위원회(Ombudsman committee)도 위헌, 위법 여부 심사 제청
- 헌법재판소는 계속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규범의 위헌, 위법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연방헌법 제144조)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헌적 법률 또는 위법한 법규명령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처분에 대한 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그 외의 단순한 법적권리의 침해는 행정재판소에 소원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재판소로 기능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심판권한은 행정재판소의 처분에 대한 재판권한과 경합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관할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연방헌법 제133조), 관할권 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일반법원이나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단, 망명재판소의 재판은 예외)
-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

(3) 권한쟁의심판 등(연방헌법 제138조)

- 법원과 행정청 간, 행정재판소와 일반 법원 간, 헌법재판소와 모든 다른 법원 간, 권한쟁의심판
- 각 주 간, 주와 연방 간 권한쟁의심판
- 특정입법 또는 집행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판단신청에 대한 권한귀속 확정

(4) 선거재판 등(연방헌법 제141조)

- 연방대통령, 유럽의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의 유효

및 당선 유무효에 관한 소송

- 선출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상실에 관한 소송
- 주정부 등에 관한 선거소송 등에 관한 소송
- 선거 자체 및 당선 유·무효 여부 및 자격상실 여부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담당

(5) 탄핵심판(연방헌법 제142조, 제143조)

- 연방대통령 : 사유 - 연방헌법위반
소추기관 - 연방의회(상하 양원)의 소추결의
- 연방정부의 구성원(연방의회의원 및 장관) : 사유 - 법률위반
소추기관 - 연방하원
- 주정부의 구성원 : 사유 - 법률위반
소추기관 - 주의회
- 주지사 및 주정부 구성원의 경우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연방의 규정이나 연방정부의 지시에 대한 불복의 경우 또는 주정부 구성원이 주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연방정부(내각)의 소추결의

(6)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산권 청구에 관한 보충적 재판 (연방헌법 제137조)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 제기된 재산권관련 청구가 통상적인 법적절차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5. 심리 및 결정

(1) 사건의 접수 및 배당

- 매년 약 5,000 내지 6,000건의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고, 매 회기마다 약 1,500건 처리
- 9명의 상임재판관이 사건을 배당받고 보고함

- 사건 배당은 소장의 전권(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재판관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사건을 배당함
-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선고까지 평균 9개월 정도 걸림

(2) 회기(Session)

- 1년에 분기별로 4번의 정기회기(3, 6, 9, 12월)를 열어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기를 개최함
- 1회기는 3주간 지속, 결국 연간 총 3개월 개정됨(3주×4회=12주)
- 회기 사이에는 상임재판관들이 심사초안을 준비

(3) 적법성 심사 및 본안 회부

- 사건을 배당받은 주심재판관은 맨 먼저 적법성 심사(관할권 여부, 형식 요건 등), 그리고 헌법적 쟁점 여부 및 승소가능성 여부를 심사(선례가 있는 경우 등)
- 적법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주심재판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하고 적법요건을 통과하면 주심재판관은 심사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재판관에게 송부

(4) 변론·평의·표결·결정

-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소장, 부소장 및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um)에서 처리
- 다만, 간단한 사건은 소장, 부소장 및 4인의 상임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Kleine Besetzung)에서 처리
- 14명의 재판관은 1년에 4번(회기) 만나 회기 중 평의함
- 평의는 비공개임
- 주심재판관이 작성·송부한 심사초안을 기초로 평의함
- 재판부의 결정은 무조건적인 재판관 다수로 결정함. 이 경우 재판소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두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만 재판소장은 표결권을 행사함.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의견교환을 다시 한 후 표결을 실시함
- 심사초안이 재판관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른 심사초안을 작성하여 평

- 의하고, 심사초안이 다수가 될 때까지 평의 절차가 반복될 수 있음
- 주심재판관은 다수 재판관의 동의를 얻은 심사초안을 근거로 결정문초안을 작성하여 재판관들에게 회람함. 회람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반영한 결정문수정안을 마련한 후에 헌법연구관들의 마지막 감수를 거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함
- 결정은 직접 선고하거나, 선고없이 결정문을 사건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종결되기도 함. 중요한 결정은 언론에 공개함
- 법적 또는 정치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개변론을 열 수 있음

(5) 집행(연방헌법 제146조)

- 재산상 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제137조)의 집행은 일반법원이 행함
- 헌법재판소의 다른 모든 판결과 결정은 연방대통령이 집행
- 판결 및 결정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에게 요청
- 이행은 연방군대를 포함한 연방 및 주에게 맡겨짐

6. 연락처

- 주 소 : Verfassungsgerichtshof
Freyung 8
A-1010 Wien
- 전화번호 : + 43 (1) 53 122 0
- 팩스번호 : + 43 (1) 53 122 499
- 홈페이지 : <http://www.vfgh.gv.at/>

※ 출처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요르단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요르단왕국(Hashemite Kingdom of Jordan)
2. 수도 : 암만(Amman, 218만명)
3. 인구·면적 : 1,020만명(2020년), 89,342km²(남한보다 조금 작음)
4. 공용어 : 아랍어
5. 1인당 GDP : 4,282달러(2020년)
6. 독립일 : 1946. 5. 25.(영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2. 연혁

- 2011. 10. 헌법개정(헌법재판소 관련규정 신설)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12. 10.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

- 인원 : 재판소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헌법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규정하되 2년마다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설립으로부터 임기 6년 후인 2018년까지는 재판관의 수가 15인까지 늘어났으나 현재는 자연스럽게 9인으로 정착)
- 자격 :
 - 50세 이상의 요르단인으로서 외국 국적 미보유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항소법원 혹은 파기원(대법원)에서 법관으로 종사한 자
 - 법학대학 교수 재직 경력을 가진 자
 -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50세 이상의 ‘상원의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함
- 임 기 : 6년 임기로 연임 불가
- 임 명 : 재판소장, 재판관 모두 국왕 임명

4. 권한

- 헌법 해석 및 헌법 소원 심사
- 제정 법률 및 규정의 위헌 여부 심사

5. 심리 및 결정

- 위헌법률심판은 상원, 하원, 내각만이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심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건의 당사자 어느 쪽이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심리 진행
- 위헌법률심판 결정은 국왕의 이름으로 나가며,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갖고, 결정문에서 별도의 발효일을 적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가지며,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보에 게재
- 헌법의 해석은 내각이 공포한 결정이나 국회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요청된 경우 이루어지며, 헌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공보에 게재된 이후 효력을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Amman - Tlaa‘ Al-Ali, 12 Al Hatimiah Street, 1122

- 전화번호 : 962 6550 5777
- 팩스번호 : 962 6551 3248
- 이 메 일 : dewan@cco.gov.jo
- 홈페이지 : cco.gov.jo/en-us/

※ 출처 : 요르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요르단 헌법

(2021. 8. 작성)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2. 수도 : 타슈켄트(Tashkent, 246.4만명)
3. 인구·면적 : 2,394만명(2021년), 448,924km²(한반도의 약 2배)
4. 공용어 : 우즈벡어(공식어), 러시아어(통용어, 14% 정도의 인구가 러시아어 사용)
5. 1인당 GDP : 1,832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9. 1.(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연혁

- 1991. 9. 1.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2. 12. 8. 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5. 8. 30.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5. 12. 22. 헌법재판소 설립
- 2021. 2. 9. 헌법 개정
- 2021. 4. 27.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6조)
- 재판관은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자치공화국 대통령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가 추천한 정치학 및 법학 부문의 전문가들 중에

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이 선출(헌법 제108조)

- 재판관의 임기는 첫 선출시 5년, 두 번째 선출 시 10년이고, 2회를 초과하여 중임 불가(헌법재판소법 제7조)
- 재판관 자격 : 정치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판관이 되기에 적합한 뛰어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35세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헌법재판소법 제 10조)

4. 권한(헌법 제109조)

- 법률과 의회규칙, 대통령령, 행정 각부의 부령, 지방정부의 조례 및 국제조약 등의 위헌 여부 심판
- 헌법적 법률 및 대통령 서명 이전의 국제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헌법의 우즈베키스탄 헌법에의 합치 여부 및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법령의 우즈베키스탄 법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
-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 특정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 심리
- 헌법소송을 일반화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양원과 대통령에게 국가의 합헌성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출
- 그 밖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

5. 심리 및 결정

- 심판청구권자: 상·하원, 대통령, 장관, 인권에 관한 의회 대표(옴부즈맨) 및 부대표(옴부즈맨, 아동권리위원),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 상원의원 1/4 이상, 하원의원 1/4 이상, 대법원, 검찰총장, 감사원, 국가인권센터, 대통령 직속 기업가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대표(헌법재판소법 제27조)
- 법률이 시민과 법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러한 법률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었으며,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 그 시민과 법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7조)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며(헌법재판소법 제32조),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77조)
-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총리, 인권에 관한 의회 대표(옴부즈맨) 및 부대표(옴부즈맨, 아동권리위원), 국가인권센터장,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의장,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대통령 직속 기업가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대표는 헌법소송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인, 전문가, 감정인, 통역사 등을 소환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2조)
- 결정은 사건 참여 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되고, 만약 동수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짐(헌법재판소법 제69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표와 더불어 효력을 발생하며, 최종적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법 제109조)
- 결정을 내린 후 결정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거나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 규범이 변경된 경우이거나 헌법재판소가 확립된 헌법재판절차를 위반하여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헌법재판소법 제74조)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헌법 제83조)

7. 연락처

- 주 소 : Tashkent city, 100163, Islam Karimov street, 43
Uzbekistan
- 전화번호 : +99871 238-29-21
- 홈페이지 : <http://www.konstsud.uz>

※ 출처 :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우즈베키스탄 헌법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법

(2021. 7. 작성)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우크라이나(Ukraine)
2. 수도 : 키예프(Kiev, 290만명)
3. 인구·면적 : 4,413만명(2020년), 603,550km²(한반도의 약 2.7배)
4. 공용어 :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도 널리 사용)
5. 1인당 GDP : 3,726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8. 24.(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Ukraine

2. 연혁

- 1996. 6. 28. 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6. 10. 16. 헌법재판소 설립
- 1997. 5. 13. 헌법재판소 첫 결정 선고
- 2017. 10. 3.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9. 2. 7. 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148조, 제149¹조, 헌법재판소법 제33조, 제34조)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법관회의(Congress of Judges)에서 각 6인씩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3년 단임)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법조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

4. 권한(헌법 제150조, 제151조, 제151¹조)

- 대통령, 국회의원 45인 이상, 대법원, 국회 인권대표(Authorised Human Rights Representative), 크리미아 공화국 국회의 제청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규칙, 대통령령, 내각령 및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회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 대통령, 국회의원 45인 이상, 대법원, 국회 인권대표(Authorized Human Rights Representative), 크리미아 공화국 국회의 제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헌법 해석
- 대통령, 국회의원 45인 이상 또는 내각의 청원에 따라 발효 중이거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된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대통령, 국회의원 45인 이상의 청원에 따라, 국민 발의에 의해 국민 투표 부의가 제안된 사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국회 청원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조사 및 심의 과정의 헌법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법원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단,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

5. 심리 및 결정

- 전원재판부(Grand Chamber)는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 해석,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국민 발의에 의해 국민투표 부의가 제안된 사안의 위헌 여부,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 절차 준수 여부, 헌법 개정안의 현행헌법 제157조¹) 및 제158조²) 위반 여부,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회의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행위와 명령의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5조)

1)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인권, 시민권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보존이나 독립성에 위해가 되는 방향일 경우 헌법은 개정되지 아니한다. 계엄법이나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개정되지 아니한다.

2) 헌법 개정 절차와 국회 임기 중 같은 조항을 2번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

- 평의회(Senate)는 원칙적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재판관 총 인원이 18인 미만일 경우 평의회는 최소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헌법재판소법 제36조)
 - 평의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헌법 해석이 필요할 경우, 혹은 평의회의 결정이 법원의 기존 법률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의회는 전원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평의회 내에는 6개의 위원회(Board)가 있음. 각 위원회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사전심사를 담당(헌법재판소법 제37조)
- 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평의회나 전원재판부가 사안이 시급하다고 선언한 경우 1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함(헌법재판소법 제75조)
-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위헌 결정에서 효력 정지 시점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효력 정지(헌법 제152조)

6. 기타사항

- 자연인이나 법인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나 국가 행위로 인해 받은 물질적, 도덕적 피해는 법률에 따라 보상(헌법 제152조)

7. 연락처

- 주 소 : 14, Zhylianska Str.,
Kyiv 01033, Ukraine
- 전화번호 : +38044 289 05 53
- 이 메 일 : idep@ccu.gov.ua
- 홈페이지 : <http://www.ccu.gov.ua>

※ 출처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법

(2021. 7. 작성)

이집트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이집트아랍공화국(République arabe d'Égypte)
2. 수도 : 카이로(Caire, 773만명)
3. 인구·면적 : 10,400만명(2021년), 997,739km²(한반도의 약5배)
4. 공용어 : 아랍어(영어, 불어 : 지식층)
5. 1인당 GDP : 3,547달러(2020년)
6. 독립일 : 1922. 2. 28.(영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최고헌법재판소

- Cour suprême constitutionnelle d'Égypte

2. 연혁

- 1968. 최고헌법재판소의 전신인 최고재판소(Cour suprême) 설립
- 1971. 9. 11. 신헌법 제정
- 1979. 10. 최고헌법재판소 설립(법률 제48/1979호)
- 2014. 1. 14.~15.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 2019. 4. 20.~22. 국민투표로 헌법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충분한 수의 부소장으로 구성(헌법 제193조)
- 최소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상한 없음. 2021년 현재 7인으로 구성
- 최고헌법재판소 위원회(commissaires de la Haut Cour)는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법관(conseillers), 법관보(conseillers adjoints)로 구성됨(헌법 제193조)

- 헌법재판소장은 부소장 연장자 5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과 최고헌법재판소 재판관전원회의에서 각 1인씩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93조)
- 재판관의 임기는 없음(헌법 제194조)

4. 권한(헌법 제192조)

-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
- 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
- 법령의 최종적 해석
- 사법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 각 사법기관의 상반된 결정의 집행에 관한 분쟁심판

5. 심리 및 결정

- 위헌법령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경우 사건당사자나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48/1979호 제29조)
- 심리는 재판관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시(헌법재판소법 제48/1979호 제9조)
- 결정은 참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리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비밀투표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8/1979호 제9조)
- 최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과 국가 기관을 기속함(헌법 제195조)
-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결정이 관보에 게시된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함(헌법재판소법 제48/1979호 제49조)
- 헌법재판은 무료이며, 결정문은 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헌법 제195조)

6. 연락처

- 주 소 : Komish el-Nile, Maddie,
Cairo, Egypt

- 전화번호 : +20 2 2526 7080
- 팩스번호 : +20 2 2525 6979
- 홈페이지 : <http://sccourt.gov.eg>
(불문, 영문 홈페이지 없음)

※ 출처 : 이집트 헌법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법 제48/1979호

(2021. 8. 작성)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Italian Republic)
2. 수도 : 로마(Rome, 264만명)
3. 인구·면적 : 약 6,036만명(2021년), 302,072km²(한반도의 약 1.4배)
4. 공용어 : 이탈리아어
5. 1인당 GDP : 43,889달러(2019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Italian Republic

2. 연혁

- 1947. 공화국 헌법 제정(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규정)
- 1953. 헌법재판소법과 기타 법률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 완성
- 195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1956. 4. 헌법재판소의 최초 변론 실시

3. 구성(헌법 제135조)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포함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이 5인, 국회(양원 합동회의)에서 5인, 상급재판기관에서 5인을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 가능(소장의 임기 및 중임 기간은 모두 재판관 잔여임기 내로 한정됨)

-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 부재 시 헌법재판소장을 대행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부재 시 가장 임기가 오래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따라 부소장을 대행
- 재판관 자격
 - 대법원, 국가평의회(행정법원에 해당) 또는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 법학교수
 - 2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 나이 제한은 없음

4. 권한(헌법 제134조)

- 법령(법률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 탄핵심판
- 법령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 요구의 합헌성 심판(1953년 3월 11일 헌법적 법률 n.1 제2조)
 -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500,000명 이상의 선거권자나 5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법령(세법, 예산법, 국제조약 비준법률 및 사면법은 제외)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소 11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부의 판결로 결정됨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만이 청구
- 사건의 심리는 주요 사건의 경우 변론을 행하고 경미한 사건은 비공개 평의만을 거쳐 결정
- 헌법재판소장은 사건별로 주심(rapporteur)재판관을 지정하며, 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의 사건 보고 및 결정문 작성 등을 담당(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 심판사건의 결정문은 재판관 전원이 합의(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한 단

일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을 표시할 수 없고 찬반 재판관 인원수의 공개도 금지

- 다수 재판관과 의견을 달리하여도 원칙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
-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과 더불어, 의회가 선출하는 일반국민(상원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에 한함) 명단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6명이 함께 결정 (헌법 제135조 제7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표되며, 관련 입법기관에 통지됨.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해당 결정 공표일 다음날부터 효력 상실(헌법 제136조)

6. 기타사항

- 예산 및 직무상의 독립성을 가지며, 사무처장 이하 약 300명의 직원들이 재판부를 보좌

7. 연락처

- 주 소 : Piazza del Quirinale
41-00187, Roma
ITALY
- 전화번호 : +39 6 46 981
- 팩스번호 : +39 6 46 98 916
- 이 메 일 : info@cortecostituzionale.it
- 홈페이지 : <https://www.cortecostituzionale.it/>

※ 출처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법(G.U 261/2008)
베니스위원회 CODICES

(2021. 7. 작성)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2. 수도 : 자카르타(Jakarta, 1,046만명)
3. 인구·면적 : 27,020만명(2020년), 1,904,569km²(한반도의 약 9배)
4. 공용어 :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5. 1인당 GDP : 3,921달러(2020년)
6. 독립일 : 1945. 8. 17.(네덜란드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연혁

- 2001. 11. 9. 제3차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마련)
- 2002. 10. 1. 제4차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준비기간 동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맡도록 함)
- 2003. 8. 13.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3. 8. 15. 헌법재판관 최초 임명
- 2003. 10. 15. 대법원으로부터 심판사건을 인수하여 활동 시작
- 2020. 9. 29. 제3차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24C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15조)

- 헌법재판소장 1인, 부소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3인을 지명하

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
- 재판관 자격 : 임명시 55세 이상인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서 법학을 전공(학사)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법률분야에서 일하였거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 단, 법원판결에 따라 복역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4. 권한(헌법 제24C조)

-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50조 - 제60조)
 - 특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제청에 대해 심판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개인, 관습법상 공동체, 공·사법인 및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음
-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1조 - 제67조)
 -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이 다른 국가기관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대해 심판
-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73조)
 - 정당의 이념과 원칙, 목표, 강령,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기는 정부의 청구에 대해 심판
- 선거소송(헌법재판소법 제74조 - 제79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선거 결과의 확정을 다투는 절차
-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80조 - 제85조)
 - ① 대통령/부통령이 국가반역죄나 부패,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 부정행위 등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② 대통령/부통령이 헌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에 대해 결정

5. 심리 및 결정

-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 등을 기재한 청구서 부분 12부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 선거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공포한지 72시간 이내에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는 14일 이내, 기타 선거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처는 접수된 청구서를 심사하여 등록부에 기재하고 흡결시 보정명령을 내림(청구인은 7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32조)
- 사전심사를 위해 재판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panel)를 설치(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4항)
- 심리 및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plenary session)에서 실시(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첫 변론일을 결정하며, 이를 사건당사자와 일반인에게 공고함(헌법재판소법 제34조)
- 변론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당사자, 증인, 감정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를 진행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1조)
-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두 가지 이상의 증거에 근거해야 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2항)
- 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의 합의(consensus)에 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기 전원재판부 회의까지 연기되며,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하여 결정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항, 제6항)
- 표결에서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의장이 최종 결정하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명시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7항, 제8항, 제10항)
- 결정의 선고는 공개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인도네시아 영토 전역에 미침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명되겠다는 성명서를 이력서, 졸업 증명서, 재산목록 및 납세자등록번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의 의무 및 권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사무처(Office of the Registrar)와 일반사무처(Secretariat General)를 설치

7. 연락처

- 주 소 : Mahkamah Konstitusi RI
Jl. Medan Merdeka Barat No.6
Jakarta Pusat 10110, Indonesia
- 전화번호 : +62 21 23529000
- 팩스번호 : +62 21 3520177
- 홈페이지 : <http://www.mkri.id>

※ 출처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일본 최고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일본(日本)
2. 수도 : 동경도(東京都), 1,400만명(2020년)
3. 인구·면적 : 1억 2,600만명(2020년), 378,000km²(한반도의 약 1.7배)
4. 공용어 : 일본어
5. 1인당 GDP : 42,248달러(2020년)
6. 패전일 : 1945. 8. 15.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최고재판소

- 最高裁判所

2. 연혁

- 1947. 5. 3. 일본국헌법, 재판소법(1947. 4. 16. 법률 제59호) 시행
(기존의 대심원이 폐지되고 최고재판소 설치)
- 1947. 8. 초대 최고재판소장 취임
- 2009. 지방재판소에 재판원제도(국민참여재판) 도입

3. 구성

-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長官) 1인과 재판관 14인의 15인으로 구성
-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며, 최고재판소장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
-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붙여지고, 그 후 10년경과 때마다 재심사가 이루어짐

- 재판관 정년 : 70세
- 재판관 자격 : 법률적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예 : 검사, 변호사, 하급재판소 판사, 법학자, 외교관, 행정관 등)

4. 권한

- 사법권(헌법 제76조), 위헌심사권(헌법 제81조), 규칙제정권(헌법 제77조 제1항)
- 법률·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는 중심재판소(조례, 인사원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 하급심 재판소의 재판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
- 하급심 재판소에서도 위헌심사권을 가짐

5. 심리 및 결정

- 부수적 위헌심사제
- 위헌판결에는 법령위헌·적용위헌·처분위헌 등이 있음
- 위헌판결은 위헌·무효의 ‘개별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임. 그러나 소극적 입법작용으로 인해 법령의 개폐권한을 가진 입법부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음. 즉 국회와 내각에 의한 대응조치로 ‘일반적 효력’이 발생함
- 법령위헌은 법령 자체에 대해 위헌성 심사를 하여 8인 이상의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면 위헌판결을 내림
- 적용위헌은 법령 자체는 합헌이라도 해당 사건·소송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함
- 처분위헌은 법령 자체는 합헌이라도 집행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해석적용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함
- 적용위헌과 처분위헌은 국가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침

6.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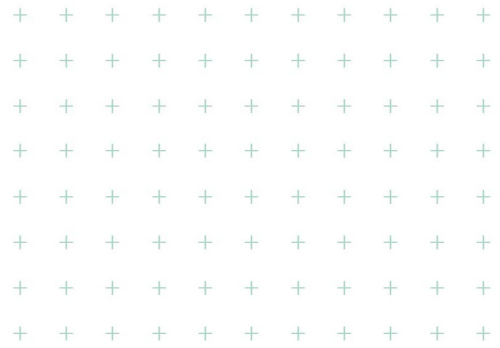
- 주 소 : 〒 102-8651
東京都千代田區集町4番2

- 전화번호 : + 03 3264 8111
- 홈페이지 : <http://www.courts.go.jp/>

※ 출처 :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일본 헌법
일본 헌법재판의 최신동향(2017, 헌법재판연구원)

(2021. 7.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잠비아 헌법재판소

조지아 헌법재판소



잠비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잠비아 공화국(Republic of Zambia)
2. 수도 : 루사카(Lusaka, 약126만명)
3. 인구·면적 : 1,838만명(2020년), 752,618km²(한반도의 3.4배)
4. 공용어 : 영어 외 토착어
5. 1인당 GDP : 1,050달러(2020년)
6. 독립일 : 1964. 10. 24.(영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Zambia

2. 연혁

- 1991. 8. 30. 현행헌법 제정
- 2009. 헌법 개정
- 2016.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헌법 제127조)

- 1명의 재판소장, 1명의 부소장, 11명 혹은 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됨(2021년 현재 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소장의 궐위 시에는 부소장이, 부소장의 궐위 시에는 최선임 재판관이 재판소장직을 수행(헌법 제127조, 헌법 제129조)
- 전원재판부는 5명 이상의 홀수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29조 제3항)

4. 권한

- 원심관할권을 가지는 사건
 - 헌법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과 관련된 선거소송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심사
 -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
- 이외 헌법 제28조의 사안에 대하여 헌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 일반 법원에서 헌법적 사안이 문제된 경우 당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음
 -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나 행정입법,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거나 결정된 모든 조치 및 결정, 개인 혹은 당국에 의한 세금 포탈, 조치 및 결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5. 심리 및 결정

- 사건의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에 최소 3명 이상의 홀수 명의 재판관이 배석하여야 하며, 즉 3명의 재판관으로도 결정할 수 있음
- 중간결정의 경우 1명의 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할 수 있음(헌법 제129조 제2항)
- 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써 이루어짐(헌법 제129조)

6. 기타사항

- 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청사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운영 중
- 2016년 개헌 이전에는 모든 헌법적 사건들은 고등법원에서 우선 적으로 심사되었고, 이 중 일부는 상고되어 대법원에서 심사했었음

7. 연락처

- 주 소 : Independence Ave, Lusaka, Zambia

- 전화번호 : (+260) 211 251 330
- 홈페이지 : <http://www.judiciaryzambia.com/constitutional-court/>

※ 출처 : 잠비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잠비아 헌법
잠비아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관한 2016년 5월 27일 법률

(2021. 8. 작성)

조지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조지아(Georgia)
2. 수도 : 트빌리시(Tbilisi, 116만명)
3. 인구·면적 : 370만명(2019년), 69,700km²(한반도의 약 3/10)
4. 공용어 : 조지아어, 압하스어
5. 1인당 GDP : 4,763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4. 9.(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Georgia

2. 연혁

- 1995. 8. 24. 헌법 제정
- 1996. 7. 24. 헌법재판소 설립
- 2007. 7. 5. 헌법재판소 소재지 트빌리시(Tbilisi)에서 바투미(Batumi)로 이전
- 2018. 3. 23. 헌법 전면 개정(2018. 12. 16. 발효)

3. 구성(헌법 제60조)

- 헌법재판소장, 2인의 부소장, 사무처장(Secretary)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인을 선출(국회의원 3/5 이상 동의에 의해)하며, 대법원에서 3인을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5인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됨.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추천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합의한 제안에 영향을 받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재선 불가
-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후보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소장 선거 절차를 준용하여 선출. 부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재선 불가
- 사무처장은 전원재판부(Plenum)에서 선출하며, 부소장 선거 절차를 준용하여 선출. 사무처장의 임기는 5년
- 재판관 자격 : 35세 이상의 조지아 국민으로서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10년 이상 전문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

4. 권한(헌법 제60조 제4항,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19조)

- ① 헌법상의 합의, 조지아 법률, 조지아 의회의 결의, 조지아 대통령과 조지아 정부가 제정한 법령, Abkhazia 자치공화국과 Ajara 자치공화국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및 조지아의 입법행위와 의회의 명령의 승인/발포, 비준, 공고 및 발효와 관련된 문제의 위헌 여부 심판
- ② 조지아 대통령, 의회, 정부,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Justice), 검찰총장, 국책은행 이사회, 감사원장, 옴부즈만(Public Defender) 또는 자치공화국의 최고 대표 또는 집행기관의 청구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 ③ 정치 정당의 창설과 활동의 위헌 여부 심판 및 해당 정당의 추천으로 대의기관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권한 정지에 관한 문제 심판
- ④ 국민투표와 선거를 규정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쟁의 및 이러한 조항에 기반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선거(국민투표)의 위헌 여부 심판
- ⑤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
- ⑥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
- ⑦ 조지아 국회의원의 권한 인정 또는 박탈에 관한 문제
- ⑧ 조지아 대통령, 정부구성원, 최고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및 조지아 국책은행 이사진의 헌법위반에 관한 문제 또는/그리고 상기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 ⑨ ‘Ajara 자치공화국에 관한’ 조지아 헌법 침해에 관한 쟁의

- ⑩ Ajara 자치공화국 의회의 법령이 조지아 헌법 및 ‘Ajara 자치공화국에 관한’ 조지아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 ⑪ 조지아 헌법 제9장과 관련한 법령의 위헌 여부 문제
- ⑫ 법령이 조지아 헌법 제59조 내지 제64조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 ⑬ 일반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을 심리하면서 적용해야 하고, 법원의 합리적 추정 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위헌으로 예견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각각 4인의 재판관 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Board) 2개가 있음
- ①, ④, ⑥, ⑧, ⑨, ⑩, ⑫, ⑬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25조 제2항 (정당에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의 심사) 관련 문제와 조직법 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관할
- ②, ③, ⑤, ⑦, ⑪의 심판은 지정재판부에서 관할
-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의 중복 관할인 사건은 전원재판부 소관으로 함(헌법 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21조 제4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헌 결정이 공표된 때에 효력을 상실하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효력 상실 시점을 장래의 시점으로 정한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함(헌법 제60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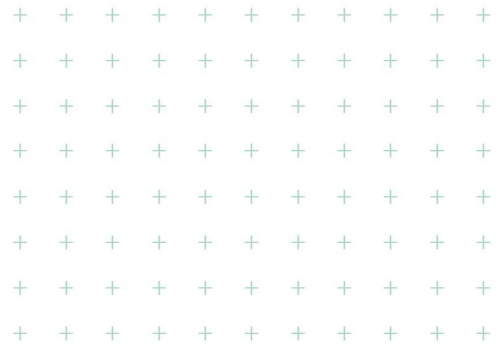
6. 연락처

- 주 소 : 8-10 K. Gamsakhurdia Ave. 16-18 M. Abashidze Ave. Batumi, 6010
- 전화번호 : +995 422 - 27 - 66 - 46
- 홈페이지 : <http://www.constcourt.ge>

※ 출처 : 조지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조지아 헌법
조지아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조지아 헌법재판소규칙

(2021. 5.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체코 헌법재판소

칠레 헌법재판소



체코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2. 수도 : 프라하(Prague, 132만명)
3. 인구·면적 : 1,070만명(2020년), 78,864km²(한반도의 약 1/3)
4. 공용어 : 체코어
5. 1인당 GDP : 23,489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3. 1. 1.(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zech Republic

2. 연혁

- 1992. 12. 16. 체코 공화국 헌법 제정
- 1993. 6. 16.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3. 7. 15. 헌법재판소 설립
- 2013. 3. 20. 헌법 수정¹⁾ 공포
- 2019. 4. 24. 헌법재판소법 수정 발효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1) 체코공화국은 최초 제정된 헌법조항을 유지하면서 개별 조항들에 대한 개정내용을 별도의 헌법적 법률(constitutional act)로 변경하는 이른바 ‘수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1992. 12. 16. 체코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8개의 헌법적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헌법이 수정되었고, 이 중 2013. 3. 20.자가 가장 최근의 헌법적 법률이다.

- 재판관은 상원(Senate)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10년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 자격 : 상원의원 피선거권(4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자)이 있는 자로서 법과대학을 이수하고 10년 이상 법률업무에 종사한 자

4. 권한(헌법 제87조, 제95조)

- 추상적 규범통제
 - 대통령, 하원의원 41인 이상 또는 상원의원 17인 이상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정부, 하원의원 25인 이상 또는 상원의원 10인 이상, 옴부즈맨 등의 제청에 따른 하위 법령(other enactments)의 위헌 여부 심판
- 구체적 규범통제
 - 사건을 심리하는 일반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헌법 제9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4항)
- 헌법소원심판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 또는 기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 경우 청구인의 신청 또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직권에 의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원인이 된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 가능(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1항, 제2항))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정부 대표기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정당해산결정 또는 정당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상·하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 상·하원의원 겸직 허용 여부 및 기타 자격 관련 심사
- 대통령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 심판
- 상·하원 공동결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국제 재판소의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수단 결정

-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 상·하원 비준이 요구되는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 전 사전통제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um)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Panel) 4개가 있음(헌법재판소법 제11조, 제15조)
- 전원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 등을 관장(헌법재판소법 제12조)
 - 의사정족수는 10인이며, 일반적으로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헌법재판소법 제13조)
 -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탄핵결정, 상하원 공동결의 철회 관련 대통령 청구 심사 및 국제조약의 위헌성 심사 등의 경우 9인의 찬성이 필요(헌법재판소법 제13조)
- 지정재판부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임기 1년(연임불가)의 지정재판부 의장을 둠(헌법재판소법 제17조)

6. 기타 사항

- 재판관은 상원의 동의 없이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음(헌법 제86조 제1항)
- 재판관은 현행범인 경우에만 체포될 수 있고, 재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관계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상원의장에게 통지해야 함.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상원의장이 소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을 석방해야 함(헌법 제86조 제2항)
- 재판관은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습득한 제반 사실에 관한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특권은 임기 후에도 계속됨(헌법 제86조 제3항)
- 법률이나 법령의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관보(Collection of Laws)에 공고된 날 효력 발생(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1항)

- 대통령 탄핵 및 상하원 공동결의 철회에 대한 대통령 청구에 관한 결정은 선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2항)
- 기타 결정은 결정서 사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 발생(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3항)

7. 연락처

- 주 소 : Jostova 8, 660 83 Brno 2,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 +420 542161111
- 팩스번호 : +420 542218326
- 홈페이지 : <https://www.usoud.cz>

※ 출처 : 체코공화국 헌법
체코공화국 헌법재판소법

(2021. 5. 작성)

칠레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칠레 공화국(Republic of Chile)
2. 수도 : 산티아고(Santiago, 484만명)
3. 인구·면적 : 1,911만명(2020년), 756,700km²(한반도의 약 3.4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13,231달러(2020년)
6. 독립일 : 1810. 9. 18.(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Tribunal of the Republic of Chile
(Tribunal Constitucional de Chile)

2. 연혁

- 1970. 1. 21. 법률 17.284호 공포(제78조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규정)
- 1973. 9. 11. 피노체트 군사정부 수립
- 1973. 11. 5. 명령 119호에 의해 헌법재판소 해산
- 1980. 8. 8. 명령 3.464호를 통한 군사정부의 새 헌법 승인(재판관 7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설립)
- 2005. 8. 26. 법률 20.050호를 통해 헌법 개정(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재판관을 10명으로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

3. 구성(헌법 제92조,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5조, 제18조)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10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4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이 3인을 지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 불가, 정년은 75세
 - 단, 교체된 재판관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임 가능
 - 재판관의 교체는 3년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재판관 자격: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법조인으로 혹은 학계 또는 공직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자
- 예비재판관
 - 3년 단위로 1월에 2인의 예비재판관 선출
 - 헌법재판소에서 예비재판관 후보(7인)를 제안하고, 상원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불가

4. 권한(헌법 제93조)

- 규범통제
 - ① 헌법의 개별 조항들을 구체화한 법률, 조직법률, 헌법과 조직법률의 관장 사항과 관련한 조약 규정의 공포 전 합헌성 검토
 - ② 대법원, 항소법원 및 선거관리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적 문제 심판
 - ③ 법률안, 헌법 개정안, 조약안에 대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합헌성 문제 검토
 - ④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Decree with the force of law)의 위헌 여부 심판
 - ⑤ 일반 혹은 특별법원에서 사건이 계류된 중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률규정의 적용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소송당사자나 법관의 위헌심사 요청에 의해, 해당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 심판
- 국민투표 부의 관련 사안의 위헌 여부 심판
-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공포하는 것과 관련한 청구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을 공포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공포하는 경우 그 법률안 공포를 정정할 수 있음

- 위헌정당 심판
- 행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 수행 불능과 관련하여 상원에 조언
-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겸직 가능 여부 및 사직 사유 등에 대한 결정

5. 심리 및 결정(헌법 제92조, 제94조)

- 사안에 따라 전원재판부(10인) 및 지정재판부(5인)에서 심리
 -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전원재판부의 경우 8인이며, 지정재판부는 4인
 - 별도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는 단순 과반
-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오류를 법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대통령령(Supreme Decree) 및 법원 결정은 선고 3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어야 함
- 권한 ②, ④, ⑤와 관련한 심판절차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령은 해당 결정을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폐지된 것으로 봄(대세효, 장래효)

6. 연락처

- 주 소 : Huérfanos 1234,
Santiago, Chile
- 전화번호 : +56 2 2721 9200
- 홈페이지 :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cl>

※ 출처 : 칠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칠레 헌법
 칠레 헌법재판소조직법

(2021. 7.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캐나다 사법제도

코스타리카 대법원 헌법재판부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국 가 개 요

1. 국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2. 수도 : 누르술탄(Nur-Sultan, 구 아스타나, 106.8만명)
3. 인구·면적 : 1,899만명(2021년), 2,724,900km²(한반도의 약 12배)
4. 공용어 :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5. 1인당 GDP : 9,139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12. 16.(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위원회

-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연혁

- 1991. 12. 16.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독립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2. 7. 2. 헌법재판소 설립
- 1995. 8. 30. 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로 대체
- 1996. 2. 헌법위원회 설립

3. 구성(헌법 제7조 등)

- 헌법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전직 대통령은 당연직 종신위원이 됨
-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인은 상원의장이, 나머지 2인은 하원의장이 각각 임명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 위원들 중 절반을 교체
- 위원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 임명되어야 함. 단, 퇴임한 위원 자신이 관여한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의 권한 유지(헌법위원회법 제5조)
- 위원 자격 :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전직 대통령은 예외)(헌법위원회법 제4조)

4. 권한(헌법 제72조 등)

- 선거소송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 위헌법률심판
 - 법률은 대통령 서명 전까지만 위헌여부심판 가능
- 국회 결의안의 위헌 여부 심판
- 위헌조약심판
 - 조약은 비준 전까지만 위헌여부심판 가능
- 헌법의 유권 해석
-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질병으로 인한 사임 포함) 절차의 합헌성 여부 심판(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한 심판(헌법 제78조)
 - 법원은 법률이나 하위법령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위원회에 위헌심판 제청

5. 심리 및 결정

- 심판사건의 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한 심판을 제외하고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하원 의원의 1/5이상의 결의, 총리가 서면으로 할 수 있음(개인에 의한 심판청구 불가)
- 위원장은 요건심리를 위해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건 접수 후 3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

- 헌법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 또는 부적격 청구인에 의한 청구
- 헌법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청구
- 청구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이 있는 경우
- 청구 자체가 헌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 문제가 되는 법률이 취소 또는 무효화된 경우
- 요건심리에서 각하되지 않은 사건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함. 사안이 위급하여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기간을 10일로 단축 가능
- 위원장은 본안심리의 준비를 위해 사건을 위원(특히 복잡하거나 긴급한 사건인 경우 다수의 위원)에게 배당하고, 청구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 병합하여 심리
-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로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
- 결정은 전체 위원의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장은 항상 마지막에 투표함. 표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 다음의 경우 사건 종결
 -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
 -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경우
 - 청구된 사건이 헌법위원회의 관할권 밖일 경우
-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체에 기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이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

6. 연락처

- 주 소 : 010000,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city, Dinmukhamed Kunayev street, building 39
- 전화번호 : +7 (7172) 74-76-25
- 팩스번호 : +7 (7172) 74-76-49
- 홈페이지 : <http://ksrk.gov.kz/eng>

※ 출처 :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헌법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법

(2021. 7. 작성)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국 가 개 요

1.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2. 수도 : 프놈펜(Phnom Penh, 228만명)
3. 인구·면적 : 1,694만명(2021년), 181,040km²(한반도의 약 8/10)
4. 공용어 : 크메르어
5. 1인당 GDP : 1,643달러(2019년)
6. 독립일 : 1953. 11. 9.(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위원회

- Constitutional Council of Cambodia

2. 연혁

- 1993. 9. 21. 신헌법 제정
- 1998. 6. 15. 헌법위원회 설립
- 2005. 6. 19. 제4차 헌법개정
 - － 입법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하원 의원 정족수 수정
- 2018. 2. 27. 제8차 헌법개정(현행)

3. 구성

- 위원장(President)을 포함한 9인의 위원(Member)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절대다수를 득한 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
- 위원은 국왕이 3인을 임명하고, 하원(National Assembly) 및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가 각각 3인을 선출(헌법 제137조)

-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3명씩 순차적으로 임명 또는 선출
- 위원 자격 : 법·행정·외교·경제 분야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1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가진 높은 인격의 캄보디아 태생 국민(적어도 45세 이상)
- 위원의 겸직불가(헌법 제139조)
 - 정부위원
 - 국회의원
 - 공직자
 - 정당의 의장 및 부의장
 - 노동조합(trade union)의 의장 및 부의장
 - 현직 사법관
- 헌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음(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11조)

4. 권한

가. 규범통제 권한

- 사전적 규범통제(헌법 제140조)
 - 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 전에 국왕, 총리, 하원의장, 하원 의원 1/10이상, 상원의장, 상원의원 1/4이상이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하원 및 상원의 내부규칙과 기타 조직법은 공포 전에 반드시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함
 - 헌법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사후적 규범통제(헌법 제141조)
 - 국왕, 총리, 하원의장, 하원의원 1/10이상, 상원의장, 상원의원 1/4이상 및 법원이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은 하원의원, 하원의장, 상원의원 및 상원의장을 통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자신의 기본적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송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대법원은 다시 제청요건을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헌법위원회에 제청함(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19조)

나. 기타 권한

- 선거와 정당에 관한 심판(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25조-제34조)
 -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심리 및 결정
 - 정당등록과 관련된 내무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심리 및 결정
- 헌법과 법률의 최종 해석(헌법 제136조, 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15조)
 - 공포된 법률에 대하여 국왕, 총리, 하원의장, 하원의원 1/10이상, 상원의장, 상원의원 1/4이상 및 법원의 청구에 의함
- 국회 결의 취소
 - 국회(하원) 결의가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반하고 정치적 통일성 및 국가 운용에 위반될 경우 헌법위원회는 그러한 국회의 결의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헌법 제92조)

5. 심리 및 결정

-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14조), 주요사건의 결정 및 위원회 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12조, 제22조, 제34조)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3개 그룹으로 나뉘며, 모든 그룹은 국왕, 하원, 최고사법위원회가 각각 지명(선출)한 위원 1인을 포함(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30조)
- 사건의 심리는 보고위원(Reporting Member)이 소속 그룹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그룹에서 토론·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됨. 이후 보고위원은 보고서를 예비회의(preliminary session)에 보고하고, 예비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함.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별도의 전원재판부 회의(plenary session)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이루어짐

- 모든 회의는 사무처 서기가 의사록을 작성하며 평의(deliberation)와 표결(vote)은 비공개(헌법위원회 조직법률 제7조)
-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공포되거나 시행될 수 없고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짐(헌법 제142조)

6. 기타사항

- 위원장의 의전서열은 하원 의장에, 위원의 의전서열은 하원 부의장에 준함

7. 연락처

- 주 소 : Chamcar Mon State Palace
Cambodia
- 전화번호 : +855 23 720 912
- 팩스번호 : +855 23 726 031
- 홈페이지 : <http://www.ccc.gov.kh>

※ 출처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홈페이지
캄보디아 헌법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조직법률

(2021. 5. 작성)

캐나다 사법제도

국 가 개 요

1. 국명 : 캐나다(Canada)
2. 수도 : 오타와(Ottawa, 141만명)
3. 인구·면적 : 3,806만명(2021년), 9,984,670km²(한반도의 약 45배)
4.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5. 1인당 GDP : 45,937달러(2019년)
6. 국경일 : 7. 1.(캐나다 건국 기념일)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 양원제

1. 명칭 : 연방대법원

- Cour suprême du Canada

2. 연혁

- 1875. 4. 8.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 1876. 1. 17. 캐나다 연방대법원 설립
- 1876. 4. 첫 재판 실시
- 1933. 대법원 설립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에의 상고가 형사사건에서는 폐지됨
- 1949. 12. 23.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에의 상고가 민사 사건에서도 폐지됨. 캐나다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확립
- 2019. 12. 18. 연방대법원법 개정

3. 구성

- 대법원장을 포함한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 대법관은 연방 내각(gouverneur en conseil)¹⁾이 임명
-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3명은 퀘벡주 출신으로 임명
- 대법관은 주상급법원의 전·현직 법관,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주 변호사 가운데 임명(연방대법원법 제5조)
- 대법관은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유급 공직과 겸직할 수 없음
- 대법관의 임기는 없으며 정년은 75세까지 보장되나, 상·하원이 해임을 청구할 경우 총독이 해임할 수 있음

4. 권한

- 민·형사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
- 캐나다 연방과 주, 또는 주 사이의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 연방 내각이 요청한 헌법 해석, 연방 또는 주의 입법에 관한 합헌성 해석, 1867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총독에게 부여된 교육 문제에 관한 상고 관할권, 연방의회·주의회·연방정부·주정부의 권한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의회제출법률안 또는 상·하원에 제출된 청원 검토

5. 심리 및 결정

- 심리 정족수는 5인이며, 재판관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심리 정족수는 4인임
- 재판관의 공석, 병가 등으로 심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연방 대법원장은 연방항소법원, 연방법원, 조세법원의 판사를 임시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 이들이 모두 임시 재판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 상급법원 판사가 임시 재판관으로 임명됨
- 결정의 정족수는 단순과반수

1) 연방대법원법 제4조제2항은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연방 내각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행적으로 연방대법원장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연방총독(gouverneur général)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됨

6. 기타

- 연방대법원법의 대법관 구성에 관한 조문들(제4조 내지 제6조)는 캐나다 헌법의 일부로서 1982년 헌법 제41(d)조 만장일치에 의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음

5. 연락처

- 주 소 : 301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J1
- 전화번호 : 613-995-4330
1-888-551-1185
- 홈페이지 : www.scc-csc.gc.ca

※ 출처 : 캐나다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캐나다 헌법
캐나다 연방대법원법

(2021. 8. 작성)

코스타리카 대법원 헌법재판부

국 가 개 요

1. 국명 :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
2. 수도 : 산호세(San José, 36만명)
3. 인구·면적 : 509만명(2020년), 51,100km²(한반도의 약 1/4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12,076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1. 9. 15.(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대법원 헌법재판부

- Sala Constitucional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de Costa Rica

2. 연혁

- 1825. 1. 25. 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설립
- 1949. 현행 헌법 제정
- 1989. 10.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부를 신설
- 1989. 10. 헌법소송법 제정(1990년 11월 및 2011년 11월 개정)

3. 대법원의 구성

- 민사재판부(Sala Civil), 노동재판부(Sala Laboral), 형사재판부(Sala Penal), 헌법재판부(Sala Constitucional) 4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짐
 - 민사, 노동, 형사재판부는 상고심에 해당
- 대법원은 대법관 22인으로 구성(대법원장 포함)
 - 민사, 노동, 형사재판부는 각각 대법관 5인과 예비대법관은 5인으로 구성

4. 헌법재판부의 구성

- 헌법재판부의 경우, 대법관 7인과 예비대법관 12인으로 구성
 - 예비대법관의 임기는 4년(이하 임기, 선출방법, 자격은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와 동일)
- 대법관의 임기는 8년.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연임가능
- 대법관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국회는 대법관을 선출하기 전에 후보자를 공모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 경력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들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하거나 동의를 취소하거나 추천 명단 외에 다른 후보자를 선택함
- 대법관의 자격
 - 코스타리카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화 이후 최소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다만, 대법원장은 코스타리카에서 출생한 자이어야 함
 - 시민권자로서 35세 이상인 자
 - 코스타리카에서 등록된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무를 수행한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면 됨

5. 헌법재판부의 권한

- 인신보호심판(Recurso de Hábeas Corpus)

신체의 자유, 신체적 완결성, 이동(입·출국)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
- 헌법소원심판(Recurso de Amparo)

헌법 및 코스타리카에서 승인한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인신보호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제외함)이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
- 위헌법령심판(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
 - 법률, 명령 및 이에 대한 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청구

- 위헌법령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령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사전적 규범통제(Consulta Legislativa de Constitucionalidad)
 - 헌법 및 헌법소송법 개정안, 조약의 비준, 법률안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
 - 국회의원 10인 이상, 옴부즈만이 청구. 어떤 법률안이 해당 기관의 구성,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도 청구 가능
- 부수적 규범통제(Consulta Judicial)
 - 법관이 헌법재판부에 위헌 여부 제청
 -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 권한쟁의심판(Conflicto Constitucional)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헌법적 권한 또는 관할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

6. 심리 및 결정

- 판결은 대세효를 가지며 불복할 수 없음
 - 다만, 청구인이 3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헌법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판결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법률이나 행위 등에 대한 위헌선고는 대법관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위헌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청구된 법률이나 행위 등이 무효로 선고됨
- 위헌판결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소급효를 지님
 - 법적 안정성, 정의 또는 사회적 평화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헌법재판부는 시간적 또는 내용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음

7. 참고 : 미주인권재판소

- 1979년에 설립된 미주인권재판소(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해 있으며, 미주 국가들의 인권보장에 관해 제기되는 소송을 해결하고 있음

8. 연락처

- 주 소 : Sabana Sur, Calle Morenos,
75 mts. sur de la iglesia del Perpetuo Socorro
- 전화번호 : +506 2549 1500
- 팩스번호 : +506 2549 1633, 2295 3712
- 이 메 일 : sala4-informacion@poder-judicial.go.cr
- 홈페이지 : salaconstitucional.poder-judicial.go.cr

※ 출처 : 코스타리카 대법원 홈페이지
코스타리카 헌법
코스타리카 헌법소송법

(2021. 8. 작성)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콜롬비아 공화국(República de Colombia)
2. 수도 : 보고타(Bogotá, 808만명)
3. 인구·면적 : 5,088만명(2020년), 1,141,750km²(한반도의 약 5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5,332달러(2020년)
6. 독립일 : 1810. 7. 20.(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Colombia
(Corte Constitucional de Colombia)

2. 연혁

- 1991. 7. 4. 헌법 공포
- 1992. 2. 17.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헌법 제232조, 제239조, 1996년 법률 제270호 제44조)

-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홀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 법률에서 재판관 9인을 규정함
- 9인의 재판관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 포함
- 대통령, 대법원, 최고행정법원(Consejo de Estado)은 3인으로 구성된 3개의 재판관 후보군을 각각 제안하고, 상원이 재판관 선출
 - 후보군은 상이한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며, 상원은 최종 헌법재

판관 구성에 있어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각 후보군에서 1인의 재판관을 선출하여야 함

- 헌법재판관직 공석 발생시 해당 재판관을 지명한 기관은 15일 이내에 후보자를 제출해야 하고, 그로부터 30일(의회가 휴회일 경우 정기회기 개시 후 30일) 이내 상원이 후임재판관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8년으로 중임 불가
- 재판관 자격
 - 콜롬비아 출신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
 - 변호사
 - 자유형박탈형(정치범이나 과실범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을 선고받지 않은 자
 - 15년 이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정규직일 필요는 없음), 변호사직을 수행하거나 또는 공식 인가된 대학에서 법학 교수직을 맡은 자
 - 임명 이전 1년 이내에 내각관료, 대법관 또는 최고행정법원 법관으로 재직 한 자는 재판관이 될 수 없음

4. 권한(헌법 제241조)

- 헌법개정관련 청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부의 및 법률 관련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 심판. 단, 청구 내용은 절차상의 결함에 한정
- 법률, 법률안,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Decreto con fuerza de ley) 등의 위헌 여부 심판
- 의회 상임위원회의 임시회기 증인 소환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출석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국제조약 및 국제조약을 승인하는 법률의 집행 여부 심판

5. 심리 및 결정

- 전원재판부(Sala plena)
 -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2015년 헌법재판소규칙 제1조)

-법률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의사정족수는 전체 재판관의 절대 과반이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재판관의 절대 과반. 다만, 한 명 이상의 재판관이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특정 사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전원재판부는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음(2015년 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제3조)

- 2인 재판부(Sala de selección de tutelas)(2015년 헌법재판소규칙 제55조)
 -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
 - 매월 제비를 뽑아 돌아가며 2인 재판부 구성원 선정
- 3인 재판부(Sala de revisión de tutelas)(2015년 헌법재판소규칙 제56조)
 - 재판소원 사건을 심리
 - 최대 3개월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절대 과반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대세효가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침. 헌법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결정은 장래효를 가짐(1996년 법률 제270호 제48조, 제45조)

6. 기타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대통령, 의회 의장에게 공지해야 함(헌법 제244조)
- 재판관은 재임기간 중 그리고 퇴임 후 1년 동안 행정부 공직 수행 불가(헌법 제245조)

7. 연락처

- 주 소 : Calle 12 No. 7 65 Bogotá D.C.-Colombia
- 전화번호 : +57 1 350 6200
- 팩스번호 : +57 1 336 8759
- 홈페이지 : <http://www.corteconstitucional.gov.co>

※ 출처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 1996년 법률 제270호
콜롬비아 2015년 헌법재판소 규칙

(2021. 7. 작성)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콩고민주공화국(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¹⁾
2. 수도 : 킨샤사(Kinshasa, 1,500만명)
3. 인구·면적 : 8,956만명(2020년), 2,344,858km²(한반도의 11배)
4. 공용어 : 프랑스어(공용어), 토착어(링갈라, 스와힐리, 키콩고, 쉴루바)
5. 1인당 GDP : 556달러(2020년)
6. 독립일 : 1960. 6. 30.(벨기에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2. 연혁

- 1960. 헌법 제정
- 1974. 헌법 개정
- 2006. 2. 18. 내전 후 신헌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 설립(헌법 제157조)

3. 구성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헌법 제158조)
 - 3인은 대통령에 의하여, 3인은 상원과 하원에 의하여, 3인은 최고사법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되며 모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됨

1) 콩고와 콩고민주공화국 구별

- 콩고는 프랑스로부터,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로부터 독립
- 두 나라 모두 지리적으로 콩고분지 안에 있고 콩고 강을 끼고 있어 국가 이름에 콩고가 들어갔으며, 한 나라가 분단된 것이 아님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함(헌법 제158조)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 불가(헌법 제158조)
- 전체 헌법재판관의 2/3 이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박사여야 함(헌법 제158조)
- 모든 재판관은 콩고민주공화국 국적과 15년 이상의 법조 또는 정계경력을 요함(헌법 제159조)

4. 권한

- 사전적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60조)
 - 법률, 국제조약 및 협정, 조직법률, 양원의 내부규칙의 합헌성 심사
 -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기간은 8일로 단축됨
- 헌법해석의견 제시(헌법 제161조)
-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양원의원 선거의 각 선거소송(헌법 제161조)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헌법 제161조)
- 파기원과 국무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헌법 제161조)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61조)
- 대통령 및 수상의 반역죄에 대한 형사재판(헌법 제164조)

5. 심리 및 결정

-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참석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헌법재판소 조직 법률 제92조)
-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헌법 제168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기속함(헌법 제168조)

6. 연락처

- 주 소 : Avenue de la Justice n° 2
B.P. 13 197
Kin/Gombe
Kinshasa
- 홈페이지 : cour-constitutionnelle.cd

- ※ 출처 :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콩고민주공화국 헌법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 조직법률

(2021. 8. 작성)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2. 수도 : 자그레브(Zagreb, 80만명)
3. 인구·면적 : 410만명(2020년), 56,594km²(한반도의 약 1/4)
4. 공용어 :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5. 1인당 GDP : 14,950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6. 25.(구 유고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 직선하의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Croatia

2. 연혁

- 1963. 6. 5. 구 유고연방(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헌법재판소 설립
- 1990. 12. 22. 크로아티아 공화국 헌법 제정
- 1991. 6. 25. 크로아티아 독립 선언
- 1991. 10. 8. 크로아티아 공화국 공식 분리 독립
- 1991. 12. 7. 크로아티아 공화국 헌법재판소 출범 - 초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취임
- 2000. 12. 9. 제2차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권한 대폭 확대, 재판관수 11명→13명으로 변경
- 2010. 6. 16. 제4차 헌법 개정
 - 재판관 선출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상향, 후임재판관 미선출시 전임재판관의 임기 연장에 관한 조항 추가
- 2013. 11. 8. 제5차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2/3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 임기는 8년이며 전임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재판관이 선출되지 않거나 취임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 전임재판관의 임기 연장(헌법 제122조)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4년(헌법 제122조).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으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헌법재판소규칙 제18조)
- 재판관 자격(헌법재판소법 제5조) : 15년 이상(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12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률학 대학교수)

4. 권한(헌법 제125조 ~ 제127조)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기타 법령의 위법 및 위헌 여부 심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 합헌성 및 합법성 실현의 감시역할. 위헌적·위법적 사례를 국회에 통지
- 입법, 사법, 행정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 대통령 탄핵 심판
- 정당해산 심판
- 선거 및 국민투표 소송
- 법관에 대한 파면 등 징계사건 심판

5. 심리 및 결정

- 주요 사건의 심리는 재판관 전원재판부(Session)에서 하며(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심사, 헌법소원 심판, 법관징계 판결의 항소 심판, 선거 소송 심판은 지정재판부(Chamber)에서 담당(헌법재판소규칙 제23조 ~ 제27조)
- 심판 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항)

-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요구시 재판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 결정(헌법 제105조)
-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형식에는 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decision)과 결정(판결 이외의 모든 경우, ruling)이 있으며, 판결과 결정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제3항)
- 다수의견에 반대한 재판관은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이유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5항)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입법·행정·사법부 이외의 제4부로 분류되는 헌법상 독립기관임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국가 의전서열은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③ 수상, ④ 헌법재판소장 순임

7. 연락처

- 주 소 : Trg svetog Marka No. 4
10000 ZAGREB
CROATIA
- 전화번호 : +385 1 6400 250
- 팩스번호 : +385 1 4551 055
- 홈페이지 : <http://www.usud.hr>

※ 출처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크로아티아 헌법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법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규칙

(2021. 5. 작성)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국 가 개 요

1. 국명 : 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Kyrgyzstan)
2. 수도 : 비슈켄(Bishkek, 110만명)
3. 인구·면적 : 659만명(2020년), 199,950km²(한반도의 약 9/10)
4. 공용어 : 키르기즈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5. 1인당 GDP : 1,173달러(2020년)
6. 독립일 : 1991. 8. 31.(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대법원 헌법재판부

- 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the Kyrgyz Republic

2. 연혁

- 1989. 9. 23.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위원회 설립
- 1991. 8. 키르기즈스탄 주권 선언
- 1993. 5. 5. 헌법 제정
- 1993. 12. 18.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5. 11. 9. 헌법재판소 첫 번째 결정 선고
- 2010. 4. 7.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으로 인해 활동 정지
- 2010. 6. 27. 헌법 개정
- 2013. 6. 1. 대법원 헌법재판부로 재편되어 활동 재개
- 2016. 12. 28. 헌법 개정¹⁾

1) 2021. 4. 10.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2021. 4. 10. 개정된 헌법의 영문 번역본이 공개되지 않아 2016. 12. 28. 개정헌법을 기준으로 본 편람을 작성하였음

3. 구성(헌법 제97조, 대법원 헌법재판부 조직법 제5조)

- 헌법재판부장과 부부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11인으로 구성
- 헌법재판부장과 부부장은 재판관 중에 호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
- 법관회의(Council of judges)의 제안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국회(Jogorku Kenesh) 재적의원 2/3이상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재판관 해임 가능
- 재판관 자격 :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키르기스스탄 국민

4. 권한(헌법 제97조 제6항, 제7항, 대법원 헌법재판부 조직법 제19조 제3항)

- 법률 및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
- 키르기스스탄이 당사국이고, 발효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
- 헌법 개정안의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침해 여부, 법치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여부 및 헌법 제114조에 따른 개정 절차 위반 여부 심판

5. 심리 및 결정

- 변론은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며, 결정도 공표되어야 함(헌법 제99조 제1항)
- 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법 제97조 제8항)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다른 법령은 효력을 상실. 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의 불복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수정됨(헌법 제97조 제9항, 제10항)

6. 연락처

- 주 소 : 39 Erkindik Boulevard,
Bishkek City

Kyrgyz Republic

- 전화번호 : +996 312 62 16 11
- 팩스번호 : +996 312 62 20 40
- 홈페이지 : <http://constpalata.kg/>

※ 출처 :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홈페이지
키르기즈스탄 헌법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조직법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2021. 7.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터키 헌법재판소

튀니지 헌법재판소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타지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2. 수도 : 두산베(Dushanbe, 91.6만명)
3. 인구·면적 : 975만명(2021년), 143,100km²(한반도의 약 0.65배)
4. 공용어 : 타지키스탄어, 러시아어
5. 1인당 GDP : 874달러(2019년)
6. 독립일 : 1991. 9. 9.(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 연혁

- 1991. 9. 9.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
- 1994. 11. 6. 헌법 제정
 -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1995. 4. 7. 초대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선출(이후 이듬해 2월 3일 재판부 구성 완료)
- 1995. 11. 3.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7. 6. 23. 대통령령에 의한 사법제도 개편
- 2008. 3. 20.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권한 확장
- 2014. 6. 26. 사법 개혁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이루어짐
- 2016. 5. 22.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개정됨)

3. 구성(헌법 제89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9조)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7인 중 1인은 고르노-바다흐산(Gorno-Badakhshan) 자치주의 대표로 구성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및 재판관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10년
 - 사건의 심리 중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그 재판관의 권한은 사건이 최종판결에 이를 때까지 유지됨
- 재판관 자격 : 고등교육(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타지키스탄 국적의 법률가

4. 권한(헌법 제89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34조)

- 법률, 국회의 상·하원 합동결의안, 국회, 대통령, 정부, 대법원, 최고경제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법령; 효력발생 전에 있는 국제조약; 고르노-바다흐산 자치주, 주, 두샨베 시의 의회 및 주지사 또는 시장의 법령; 기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
-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
-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에 부쳐진 법률안 및 기타 쟁점 심사
- 기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직무의 수행

5. 심리 및 결정

- 사건의 심리, 결정의 승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권한 정지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다른 문제들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총 재판관의 3분의 2 정족수 필요(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해서는 심리에 참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임(헌법 제89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심리(헌법재판소법 제48조)

6. 기타사항

- 헌법재판소의 조직으로는 재판관 지원 분과, 일반업무 및 공공서비스 분과, 기획 회계 분과, 국제관계 분과가 있음

7. 연락처

- 주 소 : srteet Bohtar 48
Dushanbe 734025
Tajikistan
- 전화번호 : (+992 37) 221-29-28
(+992 37) 221-29-28
- 이 메 일 : info@constcourt.tj
- 홈페이지 : <http://www.constcourt.tj/>

- ※ 출처 :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타지키스탄 헌법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법
베니스위원회 CODICES

(2021. 8. 작성)

태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2. 수도 : 방콕(Bangkok, 약 800만명)
3. 인구·면적 : 6,979만명(2020년), 약 514,000km²(한반도의 2.3배)
4. 공용어 : 타이어(공용어), 중국, 말레이어
5. 1인당 GDP : 7,189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2. 연혁

- 1997. 10. 11.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른바 ‘국민의 헌법’으로 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신설
- 1998. 4. 11.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
- 1998. 6. 9.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
- 2007. 8. 20. 헌법 개정
- 2016. 8. 7.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 결과
가결
- 2017. 4. 6.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는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상원의 승인을 받고 국왕이 임명하는 9인

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

- 대법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고 3년 이상 수석 대법관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대법원 판사 3인. 수석 대법관을 선출할 수 없다면, 대법원 전체회의는 3년 이상 대법원 판사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 최고행정법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고 5년 이상 최고행정법원 판사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최고행정법원 판사 2인
 - 5년 이상 태국 대학의 교수직을 보유하고 현재 학문적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선정된 법학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 5년 이상 태국 대학의 교수직을 보유하고 현재 학문적 명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선정된 정치학이나 공공 행정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 5년 이상 단체장 이상의 직위, 정부 기관장과 동등한 직위 또는 법무차관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 자격이 있는 사람 2인
- 헌법재판관은 출생시부터 태국 국적자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45세 이상 68세 미만의 청렴하고 직무 수행에 충분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함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5세
- 헌법재판소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호선

4. 권한

- 위헌법률심판
 - 추상적 규범통제 : 공포 전 법률안과 입법부의 절차에 관한 규칙 초안에 대한 위헌심사
 - 구체적 규범통제 : 이미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상·하원, 국회, 내각, 독립 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문제
-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체제의 보호 : 누구도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전복할 권리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를 갖고, 법무부 장관이 청원에 따른 신청을 거절하거나 청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

- 면, 청원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원을 할 수 있음
- 헌법 제5장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게 청구된 소송
 - 자격심사 : 국회의원, 장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
 - 세출 예산의 사용에 대한 국회의원 등의 관여 여부 판단 :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에 있어서 세출 예산의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를 초래하는 제안, 발의의 제출 또는 행위의 수행은 허용되지 않음(헌법 제144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제안, 발의의 제출 또는 행위의 수행은 무효가 되고, 이러한 위반을 한 사람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그 자격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됨. 내각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중지를 명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날로부터 내각 전원은 그 직을 상실(헌법 제144조 제3항)
 - 국가가 조약을 승인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경제 안보·사회·국가의 무역이나 투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내각은 이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헌법 제178조)
 - 헌법 개정의 합헌성에 관한 소송
 - 긴급명령(Emergency Decree)의 요건에 대한 위헌심사 : 국회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헌법 제17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재적 헌법재판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명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긴급명령은 소급하여 무효가 됨(헌법 제173조)
 - 헌법소원 :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에 규정된 규칙·절차·조건에 따라 그 침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진정을 제출할 권리를 보유(헌법 제213조)
 - 정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소송
 - 정당해산심판

5. 심리 및 결정

- 심리와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결정은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의 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여전히 복역 중인 형사사건은 예외. 복역 중인 피고인은 석방됨

6. 연락처

- 주 소 : Building A,120 Moo 3 Chaengwattana Road, Laksi
District, Bangkok 10210, Thailand
- 전화번호 : +66 0 2141 7777
- 팩스번호 : +66 0 2143 9522
- 홈페이지 : <http://www.constitutionalcourt.or.th>
(영문 : http://www.constitutionalcourt.or.th/en/occ_en/index.php)

- ※ 출처 : 태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태국 헌법
태국 헌법재판소 심리절차에 관한 조직법(2018)
태국 왕국 헌법, 국회도서관, 2017

(2021. 8. 작성)

터키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
2. 수도 : 앙카라(Ankara, 566만명)
3. 인구·면적 : 8,532만명(2021년), 783,562km²(한반도의 약 3.5배)
4. 공용어 : 터키어(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
5. 1인당 GDP : 9,327달러(2021년)
6. 독립일 : 1923. 10. 29.(터키 공화국 선포일, 오스만제국 계승)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2. 연혁

- 1962. 1961년 헌법 개정과 1962년 헌법재판소조직과 소송법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설립
 - － 독일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제도 수용
- 1982.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 일부 수정
- 2010. 9. 12.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수 및 선출절차 등 변경, 헌법소원제도 도입
- 2017. 4. 16.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

3. 구성(헌법 제146조)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2인을 포함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 중 3인은 국가회계법원과 변호사협회의 대표들에 의하여 추천된 자(공석당 3배수) 중에서 국회가 선출
- 재판관 중 12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짐
 - 파기법원 법관 중에서 3인, 최고행정법원 법관 중에서 2인을 임명하는데, 해당법원의 재판부전원회의에서 3배수로 지명된 법관 중에서 임명
 -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법학·경제학·정치학 분야의 교원 후보자(공석당 3배수) 중에서 3인 임명(이 중 최소 2명은 법학전공자여야 함)
 - 나머지 4인은 고위공무원, 개업 변호사, 선임 판사·검사 또는 헌법재판소 경력이 5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중에서 임명
- 재판관은 45세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 정교수 혹은 부교수
 -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학사학위 소지)하고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고위 공무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
 -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 판사와 검사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재임 및 겸임 불가. 정년은 65세
- 헌법재판소장 및 2명의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4년의 임기로(중임 가능) 재판관 전원예 의한 다수결로 선출

4. 권한(헌법 제148조, 제149조, 헌법재판소법 제3조)

- 규범통제
 - ① 추상적 규범통제
 -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 국회의사규칙의 형식 및 내용의 위헌 여부 심판
 - 헌법 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내용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고 필요한 제안·표결·논의절차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 대통령 또는 국회의 양대 다수 정당 혹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헌법 제150조)
 - 국가긴급사태, 계엄령 혹은 전시 중에 발효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

에 대한 위헌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헌법 제148조)

－ 국제조약은 규범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② 구체적 규범통제

－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위헌 주장이 상당한 경우 위헌법령심판을 제청(헌법 제15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 또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다만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함)

○ 대통령, 각료,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각 고등법원의 법원장 및 법관, 검사장 및 검사장보, 검사, 감사법원, 터키 국군 총 사령관, 육해군 총 사령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최고 형사재판소로서의 역할)

○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의 재정에 대한 감사(헌법 제69조)

○ 헌법이나 국회의사규칙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박탈 및 제명결정

5. 심리 및 결정(헌법 제149조, 제153조 등)

○ 헌법재판소에는 전원재판부(plenary),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중재판부(section), 재판관 2인으로 구성되며 각 중재판부 아래에 설치된 소재판부(committee)가 있음

○ 전원재판부는 소장(소장이 없을 경우 소장이 임명한 부소장)의 주재하에 10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으로 개최되며,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위법행위 심판, 정당의 재정 감사를 담당

○ 중재판부는 부소장의 주재하에 4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으로 개최되며, 헌법소원 본안을 심사함

○ 소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재판관 2인의 만장일치로 결정함

○ 결정은 다수결이 원칙이나, 헌법 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 결정, 정당해산 및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결정의 경우 참석 재판관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결정

-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4항)
- 법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국회의사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소급효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관보공고일로부터 1년을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상실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음
-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적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6. 기타사항

- 보고서 작성과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연구관과 연구관보를 둠(헌법재판소법 제24조)
 - 연구관은 적어도 5년의 경력이 있는 교수, 판사, 감사관 등으로 이루어짐

7. 연락처

- 주 소 : Ahlatlıbel Mahallesi İncek Şehit Savcı Mehmet Selim
Kiraz Bulvarı No : 4
06805 Çankaya / ANKARA / Turkey
- 전화번호 : +90 312 463 73 00
- 팩스번호 : +90 312 463 74 00
- 홈페이지 : <http://www.anayasa.gov.tr>

※ 출처 : 터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터키 헌법
터키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튀니지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튀니지 공화국(République Tunisienne)
2. 수도 : 튀니스(Tunis, 240만명)
3. 인구·면적 : 1,193만명(2021년), 163,610km²(한반도의 약 3/4)
4. 공용어 : 아랍어(프랑스어 통용)
5. 1인당 GDP : 3,317달러(2019년)
6. 독립일 : 1956. 3. 20.(프랑스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ur constitutionnelle Tunisienne

2. 연혁

- 1959. 6. 1. 헌법 제정
- 1987. 12. 17. 헌법재판소 설립
- 2014. 1. 26. 헌법개정¹⁾(2014. 2. 7. 시행)

3. 구성(헌법 제118조 등)

- 재판소장 및 부소장을 포함한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의 3/4는 법학분야에서 최소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1)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자스민 혁명(2010.12.17.~2011.1.4. 혁명)’을 통해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헌법을 개정함(216명의 투표자 중 찬성 200표, 반대 12표, 기권 4표). 2014년 개정 헌법에서는 법 앞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앙의 자유, 고문당하지 않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함.

야 함

-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관최고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에서 각 4인의 재판관을 지명함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불가
- 재판부는 3년마다 1/3씩 교체됨
- 재판관은 어떠한 직업과도 겸직불가(헌법 제119조)
- 재판소장과 부소장은 법학 전문가 출신 재판관들 중에서 호선

4. 권한(헌법 제120조 등)

- 법률안의 위헌 여부 심판
 - 정부제출법안(청구권자 : 대통령, 총리, 30인의 국회의원)
 - 의회에서 법률안 채택 후 7일 이내 청구
- 헌법개정안의 경우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 및 헌법개정절차 존중 여부 판단(청구권자 : 국회의장)
- 비준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청구권자 : 대통령)
- 국회 의사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청구권자 : 국회의장)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청구하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함
-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01조)
 -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5. 심리 및 결정(헌법 제121조~제123조 등)

-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위헌결정을 받은 정부제출법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기 위한 제2독회(délibération)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송됨
-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공권력을 기속함

- 헌법재판소는 제청 받은 청구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함(헌법재판소법 제52조)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조건 내에서 적용이 중단됨

6. 기타사항

- 국가제도와 안전, 국가의 독립성 및 공권력의 기능을 방해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특별사태(l'etat exception)를 명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30일 이후에, 국회의장 또는 30명의 국회의원은 특별사태 유지 결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의견을 표명하여야 함(헌법 제 80조).
- 대통령의 일시적 궐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시적 궐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소집됨(헌법 제8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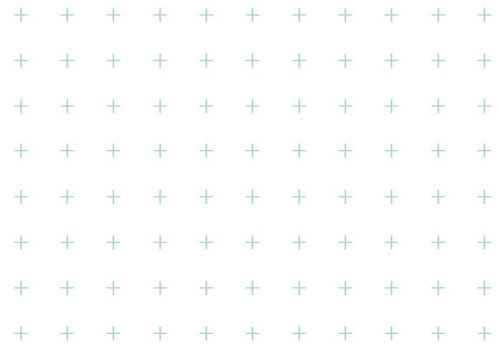
7. 연락처

- 주 소 : Avenue de l'indépendance
CP 2000
LE BARDO
- 전화번호 : +216 71 660 099
- 홈페이지 : 없음

※ 출처 : 튀니지 헌법
튀니지 2004년 헌법재판소 조직법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페루 헌법재판소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폴란드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재판소
핀란드 대법원



페루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페루 공화국(República del Perú)
2. 수도 : 리마(Lima, 975만명)
3. 인구·면적 : 3,297만명(2020년), 1,285,220km²(한반도의 약 6배)
4. 공용어 :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5. 1인당 GDP : 6,126달러(2020년)
6. 독립일 : 1821. 7. 28.(스페인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Peru
(Tribunal Constitucional del Perú)

2. 연혁

- 1993. 12. 31. 헌법 제정(헌법 제202조, 헌법재판소 권한 규정)
- 1996. 6. 24. 헌법재판소 설립

3. 구성(헌법 제201조, 헌법재판소조직법 제6조 및 제12조)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7인으로 구성
- 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첫 임기 종료 후 1년 연임 가능
- 재판관 자격
 - 출생지가 페루이면서 페루내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의 페루국민으로, 고

등법원 판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10년 이상 재직(다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 전 최소 1년 전에 판사 또는 검사직에서 퇴임해야함) 또는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단, 징계 또는 해임된 법관, 법원 판결이나 의회 결의에 의해 변호사직이 박탈된 자, 고의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사실상 정부 관리직을 맡은 자는 재판관으로 선출 불가

4. 권한

□ 규범통제(Procesos de control normativo)

○ 위헌법률심판(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

- 법률, 입법령, 긴급명령, 조약, 의사규칙, 지방 조례 등의 위헌여부 판단
- 대통령, 검찰총장, 옴부즈만, 재직 국회의원의 25%,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5,000명 이상의 시민 서명, 지역 관할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조정위원회회의의 조언을 받은 지방 대표, 전문직단체가 청구

○ 민중소송(Acción Popular)

- 공권력에 의한 규칙, 결정,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개인이 청구

□ 헌법소원심판(Procesos de tutela de derechos)

○ 인신보호영장 절차(Proceso de Hábeas Corpus)

- 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자 혹은 그의 대리인, 옴부즈만이 청구할 수 있음

○ 기본권보호 절차(Proceso de Amparo)

- 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소송법 제37조(평등권, 종교행사의 자유 등)에 열거된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인이 청구

○ 개인정보보호 절차(Proceso de Hábeas Data)

- 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청구

– 사법절차와 관련한 법원 명령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기 불가

○ 이행 절차(Proceso de Cumplimiento)

– 공무원이 법률을 준수하거나 행정행위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나 음부즈만이 청구할 수 있음

□ 권한쟁의심판(Proceso de conflicto competencial)

국가권력(입법, 행정, 사법) 간, 헌법기관 간, 국가권력과 헌법기관 간, 행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

5. 심리 및 결정

○ 전원재판부의 의사정족수는 5인, 의결정족수는 투표한 재판관의 단순과반. 다만, 위헌 여부 심판의 경우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조직법 제5조)

○ 법원에서 인신보호영장절차, 기본권보호절차, 개인정보보호절차, 이행절차를 기각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심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경우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를 담당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루어짐. 만약 지정재판부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거나, 재판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연공서열이 낮은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럼에도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는 헌법재판소장이 대신함(헌법재판소조직법 제5조)

○ 법령에 관한 위헌결정은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법령은 관보게재 익일 효력 상실(소급효 없음, 헌법 제204조)

6. 기타사항

○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특권 및 면책특권을 향유하고, 겸직제한도 국회의원과 동일(헌법 제201조)

○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 구제

절차를 거친 후 페루가 당사국인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나 국제기구에 제소 가능(헌법 제205조)

○ 헌법연구원(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 헌법쟁점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2월 1일에 설립
-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고 학술세미나, 강의, 워크숍 등 주최

7. 연락처

□ 헌법재판소

○ 리마 사무소

- 주 소 : Jr. Ancash Nro. 390
Cercado de Lima
- 전화번호 : +51 1 427 5814

○ 아레키파 사무소

- 주 소 : Calle Misti Nro. 102
Yanahuara - Arequipa
- 전화번호 : +51 54 253 448

○ 홈페이지 : <http://www.tc.gob.pe>

□ 헌법연구원

- 주 소 : Los Cedros Nro. 209
San Isidro - Lima
- 전화번호 : +51 1 440 3589

※ 출처 : 페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페루 헌법
페루 헌법재판소조직법
페루 헌법소송법

(2021. 7. 작성)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2. 수도 : 리스본(Lisbon, 51만명)
3. 인구·면적 : 1,030만명(2020년), 92,226km²(한반도의 약 2/5)
4. 공용어 : 포르투갈어
5. 1인당 GDP : 22,439달러(2020년)
6. 독립일 : 1143.(포르투갈 왕국), 1910. 10. 5.(공화국 수립)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Portuguese Constitutional Court

2. 연혁

- 1911. 위헌심사를 허용하는 헌법 제정
- 1982.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2005. 제7차 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222조,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 10인은 국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들 10인 재판관이 나머지 3인의 재판관 선출
 - 재판관 6인은 다른 법원의 판사 중, 나머지 7인은 법학자(jurist) 중에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 호선하며, 임기는 4년 6개월이고 재선 가능

- 재판관 자격 : 참정권을 가진 포르투갈 국민 중에서 법관 또는 포르투갈 내에 위치한 대학이나 포르투갈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학에서 법학분야의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4. 권한(헌법 제223조, 제278조, 제280조, 제281조)

○ 규범통제

① 사전적 규범통제

- 대통령의 제청에 따른, 비준되기 전의 국제조약 및 법령에 대한 위헌 심판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에 따른 서명전 지역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명을 위해 회부된 후 8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선거법, 주민투표법, 제업법과 같은 조직법규에 대하여는 대통령 이외에 국무총리 및 1/5 이상의 국회의원도 제청 가능

② 추상적 규범통제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옴부즈만,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1/10 이상의 제청에 따른 법률과 법규명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③ 구체적 규범통제

- 위헌을 이유로 법원이 법률 적용을 거부한 경우나 소송절차 중에 위헌여부가 문제가 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당사자나 검사가 청구

○ 대통령과 관련된 권한

- 대통령의 사망 및 영구적·일시적인 신체이상에 관한 확정 결정
- 대통령의 자격상실 확정 결정
-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 판결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심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

○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요건의 위헌·위법여부 심판

○ 정당 창당 및 연합의 합헌성, 정당 명칭 및 상징 등의 합헌성 판단 및 해산 심 명령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헌법재판소장이나 부소장 및 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재판관 과반, 의결정족수는 출석 재판관 과반수(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가부동수일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결정. 단 부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소장이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3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사 단체를 기속함(헌법재판소법 제 2조)

6. 기타사항

- 사전 위헌심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한 후 국회가 재적의원의 절대 과반 이상 혹은 최소 재적의원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공포해야 함(헌법 제279조)

7. 연락처

- 주 소 : Rua de “O Século” n° 111
1249-117 Lisboa
Portugal
- 전화번호 : +351 213 233 600
- 홈페이지 :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pt/tc/home.html>

※ 출처 :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

폴란드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폴란드 공화국(Republic of Poland)
2. 수도 : 바르샤바(Warsaw, 171만명)
3. 인구·면적 : 3,823만명(2021년), 312,696km²(한반도의 1.4배)
4. 공용어 : 폴란드어
5. 1인당 GDP : 15,694달러(2019년)
6. 독립일 : 1918. 11. 11. 독립공화국 선포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Tribunal of the Republic of Poland

2. 연혁

- 1791. 5. 3. 헌법 제정(유럽 최초의 성문헌법)
- 1982. 3. 26.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신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하원이 무효화할 수 있었음
- 1985. 4. 29. 하원(Sejm)에서 헌법재판소법 통과
- 1986. 1. 1. 헌법재판소 출범
- 1986. 5. 28. 헌법재판소 첫 번째 결정 선고
- 1997. 4. 2. 헌법개정안 의회 결의
 - 헌법재판소 결정의 최종성 확보(헌법 제190조 제1항)
- 2016. 11. 30.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유형에 관한 2016년 11월 30일 법률¹⁾,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2016년 11월 30일 법률 제정

1) 이하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 조직법’으로 약칭(폴란드 헌법재판소편에 한함)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1인, 부소장 1인 포함하여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하원에서 선출 - 50인 이상의 하원의원 또는 하원의장단(presidium)의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재적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하원 규칙 제30조 제1항)
- 재판관 자격은 법에 대한 학식이 출중하고, 대법관이나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춘 자
-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중임 불가
- 재판관의 권리 및 의무
 - 직무수행의 독립성
 - 형사상 면책특권(재판관회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가능)
 - 불체포특권(현행범이고 소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 가능하지만, 즉시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헌법재판소장은 즉각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당 및 노동조합 가입 금지, 재판소 및 재판관 독립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 금지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

4. 권한

- 추상적 규범통제
 - 법률과 국제 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헌법 제188조)
 - 법률의 비준된 국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88조)
 - 국가기관(central State organ)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 비준된 국제조약 및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헌법 제188조)
 -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서명 전 법안의 위헌성 검토(헌법 제122조)
 -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비준 전 국제 조약의 위헌성 검토(헌법 제133조)

- 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일반법원이 적용 법령의 헌법·국제 조약·법률에의 합치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헌법 제193조)
- 헌법소원심판
 -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법 제79조, 제188조)
-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의 위헌 여부 심판(헌법 제188조)
-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89조)
- 대통령의 일시적인 직무 수행 불능에 대한 판단 및 하원의장에게 임시적으로 그 직무 위임(헌법 제131조)

5. 심리 및 결정

- 전원재판부(full bench)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
 - 대통령의 일시적 직무 수행 불능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하원의장에게 임시적 직무 위임
 -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의 위헌성 심판
 - 법률 또는 조약의 공포 또는 비준 전 위헌성 심판(사전적 통제)
 - 복잡한 사안²⁾
-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할 경우 11명 이상 참석해야 하며, 전원재판부가 참석한 변론(hearing)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7조 제2항)
- 5인 재판부(bench of five judges)는 법률과 국제 조약의 위헌성 여부(사후적 통제), 법률의 국제 조약 위반 여부를 판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 i) 매우 복잡한 사안일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에 의해, ii) 예산법 규정이 없는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사안이 복잡할 경우, iii) 매우 복잡한 사안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제청에 의해 iv) 재판부가 과거 전원재판부가 내린 판결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을 때

- 3인 재판부(bench of three judges)는 기타 법령의 헌법·국제 조약·법률 위반 여부 및 헌법소원심판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하여 판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단독 재판부(sitting as a single judge)는 헌법소원심판 각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심리는 비공개. 사건의 심리에서는 결정·결정의 중요 이유에 대한 토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 이루어짐. 표결은 나이가 어린 재판관부터 연령순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마지막에 표결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105조, 106조)
- 결정의 효력(헌법 제190조)
 -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당사자를 기속하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헌법 제18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정(법령 또는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등)은 심판대상 법령이 공포된 관보에 게재되어야 함. 공포 전 법령의 경우에는 폴란드 공화국 공식 관보(Monitor Polski)에 게재되어야 함
 -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포(공시)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시 법률의 경우에는 18개월 내에서, 기타 법령의 경우에는 12개월 내에서 해당 법령이 폐지되는 장래의 시점을 정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재판부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반대의견이 결정서에 기재됨(헌법재판소 조직법 제106조 제3항)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규범통제에 의해 합헌이라고 결정된 법안의 서명을 거부할 수 없음(헌법 제122조)

7. 연락처

- 주 소 : al. Jana Christiana Szucha 12A
00-918 Warsaw, Republic of Poland

- 전화번호 : +4822 621-65-03
- 홈페이지 : <http://trybunal.gov.pl>

※ 출처 : 폴란드 헌법
헌법재판소 조직과 심판유형에 관한 2016년 11월 30일 법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2016년 11월 30일 법률
폴란드 하원 규칙

(2021. 5. 작성)

프랑스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프랑스 공화국(République Française)
2. 수도 : 파리(Paris, 1,100만명)
3. 인구·면적 : 6,740만명(2021년), 675,417km²(속령 포함, 한반도의 3.1배)
4. 공용어 : 프랑스어
5. 1인당 GDP : 40,496달러(2019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공화국,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eil constitutionn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2. 연혁

- 1946. 10. 27. 제4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Comité constitutionnel) 설치
- 1958. 10. 4.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설치
- 사전적·추상적 위헌심사권 인정
- 1971. 7. 16. 헌법재판소의 결사의 자유(liberté d'association)에 관한 결정을 계기로 위헌법률심사 제도 확대
- 1974. 10. 29. 헌법 제61조 개정
-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기존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에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 추가)
- 2008. 7. 23.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 제61-1조를 신설
-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QPC)¹⁾ 도입

1)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 2009. 12. 10. 헌법 제61-1조 적용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의 조직법률 (n°2009-1523) 제정
- 2010. 3. 1.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 시행

3. 구성

-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각 3인씩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 재판관은 3년마다 3인씩 교체하고, 각 임명권권자(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가 재판관 1인씩 임명
- 9인의 재판관 이외에 전직 대통령을 당연직 종신재판관으로 두고 있음²⁾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재판관은 연령이나 전문적 자격요건은 없으나, 정부 각료직, 의원직, 경제·사회·환경위원회 구성원 및 기타 조직법률로 정하는 직위와 겸직 불가

4. 권한

- 사전적 규범통제제도(헌법 제61조)
 - 필수적 규범통제: 조직법률은 공포 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법률안(헌법 제11조)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 양원의 의사규칙은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합헌 결정을 받아야 각각 공포, 국민투표에 회부, 시행될 수 있음
 - 임의적 규범통제: 기타 법률안 및 국제 조약의 (사전적) 합헌성 심사는 대통령, 수상, 상·하원의장 또는 60인의 상·하의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짐
 -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8일로 단축됨

2) 2021년 5월 현재 종신재판관으로 있는 전직대통령은 Valéry Giscard d'Estaing가 유일

- 사후적 규범통제제도(헌법 제61-1조)
 - 법원의 재판 중에 소송당사자(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없음)가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또는 소추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규정이 기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 당해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그 법원이 국사원(Conseil d'Etat)³⁾ 또는 파기원(Cour de cassation)⁴⁾에 송부
 - 국사원 또는 파기원이 이송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림
 - 일반법원이 국사원이나 파기원에 송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23-2조)
 - i) 문제의 법률 규정이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일 것 또는 소추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규정일 것
 - ii) 사정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 헌법에 합치된다는 선언이 없었을 것
 - iii) 그 위헌성 문제가 진지한 성격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 국사원이나 파기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위해서는 i), ii)의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되며, 추가로 그 위헌성 여부가 새로운 문제이거나 또는 진지성을 가질 것이 요구됨(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23-4조)
-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 감시, 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및 투표결과 공표(헌법 제58조)
- 정부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제청한 경우 위 사실의 확인(헌법 제7조, 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31조)
- 국회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 결정(헌법 제59조)
-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 감시 및 투표결과 공표(헌법 제60조)
-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에 대한 자문(헌법 제16조)
- 정부의 국민투표에 대한 자문(헌법 제11조)

3)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으로, 최고정책자문기능도 수행

4)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

5. 심리 및 결정

-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을 기속하며,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 (헌법 제62조 제3항)
-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불가항력시를 제외하고,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14조)
- 다만 상·하의원 선거소송의 심사는, 전원합의부 이전에 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 중 1개 지정재판부가 진행하고, 심사사실을 해당의원에게 통지한 후 답변을 받으면 전원합의부가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36조, 제38조, 제39조)
- 평의와 표결은 비공개(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3조)
- 헌법재판소 내규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변론은 공개(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제23-10조)

6. 기타사항

- 사무처장(*secrétaire général*)은 헌법재판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헌법재판소의 행정서비스를 총괄하고, 재판소 업무의 준비 및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관한 조직법률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 제3조)
- 사전적 위헌심사 제청 건수 증가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의회의 입법 권능을 제한하는 위헌 심사제도가 민주주의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법률안이 공포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 위헌심사제도 도입
 - 1974년 헌법 개정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상원 또는 하원의원 60명의 제청으로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 이후 연 평균 약 4건에 불과했던 제청 건수가 약 1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0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4건이 접수되었음

- 사후적 위헌심사제 적극 활용
 -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헌법재판소는 총 740건 결정을 내림(합헌 54%, 한정합헌 12%, 전체위헌 13%, 부분 위헌 6% 등)
 - 사후적 위헌심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80%를 차지함

7. 연락처

- 주 소 : 2, rue de Montpensier
75001
Paris
République Française
- 전화번호 : +33 1.40.15.30.00
- 홈페이지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 ※ 출처 : 프랑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프랑스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헌법
헌법재판소 조직법률에 관한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Ordonnance n° 58-1067 du 7 nov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관한 조직법률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Décret n°59-1293 du 13 novembre 1959 relatif à l'organisation du secrétariat général du Conseil constitutionnel)
한동훈,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2015

(2021. 5. 작성)

핀란드 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핀란드(Finland)
2. 수도 : 헬싱키(Helsinki, 60만명)
3. 인구·면적 : 553만명(2020년), 338,450km²(한반도의 1.5배)
4. 공용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5. 1인당 GDP : 49,041달러(2020년)
6. 독립일 : 1917. 12. 6.(러시아 제국으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의원내각제형)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1. 명칭 : 대법원

- Supreme Court of Finland (Korkein Oikeus)

2. 연혁

- 1918. 헌법 제정. 대법원 신설
- 1918. 대법원법 제정
- 2000. 3. 1.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 도입

3. 구성

- 대법원장인 대통령 및 1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됨
- 대통령이 대법원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최연장자가 대법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함

4. 권한

- 핀란드의 모든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헌법 제106조)
- 핀란드의 위헌법률심판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과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혼재되어 있음
-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상급심으로서 기능함
- 입법 절차에서의 확인 성명 발표(헌법 제77조)
- 대통령 사면 절차에서의 확인 성명 발표(헌법 제105조)
- 행정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은 최고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함

5. 연락처

- 주 소 : Pohjoisesplanadi 3
00171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 +358 2956 40000
- 팩스번호 : +358 2956 40154
- 홈페이지 : <http://korkeinoikeus.fi/en>

※ 출처 : 핀란드 헌법
핀란드 대법원법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헝가리 헌법재판소

호주 연방대법원



헝가리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
2. 수도 : 부다페스트(Budapest, 175만명)
3. 인구·면적 : 980만명(2020년), 93,030km²(한반도의 약 2/5)
4. 공용어 : 헝가리어
5. 1인당 GDP : 16,161달러(2018년)
6.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7. 의회 :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Court of Hungary

2. 연혁

- 1989. 1.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결의
- 1989. 10. 18. 민주헌법으로 헌법 개정
- 헌법재판소 관련규정 신설
- 1989. 10. 19.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90. 1. 1. 헌법재판소 설립
- 2010.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1. 신 헌법(기본법, Fundamental Law) 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 2012. 1. 1. 신 헌법 발효
- 2020. 12. 23. 제9차 헌법 개정

3. 구성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
 - － 국회의 재판관추천위원회(각 원내 교섭단체에서 최소 1명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에서 재판관 후보를 추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불가,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에서 선출
-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
- 재판관 자격 :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4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뛰어난 이론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대학교수 또는 ‘헝가리 학술원’의 박사) 또는 20년 이상 법조경력에 있는 법률가

4. 권한

- 규범통제
 - 가. 사전 통제(ex ante review)
 - ①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제출된 청원에 기반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 ② 국제조약의 구속력 인정 전(대통령이 청구) 또는 정부 명령으로 공포되기 전의 국제조약(정부가 청구)의 위헌 여부 심판
 - ③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서명 전에 이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헌법상 거부권)
 - ④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는 비준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청원이 대통령, 정부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에 제출되는 경우)
 - 나. 사후 통제(ex post review)
 - ① 추상적 규범통제 심사청구
 - － 정부,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기본권위원장(Commissioner for Fundamental Rights, ‘옴부즈맨’),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청구 가능
 - ②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청구

- 재판과정에서 적용법령의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법관이 청구
- 다. 법령의 국제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정부, 기본권 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청구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해 개시)
- 헌법소원 심판
 - 유형 1. 헌법에 반하는 법령의 적용에 따른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
 - 유형 2. 헌법에 반하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
 - 유형 3. 재판소원 : 헌법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 유형 1과 2는 ‘법령’이 심사대상이며(따라서 사후규범통제와 유사), 유형 3은 ‘재판’ 자체가 심사대상
- 국민투표와 관련된 의회의 결의에 대한 심판
- 지방의회의 운영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종교단체의 운영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대통령의 탄핵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대법원(the Curia)이 관할]
- 지방정부의 법령, 규범적 결정 및 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한 헌법 합치 여부 심판
 - 지방정부의 법령 심사 : 추상적 사후규범통제 및 헌법소원에서 지방정부의 법령에 대한 헌법 합치 여부만이 쟁점인 경우
 - 지방정부의 규범적 결정 및 명령 심사 : 추상적 및 구체적 사후규범통제, 헌법소원 및 국제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에서 심사
- 특정 헌법 문제와 관련한 헌법의 해석
-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5. 심리 및 결정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ary Session)와 전원재판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 5인(또는 그 미만)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Panel) 및 1인 재판부가 있음

○ 전원재판부

- 공포 전 법률, 명령 및 국회 의사규칙의 위헌 여부 심판, 비준 전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의 탄핵 심판,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개별규정의 해석, 위헌법률심판(사후 통제), 법률의 국제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 지정재판부가 본안 판단한 사건 법률의 무효화 여부 및 전원재판부 결정이 요구되는 모든 사안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담당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전체재판관의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한 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기권 없음)

○ 5인 지정재판부는 다수결로, 5인 미만의 지정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결정

○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에서는 입법기한을 명시하여 위헌결정을 하고, 해당 입법기관에게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대로 입법할 의무가 발생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상소불가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그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 일반적으로 무효화된 법은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유효하고, 무효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결정으로 장래효 또는 소급효가 부여될 수 있음
-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결정은 그 법원판결을 무효화하며, 해당 판결이 심사한 타 기관 또는 법원 판결 역시 무효화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대세적 효력(Erga Omnes Effect)을 가지며, 권한쟁의에 관한 판결은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효력을 미침.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Donáti utca. 35-45,
1015 Budapest
Hungary
- 전화번호 : +36 1 488 3100
- 팩스번호 : +36 1 212 1170

○ 홈페이지 : <http://www.mkab.hu/>

※ 출처 : 헝가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헝가리 헌법
헝가리 헌법재판소법
헝가리 헌법재판소 소송규칙

(2021. 3. 작성)

호주 연방대법원

국 가 개 요

1. 국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2. 수도 : 캔버라(Canberra, 36만명)
3. 인구·면적 : 2,568만명(2020년), 7,741,2220km²(한반도의 35배)
4. 공용어 : 영어
5. 1인당 GDP : 51,812달러(2020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

1. 명칭 : 연방대법원

- High Court of Australia

2. 연혁

- 1901. 연방헌법 발효
- 1903. 연방대법원 설립
- 1979. 연방대법원법 제정

3. 구성

-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됨
- 연방대법관은 연방총독이 임명함(연방헌법 제72조 제1항)
- 연방대법관은 입증된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을 근거로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일 회기에 의회의 양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연방총독이 해임하는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아니함(연방헌법 제72조 제2항)
- 연방대법관의 정년은 70세까지임(연방헌법 제 72조 제3항)

- 연방대법관의 자격은,
 - 연방의회가 설립한 법원의 판사 혹은 (노던 테리토리 지역 법원의 판사를 제외하) (준)주 법원의 판사였거나,
 - 5년 이상 연방대법원 혹은 (준)주 대법원에서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 등록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혹은 법률실무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1979년 연방대법원법 제7조)

4. 권한

-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상고심 관할(연방헌법 제73조)
- 원심 관할
 - 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1항)
 - 타국의 영사 또는 기타 대표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2항)
 - 연방 또는 연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자가 당사자인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3항)
 - 주 사이, 서로 다른 주의 국민 사이, 또는 주와 다른 주의 국민 사이에 발생한 사안(연방헌법 제75조 제4항)
 - 연방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영장(mandamus), 직무금지영장(prohibition) 또는 가처분명령(injunction)을 요구하는 사안
-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원심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 헌법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해석과 관련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1항)
 -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제기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2항)
 - 해사 관할권에 관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3항)
 - 서로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주장되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사안(연방헌법 제76조 제4항)
- 호주 커먼로의 내용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최종적 권한을 가짐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 연방대법원의 원심 관할권을 통해 제기되거나(연방헌법 제76(1)조; 1903년 법원조직법 제30조)

- 다른 법원에 사건의 계속 중에 법률의 위헌성이 제기될 때 연방대법원에 이송되거나(1903년 법원조직법 제40조)
- 청구인적격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짐
- 선거소송법원으로서 기능함(1918년 연방선거법 제354조 제1항)
- 연방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확인함으로써 연방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5. 연락처

- 주 소 : Parkes Pl
Parkes ACT 2600 Australia
- 전화번호 : +61 2 6270 6811
- 홈페이지 : <http://www.hcourt.gov.au>

- ※ 출처 : 호주 연방헌법
호주 1979년 연방대법원법
호주 1918년 연방선거법
호주 1903년 법원조직법
김선희, 호주 헌법과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2021. 8. 작성)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2021년 9월 1일 인쇄

2021년 9월 7일 발행

발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쇄: 성문인쇄사
02) 2272-7553

<비매품>

